

신흥국의 세정연구

미얀마

2021. 4.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연구진:

삼일회계법인	이동열	dong-youl.lee@pwc.com
삼일회계법인	이장우	jangwoo.lee@pwc.com
삼일회계법인	임병찬	byung-chan.lim@pwc.com
삼일회계법인	강윤지	lilliana.kang@pwc.com
삼일회계법인	선준규	joongyu.sun@pwc.com
PwC Myanmar	Paul Cornelius Partner	paul.cornelius@pwc.com
PwC Myanmar	Suk Peng Ding Partner	suk.peng.ding@pwc.com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이경현	

· 책임의 면제(Disclaimer):

각 국가의 세정은 그 국가의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 개정 되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보고서는 각국의 세정을 이해 하는 최소한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최신 세정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각 국가의 법령·과세관청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 삼일회계법인 및 PwC Myanmar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합니다.

목 차

제1장 총론	1
I.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3
1. 경제 및 사회 환경.....	3
2. 미얀마 진출 규모.....	11
II. 조세제도.....	16
1. 역사적 배경.....	16
2. 조세체계.....	18
3. 과세권자.....	20
4. 조세행정.....	23
III. 최신 조세동향.....	28
1. 조세정책 동향.....	28
2. 최근 세법 개정 내역.....	33
제2장 주요 세법	35
I. 법인소득세.....	37
1. 서론.....	37
2. 납세의무자.....	38
3. 과세소득.....	39
4. 결손금의 처리.....	43
5. 세율과 세액의 계산.....	44
6. 조세혜택.....	47
7. 신고와 납부.....	48
8. 원천징수 의무.....	62

II. 개인소득세	64
1. 서론	64
2. 납세의무자	64
3. 과세소득	65
4.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68
5. 세율 및 세액의 계산	70
6. 신고와 납부	71
III. 국제조세	86
1. 국제조세의 체계	86
2.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87
3.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88
4. 조세조약	89
IV. 소비세	91
1. 상업세 개관	91
2. 납세의무자	91
3. 과세대상 거래	92
4. 과세표준 및 세율	92
5. 영세율 및 면세	94
6. 산출세액	95
7. 신고와 납부	97
8. 환급	100
9.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101
10. 특례제도	103

목 차

V. 기타 조세	105
1. 특별소비세(Special Goods Tax)	105
2. 인지세	108
3. 재산세	109
4. 관세	109
5. 사전소득세(Advanced Income Tax)	109
제3장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111
I. 외국인 투자정책	113
1.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	113
2. 외국인 투자 절차	117
II. 외국인 투자 특례제도	123
1. 개관	123
2.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특례	123
3.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른 특례	124
4. 외국환제도	127
III. 진출 확대 방안	128
1. 시장 특성 및 진출 유의사항	128
2. 수출입 시 유의사항	131
3. 유관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137
참고문헌	138

표 목차

제1장 총론

〈표 I-1〉 미얀마 개황	4
〈표 I-2〉 주요 자원 보유 현황.....	4
〈표 I-3〉 주요 경제지표	8
〈표 I-4〉 외국인 투자 유치 비중(2018년 누적 기준).....	12
〈표 I-5〉 10대 수출대상국.....	12
〈표 I-6〉 10대 수입대상국.....	13
〈표 I-7〉 10대 수출입 품목.....	13
〈표 I-8〉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현황.....	14
〈표 I-9〉 2019년 한국기업 업종별 투자 현황	14
〈표 I-10〉 한국의 대 미얀마 연도별 수출입 현황	15
〈표 I-11〉 한국의 대 미얀마 10대 수출입 품목.....	15
〈표 I-12〉 조세제도의 주요 연혁.....	16
〈표 I-13〉 미얀마의 과세기간.....	23
〈표 I-14〉 세목별 부과제척기간.....	24
〈표 I-15〉 형사처벌 유무에 따른 처벌의 구분.....	25
〈표 I-16〉 위반 사항별 처벌 규정.....	25
〈표 I-17〉 「조세행정법」의 구성.....	29
〈표 I-18〉 2019 과세연도 재화별 특별소비세율.....	30
〈표 I-19〉 기존 미과세소득 세율.....	32
〈표 I-20〉 2019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미과세소득 세율.....	32
〈표 I-21〉 「통합조세법 2019」에 따른 신설 처벌 규정.....	32
〈표 I-22〉 2010~2020 주요 세법 개정 내역.....	33

목 차

제2장 주요 세법

〈표 II-1〉 법인의 세무상 구분	39
〈표 II-2〉 자산별 감가상각률	41
〈표 II-3〉 법인 형태별 소득세율	44
〈표 II-4〉 업종별 양도소득세율	45
〈표 II-5〉 법인의 소득세액 계산 예시	45
〈표 II-6〉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조세혜택	47
〈표 II-7〉 미얀마 경제특구의 구분	48
〈표 II-8〉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른 조세혜택	48
〈표 II-9〉 원천징수세율	63
〈표 II-10〉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예시	66
〈표 II-11〉 과세방식 및 소득 구분에 따른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적용 여부	68
〈표 II-12〉 소득 항목별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	69
〈표 II-13〉 소득공제 구분	69
〈표 II-14〉 개인소득세율	70
〈표 II-15〉 대가의 형태별 원천징수세율	85
〈표 II-16〉 국제조세 일반론	86
〈표 II-17〉 수취인에 따른 대가의 형태별 원천징수세율	88
〈표 II-18〉 조세조약 체결 현황	90
〈표 II-19〉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90
〈표 II-20〉 상업세 적용 세율	93
〈표 II-21〉 상업세 공제 대상 매입세액	95
〈표 II-22〉 월별 상업세 납부세액 계산 방식 예시	96
〈표 II-23〉 2019 과세연도 재화별 특별소비세율	106
〈표 II-24〉 특별소비세 산출세액 계산 예시	107
〈표 II-25〉 과세대상 구분별 인지세율	108

제3장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표 III-1〉 「미얀마 투자법」상 외국인투자 제한·금지 업종	114
〈표 III-2〉 합작이 강제되는 사업	115
〈표 III-3〉 「미얀마 회사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	116
〈표 III-4〉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사항	118
〈표 III-5〉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조세 특례	123
〈표 III-6〉 미얀마 경제특구의 구분	124
〈표 III-7〉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른 조세 특례	126
〈표 III-8〉 미얀마 시장 SWOT 분석	128
〈표 III-9〉 산업 육성 정책 방향	129
〈표 III-10〉 수출 유망 품목	133
〈표 III-11〉 수출 유망 업종	135
〈표 III-12〉 유관 기관 연락처 및 주소	137

목 차

그림 목차

제1장 총론

[그림 I-1]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	3
[그림 I-2] 인구증가율	6
[그림 I-3] 인구분포도.....	6
[그림 I-4] 동남아시아연합 인구분포도.....	6
[그림 I-5] 동남아시아연합 경제활동인구 비율.....	7
[그림 I-6] 동남아시아연합 경제활동인구의 산업별 비중.....	7
[그림 I-7] 실질 GDP 성장률 추이.....	8
[그림 I-8] 동남아시아연합 내 국가별 GDP 비중.....	9
[그림 I-9] 동남아시아연합 1인당 GDP 추이.....	10
[그림 I-10] 연도별 외국인 직접 투자액	11
[그림 I-11] 세무 신고 방식.....	17
[그림 I-12] 법령체계도.....	18
[그림 I-13] 미얀마의 조세.....	19
[그림 I-14] 주요 세법의 체계.....	19
[그림 I-15] 미얀마 국세청 조직도.....	22
[그림 I-16] 미얀마 국세청 및 세무서 위치.....	22
[그림 I-17] 조세쟁송 절차.....	27
[그림 I-18] 국세청의 전략적 목표.....	28

제2장 주요 세법

[그림 II-1] 법인 소득세 신고서(Patakha(wanga)-1(b))	49
[그림 II-2] 양도소득세 신고서(Patakha(wanga)-1(d))	58
[그림 II-3] 개인의 세무상 구분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65
[그림 II-4] 개인 소득세 신고서(Patakha(wanga)-1(b))	73
[그림 II-5] 분기별 상업세 신고서(Patakha(kathakha)-5)	97
[그림 II-6] 사업자등록증 예시(KaTHaKha-2)	102

제3장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그림 III-1] 미얀마 경제특구의 위치	125
-------------------------	-----



• 신흥국의 세정연구 미얀마 •

제1장 총론

- I.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 II. 조세제도
- III. 최신 조세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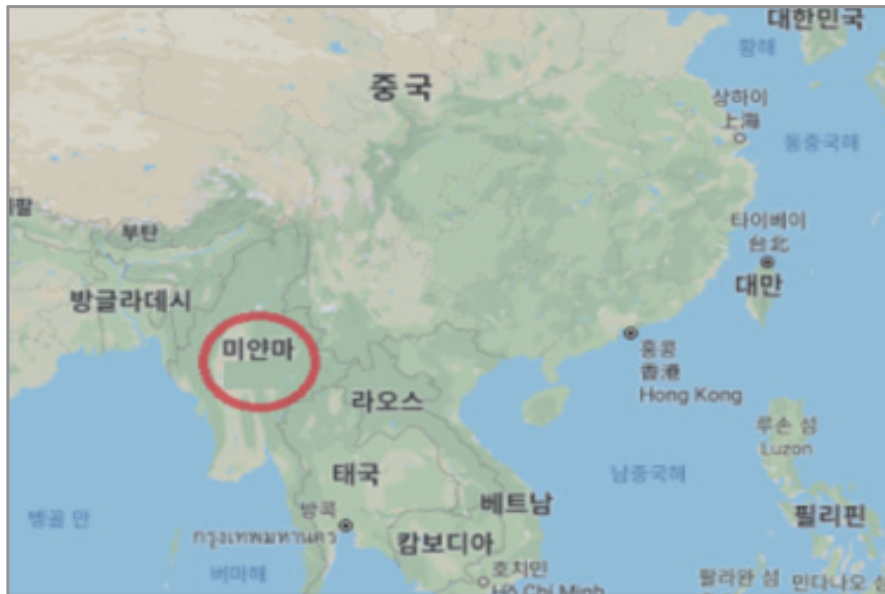
제1장 | 총론

I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1. 경제 및 사회 환경

미얀마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거대 경제권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회원국¹⁾ 중 다섯 번째로 인구수가 많다. 미얀마는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위 티크 목재 생산국이기도 하다. 미얀마는 중산층(1인당 GDP가 1천달러를 상회)이 태동하는 단계에 있다.²⁾

[그림 I-1]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



자료: Google Maps, <https://maps.google.com>, 검색일자: 2020. 12. 22.

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이다.
2) 이하 제1장의 내용은 외교부에서 발간한 『미얀마 개황』, 외교부 동남아 2과, 2019.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표 I-1〉 미얀마 개황

국명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면적	67.7만km ² (한반도의 약 3배)
수도	네피도(Nay Pyi Taw): 인구 100만명(인구밀도 200명/km ²) *2006년 양곤(Yangon)에서 네피도로 수도 이전
주요 도시	양곤(Yangon): 인구 700만명(인구밀도 716명/km ²)
인구	5,238만명
시차	한국 시간 -2.5시간
언어	미얀마어, 소수민족 고유어
민족	버마족(70%), 소수족(25%), 기타(중국계 3%, 인도계 2%)
종교	불교 88%, 기독교 6%, 이슬람교 4%, 힌두교 0.5%, 기타 1.5%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기온 27~28℃, 연평균 강우량 2,500mm) 여름: 2월 말~5월 중순 우기: 5월 하순~10월 말 겨울: 11월 초~2월 중순(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유사)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군부가 상당한 권한 보유
주요 인사	대통령: 윈 민(Mr. Win Myint)(취임일: 2018. 4. 1.) 국가고문/외교부 장관: 아웅산 수치 여사(Ms. Aung San Suu Kyi)(취임일: 2016. 3. 30.) 제1부통령: 민 수웨(Mr. Myint Swe)(취임일: 2016. 3. 30.) 제2부통령: 헨리 반 띠오(Henry Van Thio)(취임일: 2016. 3. 30.) 상원의장: 윈 카잉 탄(Win Khaing Than) 하원의장: 티 쿤 맛(T Khun Myatt) 군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U Min Aung Hlaing) 대법원장: 툰 툰 우(U Htun Htun Oo)

자료: 1. 외교부, 『미얀마 개황』, 외교부 동남아 2과, 2019, pp. 5~7.
2. KOTRA, 「국가·지역정보-미얀마」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7&commItemSn=404&area=1#area1>, 검색일자: 2020. 12. 22.

〈표 I-2〉 주요 자원 보유 현황

구분	매장량	단위	비고
천연가스	41.3	조입방피트(TCF)	
철광석	0.3	십억톤	
석탄	0.2	십억톤	
니켈	40	백만톤	니켈광 기준
동	21	백만톤	구리광 기준
아연	14	백만톤	아연광 기준
텅스텐	15	천톤	

자료: 외교부, 『미얀마 개황』, 외교부 동남아 2과, 2019, p. 52.

가. 미얀마의 역사

- 바간(Bagan)/토웅구(Toungoo)/꽌바(Konbaung) 왕조(1056~1886)
- 영국 및 일본 식민시대(1886~1948)
- 버마 독립 및 사회주의(1948~1988)
- 민주화 운동 및 군사정부(1988~2011)
- 제한적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2011~)

미얀마는 영국 및 일본의 식민시대 이후 약 60년간의 군사 독재체제로 인해 장기간 경제적 고립 상태였으나, 2011년 군사정권 종식 및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였다. 정치적으로는 2015년 개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The National League of Democracy Party) 소속 테인 세인(Thein Sein)이 압도적인 득표로 정권 교체를 확정하며, 제한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돌입한다. 다만 테인 세인 초대 대통령은 전임 군부 정부인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의 총리이 기도 하였으며, 테인 세인 정권 및 이후 정권은 여전히 군부에 의석 25%를 할당한다.³⁾ 군부는 이 외에도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국경통합부(Ministry of Border Affairs & Home Affairs)를 통제하며, 여전히 정부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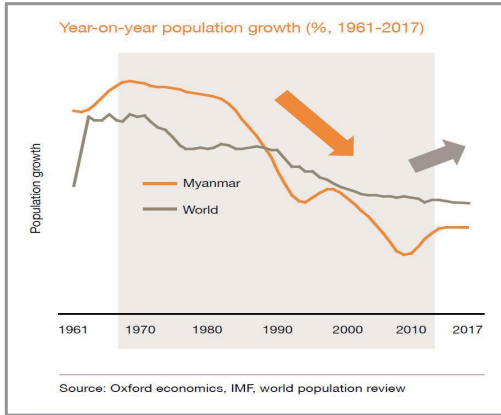
나. 미얀마의 사회 환경

미얀마의 인구는 1960년대 군사정권 시절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 시장경제 체제 도입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2015년 기준 인구분포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15세 이상의 생산인구가 약 60%, 30세 미만 인구가 약 50%를 차지하는 등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얀마 인구의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70%)은 농업에 종사한다. 미얀마는 광대한 토지와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농업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미얀마 정부는 농촌 개발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3) 미얀마의 대통령은 직선제가 아닌 의회의 간선으로 선출되며,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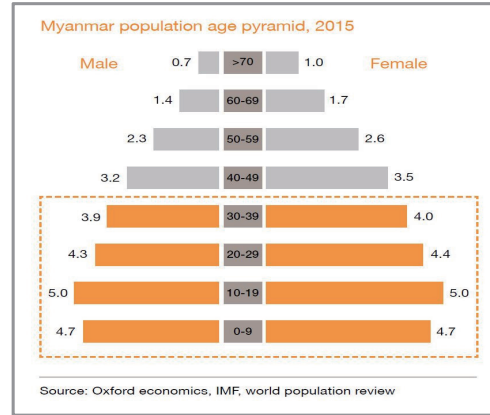
[그림 I-2] 인구증가율

(단위: %)



[그림 I-3] 인구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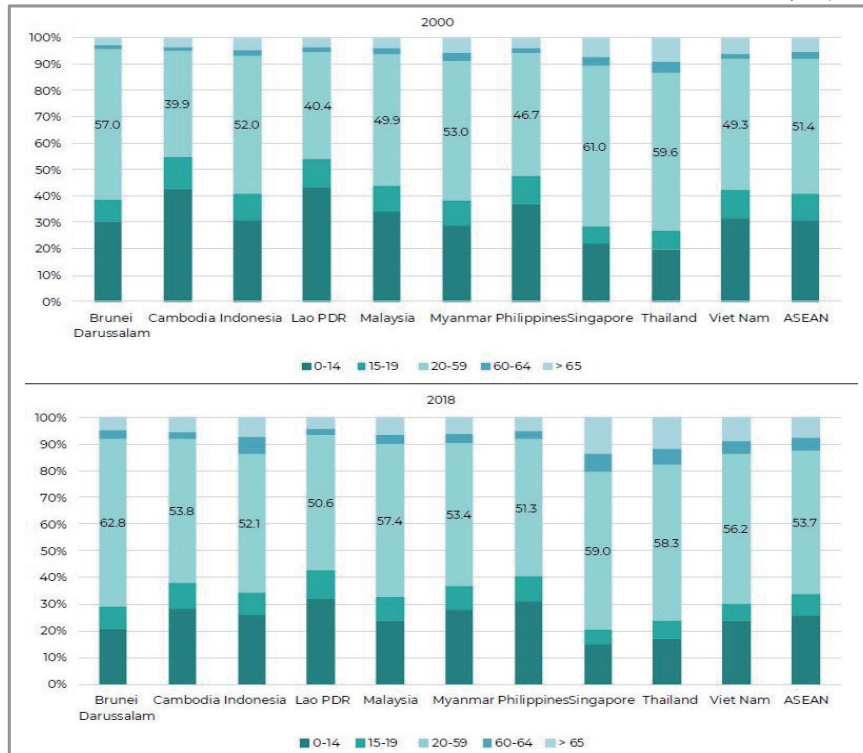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PwC, *Myanmar Business Guide*, 2018, p. 8. 자료: PwC, *Myanmar Business Guide*, 2018, p. 8.

[그림 I-4] 동남아시아연합 인구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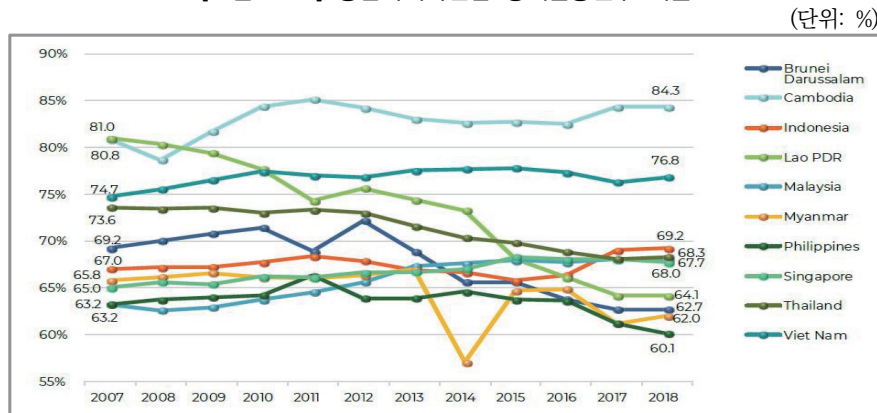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stats database," ASEAN, *ASEAN Key Figures 2019*, https://www.aseanstats.org/wp-content/uploads/2019/11/ASEAN_Key_Figures_2019.pdf, 검색일자: 2020. 1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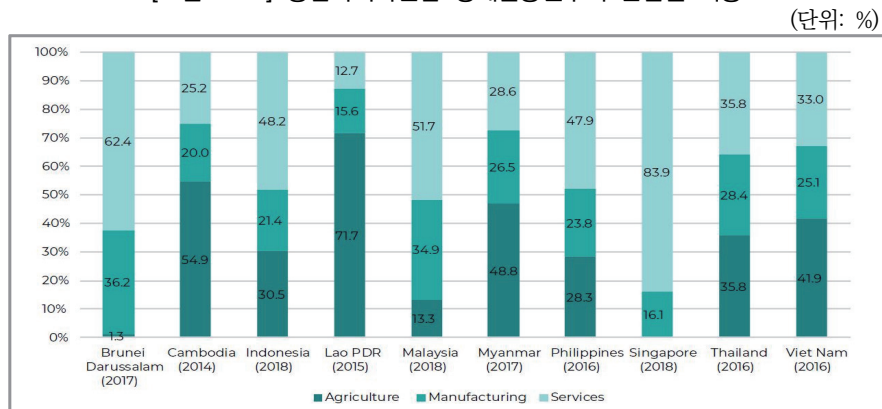
도시 거주 인구는 양곤을 비롯한 몇 개의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다. 2018년 3월 기준 미얀마의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5%이고, 서비스업 비중은 28.6%이다⁴⁾. 제조업은 섬유봉제업 및 농수산물 기초 가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은 상태이다. 미얀마는 도로·철도·항만·전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다(전기보급율 40%, 비포장도로 30%). 미얀마 내 제조업 생산직 월평균 임금은 2018년 기준 110달러 미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그림 I-5] 동남아시아연합 경제활동인구 비율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stats database," ASEAN, *ASEAN Key Figures 2019*, https://www.aseanstats.org/wp-content/uploads/2019/11/ASEAN_Key_Figures_2019.pdf, 검색일자: 2020. 12. 22.

[그림 I-6] 동남아시아연합 경제활동인구의 산업별 비중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stats database"

4) 2018년 기준 동남아시아연합 평균 산업 비중은 서비스업 50.1%, 제조업 36.6%, 농업 10.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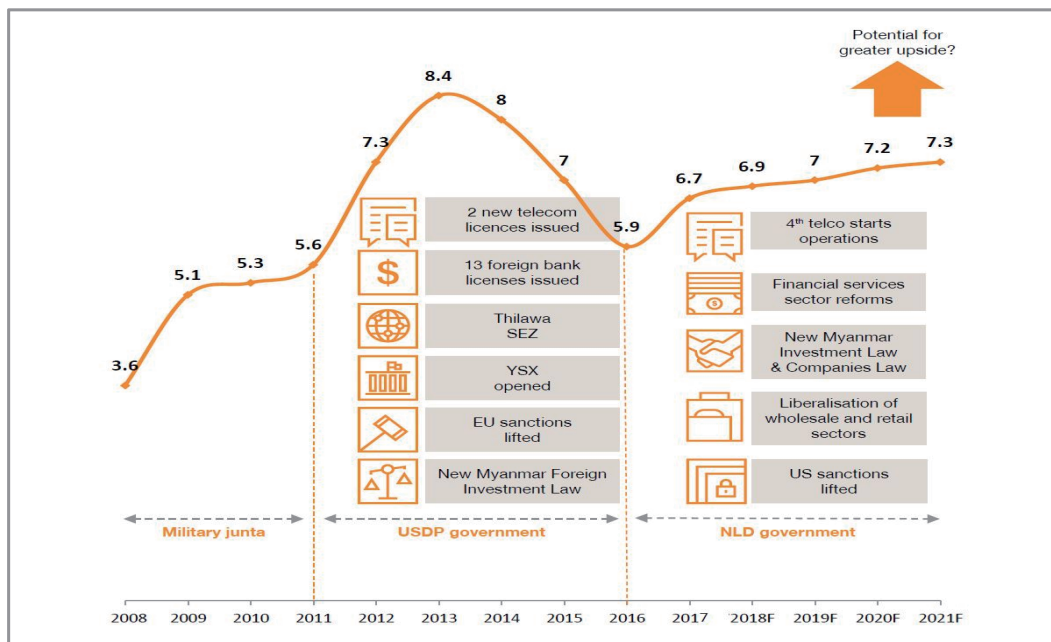
다. 미얀마의 경제 환경

〈표 I-3〉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명목 GDP(십억달러)	59.5	63.3	66.5	70.7	74.9
1인당 명목 GDP(달러)	1,148	1,210	1,263	1,338	1,414
실질 GDP 성장률(%)	7.0	5.9	6.7	6.9	7.0
실업률(%)	4.0	4.0	4.0	4.0	4.0
소비자 물가 상승률(%)	7.3	9.1	4.6	5.9	8.6
GDP 대비 재정수지(%)	-5.2	-3.9	-5.3	-5.4	-5.6
총 교역액(억달러)	371.3	276.5	334.5	365.2	-
수출액(억달러)	126.1	117.3	139.3	153.8	-
수입액(억달러)	245.2	159.2	195.2	211.4	-
무역수지(억달러)	-119.2	-42.0	-55.9	-57.6	-
기말 환율(MMY/USD)	0.00076	0.00073	0.00073	0.00065	0.00068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미얀마」,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57>, 검색일자: 2020. 12. 22.

[그림 I-7] 실질 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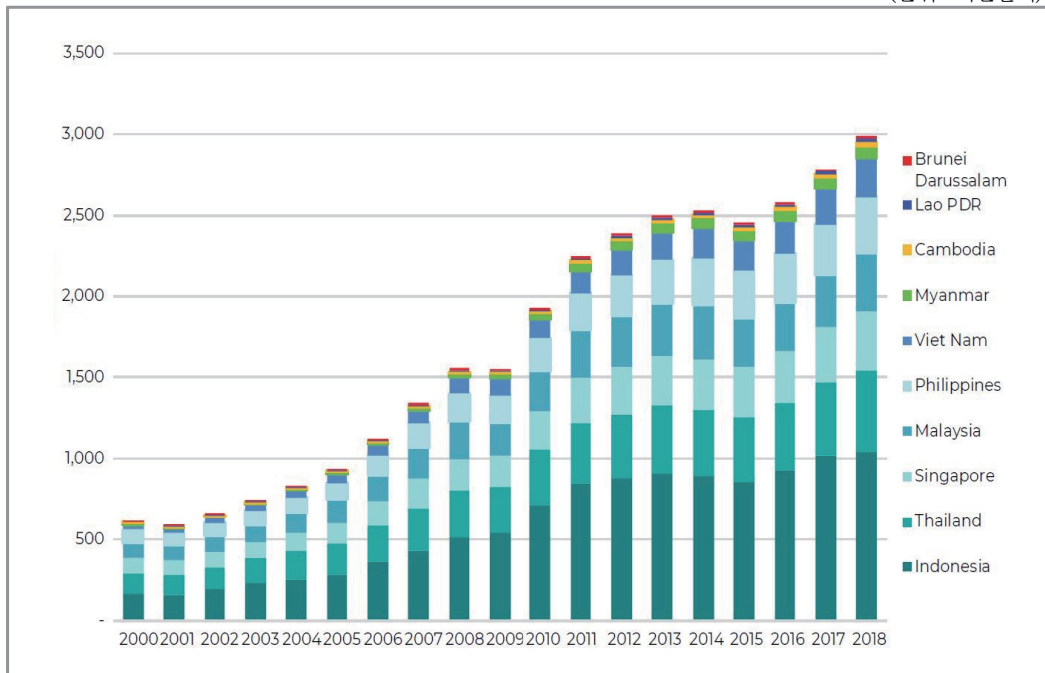
자료: PwC, Myanmar Business Guide, 2018, p. 14.

미얀마는 2011년 경제 개방 이후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고속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천연가스 생산량 및 투자유치 증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8년 11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처인 투자·대외경제 관계부를 신설하고 외교관 출신으로 국가 안보 자문역과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타웅 툰을 초대 장관으로 임명했다. 2018년 8월 미얀마 정부는 외국기업 및 합작기업에 도소매업 분야 영업을 허가하였으며, 2019년 7월 외국 합작기업에 고기, 생선 등 육·어류, 가공된 농작물, 제지 및 제지용 펄프, 종자, 가공금속, 가공 또는 완제품 과일, 목재가구 등의 수출을 허가한바, 관련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미얀마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허가됨에 따라 미얀마 주식시장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8] 동남아시아연합 내 국가별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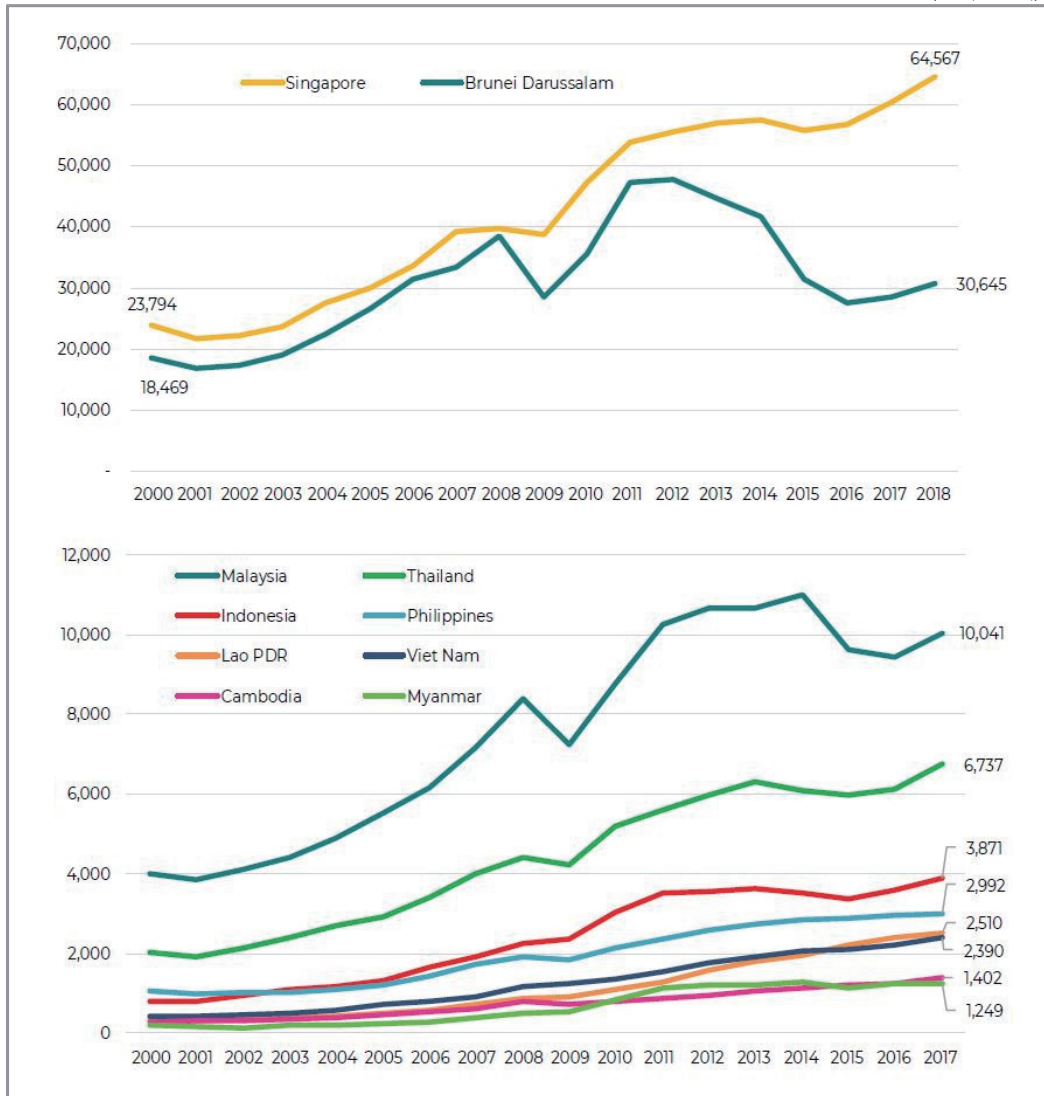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주: 인도네시아 34.9%, 태국 16.9%, 싱가포르 12.2%, 말레이시아 12%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stats database"

[그림 I-9] 동남아시아연합 1인당 GDP 추이

(단위: 달러)



자료: ASEAN Secretariat, "ASEAN stats database"

2. 미얀마 진출 규모

미얀마는 2011년 시장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19년 5월까지의 누적 외국인투자 승인액은 약 800억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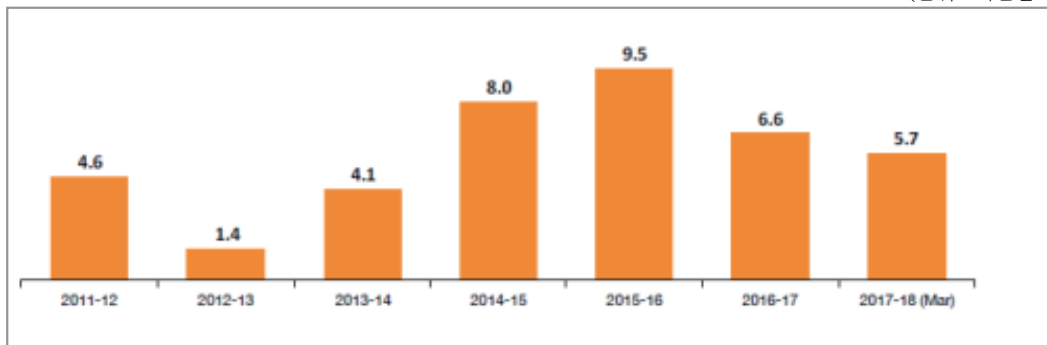
가.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 현황

미얀마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5년 9.5백만달러를 정점으로 찍은 이후 감소 추세로 전 환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2016년 10월 발생한 라카인(Rakhine) 사태⁵⁾로 인한 부정적 국제 여론의 형성으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 최대 투자국은 싱가포르(15.7%)이며, 이어 중국(10%), 네덜란드(3.8%), 일본 (2.8%), 한국(1.8%) 순이다. 과거에는 석유·가스 분야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나 최근 제조 업·운송·통신·부동산 등으로 투자 분야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그림 I-10] 연도별 외국인 직접 투자액

(단위: 백만달러)



자료: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 www.dica.gov.mm

5) 로힝야(Rohingya)족과 미얀마 정부 간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진 사건. 로힝야족 일부는 방글라데시 접경 인 미얀마 라카인주에 거주하고 있다(다른 일부는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에 거주). 로힝야족은 8~9세기부터 현재 라카인 지역에 정착하였던 아랍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시절에 방글라데시 주변국에서 온 불법이주자로 간주해 왔다. 로힝야족과 미얀마의 종교가 상이하여 사회적, 종교적 갈등이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였다. 1978년 군부의 불법이주자 추방 정책으로 문제가 격화되었으며, 2017년 8월 로힝야족 무장단체가 미얀마군 초소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자 정부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수천명이 사망하고 7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는 인종 학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였다.

〈표 I-4〉 외국인 투자 유치 비중(2018년 누적 기준)

(단위: 백만달러, %)

국별	건수	투자액	비중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중국	258	20,097	26.0	석유가스	154	22,410	29.0
싱가포르	287	19,644	25.4	전력	18	20,992	27.1
태국	118	11,093	14.3	제조업	918	9,990	12.9
홍콩	117	7,868	10.1	교통통신	55	9,326	12.0
영국	92	4,382	5.6	부동산개발	52	5,172	6.6
한국	163	3,885	5.0	호텔관광	75	3,036	3.9
베트남	20	2,107	2.7	광업	71	2,905	3.7
말레이시아	64	1,962	2.5	축산어업	51	595	0.7
네덜란드	21	1,528	1.9	농업	28	395	0.5
일본	108	1,164	1.5	산업단지	6	272	0.3
인도	30	764	0.9	건설	2	38	0.0
기타	203	2,792	4.1	기타	105	2,155	2.7
합계	1,535	77,286	100.0	합계	1,535	77,286	100.0

주: 2018년 8월 발표 기준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표 I-5〉 10대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중국	2,238	2,911	4,674	4,597	5,055	4,047
2	태국	4,001	4,306	4,029	2,893	2,202	2,146
3	인도	1,019	1,144	746	904	943	525
4	싱가포르	291	694	759	725	473	696
5	일본	406	513	556	394	784	656
6	독일	43	40	68	85	220	288
7	한국	281	353	370	260	342	209
8	말레이시아	98	109	265	161	159	137
9	인도네시아	32	60	86	140	125	86
10	홍콩	27	489	289	283	204	54
-	기타	542	585	682	694	1,443	1,854
총합계		8,978	11,204	12,524	11,136	11,950	10,698

주: 2018년 8월 발표 기준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 www.csostat.gov.mm

〈표 I-6〉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중국	2,719	4,105	5,020	6,395	5,749	4,492
2	싱가포르	2,535	2,910	4,137	2,971	2,494	2,031
3	태국	697	1,377	1,679	1,973	2,086	1,561
4	일본	1,092	1,296	1,749	1,452	1,248	725
5	말레이시아	361	840	744	589	821	499
6	인도네시아	195	439	551	602	702	668
7	인도	302	494	595	807	1,000	618
8	베트남	75	170	241	290	406	441
9	한국	343	1,218	493	397	524	362
10	미국	120	80	494	128	499	356
-	기타	630	831	930	974	1,683	1,704
총합계		9,069	13,760	16,633	16,578	17,212	13,457

주: 2018년 8월 발표 기준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 www.csostat.gov.mm

〈표 I-7〉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2018)	품목명	금액(2018)
1	가스	2,556	기계 및 운송수단	2,585
2	의류	1,841	정제된 광유	2,335
3	쌀	800	전자기기 및 기구	1,151
4	광물	690	비철금속 및 제조품	1,072
5	수산물 및 관련품	360	플라스틱	498
6	검은콩	313	의약품	398
7	녹색콩	188	식용 식물성 기름	357
8	나무콩	92	비료	255
9	옥수수	194	화학혼합물	186
10	옥	291	시멘트	64

주: 2018년 8월 발표 기준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 www.csostat.gov.mm

나. 한국의 미얀마 투자 현황

한국의 미얀마 투자는 자원개발·봉제업과 식음료·건설자재·전선·사료공장 등 제조업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과 관련된 투자도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2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미얀마에서 운영 중이며, 이 중 봉제 관련 업체 120여 개, 포스코⁶⁾·롯데⁷⁾·CJ⁸⁾, LG⁹⁾, 삼성¹⁰⁾ 등¹¹⁾ 대기업 계열사 20여 개, 금융 업종 13개, 건설·인프라 관련 10여 개 등이 있다.

〈표 I-8〉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개, 건)

연도	투자 금액(신고 기준)	신규 법인 수	신고 건수
2014	462	56	111
2015	71	53	154
2016	329	66	177
2017	319	61	199
2018	192	55	158
2019	45	8	2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표 I-9〉 2019년 한국기업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천달러)

업종대분류	신고 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 횟수	투자금액
농업/어업	2	-	260	5	910
광업	-	-	-	12	24,626
제조업	20	7	18,117	44	14,817
건설업	1	1	15	6	276
도매/소매업	1	-	4,942	1	526
운수/창고업	-	-	-	1	1,114
숙박/음식업	-	-	-	1	98
정보통신업	1	-	280	1	280
금융/보험업	3	-	14,227	1	10,000
부동산업	1	-	-	2	19
서비스업	-	-	-	2	19
예술/여가업	-	-	-	2	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 6) 포스코대우(가스전), 대우아마라(호텔), 포스코스틸(합석 지붕재) 등 7개 법인 운영 중
- 7) 음료수 제조 및 프랜차이즈(롯데리아) 등 4개 계열사 진출
- 8) CGV,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등 4개 계열사 및 대표사무소 운영 중
- 9) LG상사(합작투자 형태로 시멘트 및 전선사업 진출)
- 10) 삼성물산(트레이딩), 삼성전자의 판매·마케팅 지사 운영 중
- 11) SK네트웍스, 효성 등이 상사(트레이딩) 운영 중

〈표 I-10〉 한국의 대 미얀마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총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2	1,682	1,331	99.6	351	17.6	980
2013	1,193	705	-47.0	488	38.9	217
2014	1,380	800	13.5	580	18.9	220
2015	1,166	660	-17.5	506	-12.8	154
2016	1,220	761	15.3	459	-9.3	302
2017	1,036	573	-24.7	463	1.0	110
2018	1,071	534	-6.8	537	15.9	-3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표 I-11〉 한국의 대 미얀마 10대 수출입 품목

순위	수출 품목	수입 품목
1	수송기계	석유 제품
2	산업기계	농산물
3	철강 제품	신변잡화
4	직물	임산물
5	석유 제품	비철금속 제품
6	전자기기	광물성 연료
7	플라스틱 제품	전자부품
8	신변잡화	수산물
9	정밀화학 제품	제지 원료 및 종이 제품
10	석유화학 제품	수송기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II 조세제도

1. 역사적 배경

미얀마의 조세제도는 20세기 미얀마의 정치 및 사회적 변화와 그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미얀마의 대부분의 법률체계는 영국 식민 통치에 따라 불문법(Common Law) 체계를 따르고 있는 한편, 일본 식민 시대 이후 사회주의 및 군사정권하에서 근대화된 조세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군사정권이 종식되면서 제한적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로 진입하면서 조세체계의 변모를 추구하게 되었다.

가. 미얀마 조세제도의 주요 연혁

미얀마 정부는 2011년 제한적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에 돌입하면서 조세제도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얀마의 식민지 체제 이후 조세제도의 주요 연혁을 요약하면 <표 I-12>와 같다.

<표 I-12> 조세제도의 주요 연혁

구분	연도	주요 연혁
사회주의 및 군사정부	1974년	「소득세법(Income Tax Law 1974)」
	1976년	「이익세법(Profit Tax Law 1976)」 및 「부가가치세법(Good and Service Tax 1976)」 제정
	1990년	「부가가치세법」 폐지 「상업세법(Commercial Tax Law 1990)」 제정
제한적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	2011년	「이익세법」 폐지
	2012년	16개의 고시(Notification)을 통한 「소득세법」 및 「상업세법」 대폭 개정
	2014년	「통합조세법(Union Tax Law)」 제정 ¹²⁾
	2016년	「특별소비세법(Specific Goods Tax Law 2016)」 제정
	2019년	「조세행정법(Tax Administration Law 2019)」 제정 ¹³⁾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12) 「통합조세법」은 「소득세법」, 「상업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및 각각의 법률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는 세율, 면제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2014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매년 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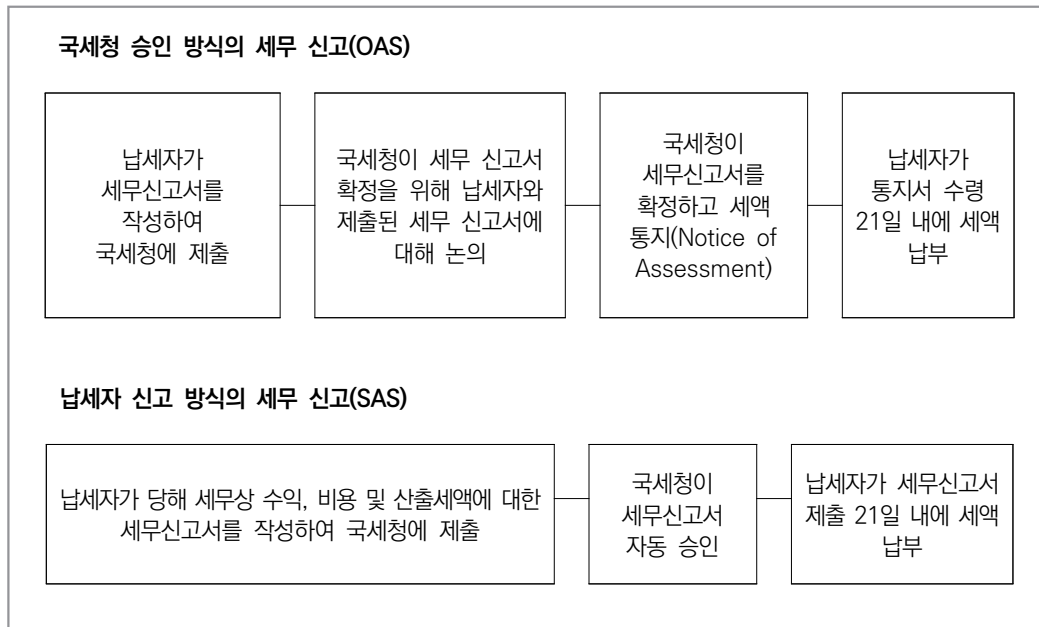
13) 미얀마 정부는 조세제도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세행정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 「상업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행정 절차를 규정한다.

현재 적용되는 주요 세법은 「소득세법(Income Tax Law 1974)」, 「상업세법(Commercial Tax Law 1990)」, 「통합조세법(Union Tax Law 2016)」, 「특별소비세법(Special Goods Tax Law 2016)」 및 「조세행정법(Tax Administration Law 2019)」 등이다.

미얀마 정부는 2011년 체제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통합조세법」 및 「조세행정법」의 제정은 조세제도 선진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및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 등으로부터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다.

최근 미얀마 정부는 조세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세무 신고의 방식을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 IRD) 승인 방식(Official Assessment System, OAS)에서 납세자 신고 방식(Self-Assessment System, SAS)으로 변경하였으며, 대규모 납세자(Large Taxpayer)부터 순차적으로 납세자 신고 방식(SAS)을 적용하고 있다.¹⁴⁾

[그림 I-11] 세무 신고 방식



자료: 미얀마 국세청(IRD), "Self-Assessment System and how does it work," <https://www.ird.gov.mm/sites/default/files/SAS.pdf>, 검색일자: 2020. 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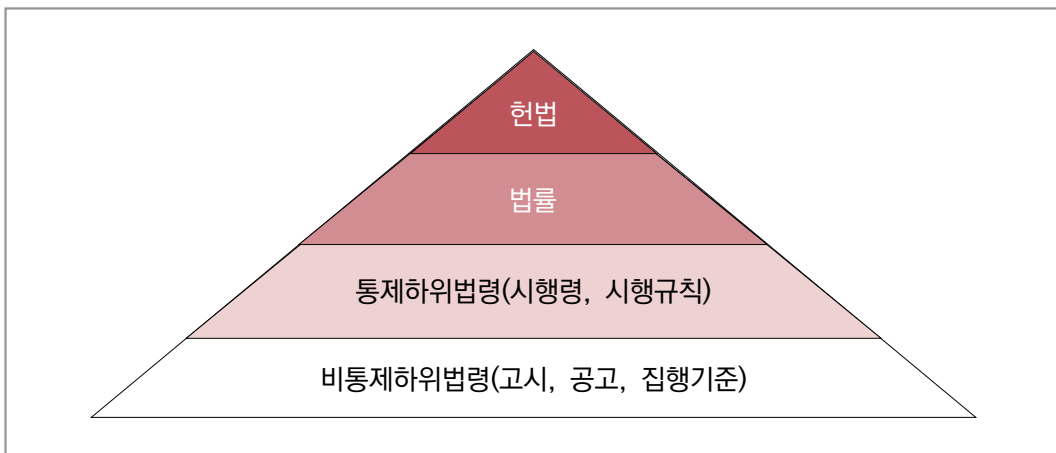
14) 대규모 납세자(Large Taxpayer)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중규모 납세자(Medium Taxpayer)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1일부터 납세자 신고 방식(SAS)을 적용하고 있다.

2. 조세체계

가. 미얀마의 법령 체계

미얀마는 2008년 제정된 「헌법」을 국가의 근본법으로 삼고 있으며, 이 외 각종 법률과 법령이 있다. 법률(Law, Act)은 연방정부 또는 의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에서 의결되면 법률로서 인정되며, 하위 법령(Rule, Regulation, Directive, Notification Ordinance 등¹⁵⁾)은 정부 부처(Ministry)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각 국(Department)에서 발령한다. 미얀마의 법령체계는 [그림 I-1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I-12] 법령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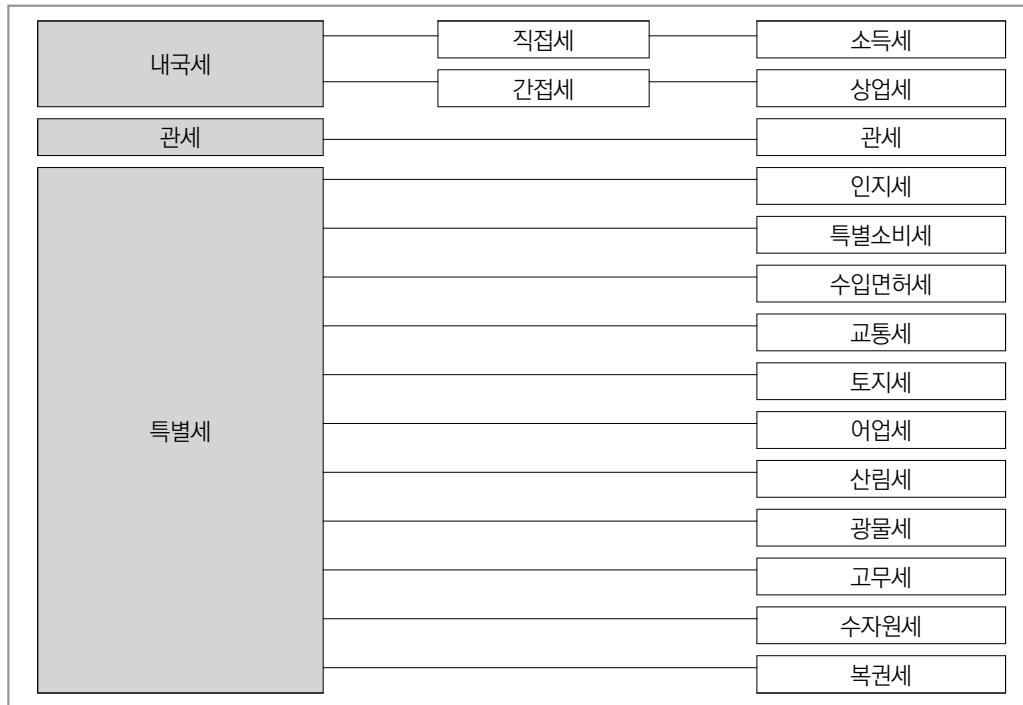
자료: 최봉래,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보급 등』, 법제처, 2017, p. 45, http://world.moleg.go.kr/cms/monDown.do?DLD_CFM_NO=D6O2L2D0YBONZSG759NO&FL_SEQ=43906, 검색일자: 2020. 12. 22.

나. 조세의 종류

현재 미얀마에는 15종류의 조세가 있으며, [그림 I-13]와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5) 이하 본문에서 Rule은 시행령, Regulation은 집행기준, Notification은 고시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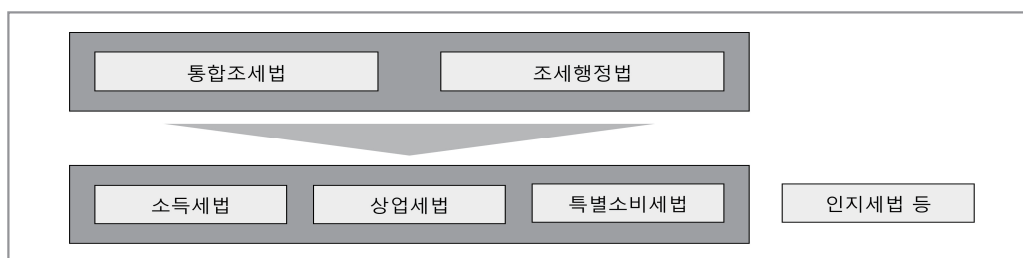
[그림 I-13] 미얀마의 조세



자료: 국세청, 『미얀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2012, p. 11.

미얀마의 주요 세법은 「소득세법」¹⁶⁾, 「상업세법」 등이며, 「통합조세법」과 「조세행정법」은 「소득세법」, 「상업세법」, 「특별소비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조세행정법」은 여러 조세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세행정 절차를 규정하며, 「통합조세법」은 세율, 조세 혜택 등을 개정 및 신설하기 위해 매년 개정된다.

[그림 I-14] 주요 세법의 체계



자료: 저자 작성

16) 미얀마의 「소득세법」은 법인 및 개인 납세자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규정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법인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조세의 법원성(Source of law)

미얀마 법률의 기본 체계는 불문법(Common law, 앵글로아메리카)을 따른다¹⁷⁾. 불문법은 보통법 또는 판례법(Case law)이라고도 불리며, 이 법체계에서는 각각의 사건에 내려진 판사·법원 및 이와 유사한 재판소의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¹⁸⁾. 이는 1824년부터 1948년의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배로 인한 결과이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Income Tax Rules 2012)」, 「소득세법 시행규칙(Income Tax Regulations 2012)」, 「통합조세법」 및 「조세행정법」을, 상업세의 경우 「상업세법」, 「상업세법 시행령(Commercial Tax Regulation)」, 「통합조세법」 및 「조세행정법」을 1차적인 법원으로 하고 있다.

3. 과세권자

미얀마의 조세 업무는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y, MOPFI)¹⁹⁾가 총괄하며, 실무적으로는 그 산하의 국세청, 관세청(Customs Department) 및 지방 세무서(Local Tax Office)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국세청의 권한과 의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조세의 징수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할 권한을 지니며, 조세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 국세청장의 권한

국세청장(Director General of the IRD)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에서 제공한 세법

17) 법제처, 『영국의 법률체계』,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2017, p. 2.

18) 불문법과 대비되는 개념은 성문법으로 이 법체계에서는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문서화된 법을 따른다. 한편, 불문법은 이와 달리 사건 속에서 보편적인 법 원칙을 발견하는 원리를 따른다. 미국 법률가 홉즈가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19) 미얀마 기획재정부(MOPFI) 산하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Revenue Appellate Tribunal)을 포함한 총 18개의 국이 존재한다.(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https://www.mopfi.gov.mm/en/page/ministry/402>, 검색일자: 2020. 10. 5.)

해석 사전답변(Advance Ruling)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동 수정 또는 취소는 소급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국세청장은 특정 법률의 실무적 처리에 관한 해석 등을 발표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가공 또는 분식 거래를 부인할 수 있으며,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또는 가공 거래 등을 실질에 비추어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과세연도 종료 후 6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세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세액의 분납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국세청에 요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 회신받지 못할 경우 요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납세자가 특정 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미납세액에 상응하는 납세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2) 국세청장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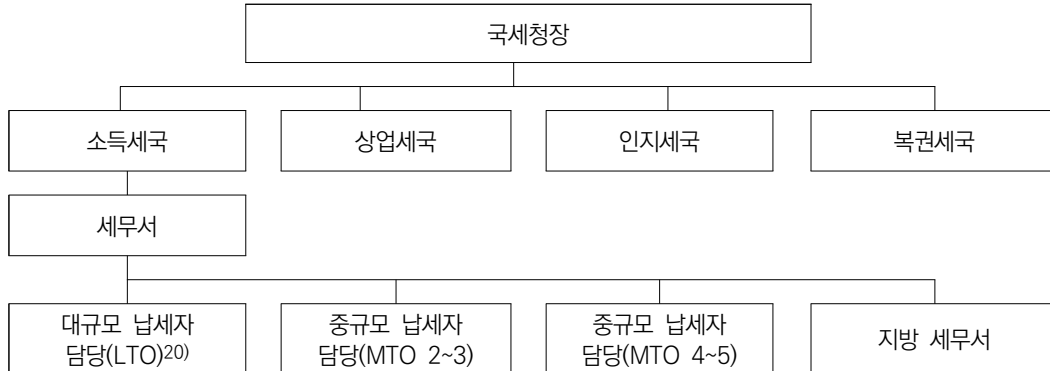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조세 채무 관련 문서를 송달할 때 반드시 납세자의 세무등록번호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를 기재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결정세액에 대한 통지서 수취 후 30일 이내에 결정세액에 대한 경정 또는 재결정을 요구할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의 과세 관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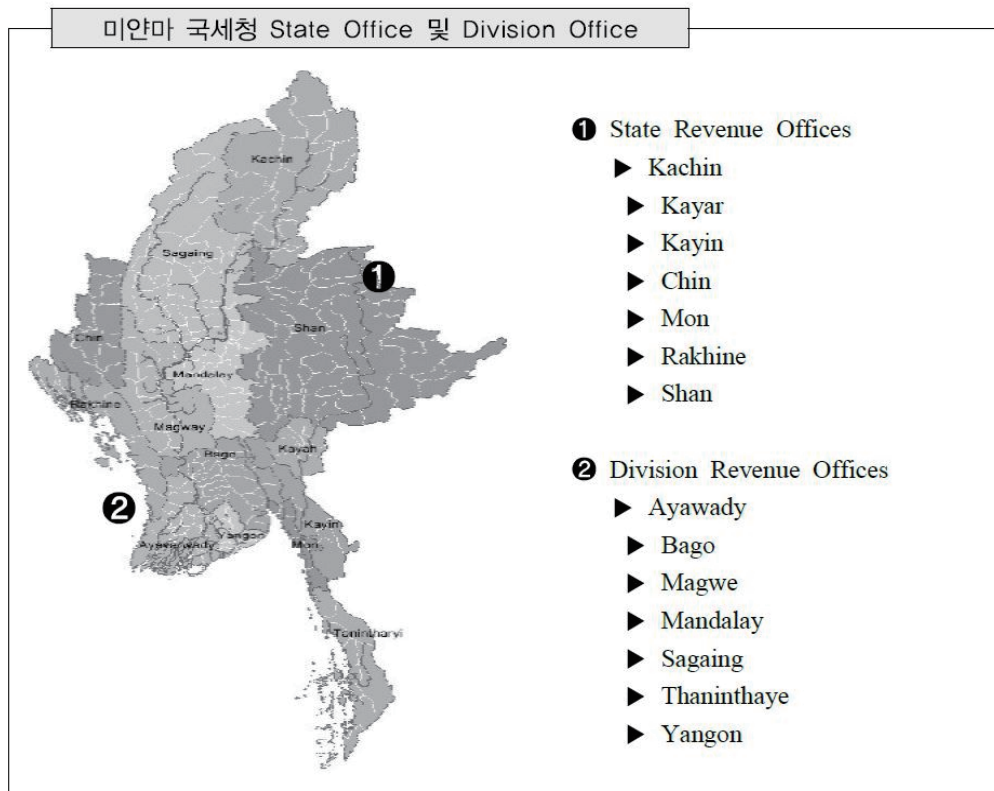
미얀마는 연방정부와 14개 지방정부(7개 Region, 7개 St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조직도는 [그림 I-15]와 같다.

[그림 I-15] 미얀마 국세청 조직도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그림 I-16] 미얀마 국세청 및 세무서 위치



자료: 국세청, 『미얀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2012, p. 13.

20) 대규모 납세자 담당 세무서(LTO)와 중규모 납세자 담당 세무서(MTO) 2~3은 납세자 신고 방식(SAS)을 적용하고, 중규모 납세자 담당 세무서(MTO) 4~5 및 지방 세무서는 국세청 승인 방식(OAS)을 적용한다.

4. 조세행정

「조세행정법」은 조세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2019년 10월 1일 발효되었으며, 「조세행정법」의 제정 목적은 소득세, 상업세, 특별소비세 및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조세의 행정 규정을 총괄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조세행정법」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의 효율성 및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과세기간, 제척기간, 세액의 경정 및 결정, 조세불복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 과세기간

미얀마의 과세기간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며, 이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2018년 9월까지의 과세기간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현재의 과세기간으로 변경되었다.

정부기관 등에는 2018년부터 이러한 과세기간 변경이 적용되어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를 1 과세기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를 1 과세기간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는, 2019년부터 과세기간 변경이 적용되어 201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가 각각 1 과세기간으로 구분된다.

〈표 I-13〉 미얀마의 과세기간

회계연도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	이 외 일반 납세자
2018. 10. 1. 이전	20XX. 4. 1.~3. 31.	20XX. 4. 1.~3. 31.
전환기 (Transition Period)	2018. 4. 1.~9. 30.	20XX. 4. 1.~3. 31.
2019. 4. 1. 이전, 2018. 10. 1. 이후	20XX.10. 1.~9. 30.	20XX. 4. 1.~3. 31.
전환기 (Transition Period)	해당 없음	2019. 4. 1.~9. 30.
2019. 10. 1. 이후	20XX. 10. 1.~9. 30.	20XX. 10. 1.~9. 30.

자료: 미얀마 기획재정부(MOPFI) 고시, Notification 64/2019.

나. 부과제척기간

「조세행정법」 도입 이전 소득세, 상업세 및 특별소비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였으나(소득세 및 상업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년, 특별소비세의 경우 부과고지 후 3년), 2019년 10월 「조세행정법」 도입에 따라 상기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조세의 부과 대상 기간 종료 후 6년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소득세와 상업세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변경에 따른 전환기를 <표 I-14>와 같이 지정하였다.

<표 I-14> 세목별 부과제척기간

(단위: 년)

회계연도	소득세	상업세	특별소비세
FY2019 이전	3	3	3
FY2019~2020	3	3	6
FY2020~2021	4	4	6
FY2021~2022	5	5	6
FY2022 이후	6	6	6

자료: 미안마 국세청(IRD), Public Ruling No.1/2020.

다. 결정과 경정

납세자 신고 방식(SAS)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결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조세 신고서를 대상 사업연도 종료 후 6년 이내에 재조사하여 경정 및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고의적 오류 및 누락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12년간 재조사 및 경정 결정이 가능하다.²¹⁾

라. 가산세 등 처벌에 관한 규정

「조세행정법」은 다양한 조세들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처벌 제도를 규정한다. 처벌의 종류는 특정 조세법 위반 사항에 형사책임이 수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어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가해진다.

21) 「소득세법」 제29조

〈표 I-15〉 형사처벌 유무에 따른 처벌의 구분

구분	형사처벌 ○	형사처벌 ×
조세법 위반 사항의 종류	사기, 탈세,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 등	좌측 열거된 행위 외의 「조세법」 위반 사항
처벌의 종류	징역, 가산세 등	가산세, 지연이자 등
부과제척기간	12년	7년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표 I-16〉 위반 사항별 처벌 규정²²⁾

위반 사항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등록 미이행 주소, 사업활동 변경 등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 미이행 세무 등록 말소 미이행 	해당 조세(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상업세 등)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확한 세무등록번호 사용 부정확한 송장 및 영수증 발행 부정확한 회계 처리 송장, 영수증, 장부 등 자료 미제출 	MMK 25만(약 22만원 상당)의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할 세액의 5% 및 지연이자(월1%) 또는 MMK 10만(약 9만원 상당)의 가산세 중 높은 금액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 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할 세액의 10% 기획재정부(MOPFI)가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세의 목적으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부주의로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되어 세액을 과소 납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소 납부세액의 25% 단, 과소 납부세액이 MMK 1억(약 8,900만원 상당) 이상이거나 과소 납부세액이 실제 납부세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소 납부세액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MMK 15만(약 13만원 상당)의 가산세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과 환급받았어야 할 세액의 차액 단, 납세자의 위반 행위에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벌과금이 면제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세의 목적으로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세 행위로 부적절하게 경감된 세액의 100% 및 최대 MMK 25만(약 22만원 상당)의 벌과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22) 본 보고서에서는 미얀마 현지 통화와 원화를 복기하였으며, 원화 환산 시 2020년 10월 5일 미얀마 중앙은행 공시 환율(CENTRAL BANK OF MYANMAR, "Reference Exchange Rate," <https://forex.cbm.gov.mm/index.php/fxrate>, 검색일자: 2020. 10. 5.)을 적용하였다(이하 동일).

〈표 I-16〉의 계속

위반 사항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부 보존 의무의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할 세액이 MMK 50만(약 45만원 상당) 이하인 경우, 미이행 일수 당 MMK 5천(약 4천원) 납부할 세액이 MMK 500만(약 400만원 상당) 이하인 경우, 미이행 일수당 MMK 50만(약 45만원 상당) 납부할 세액이 MMK 500만(약 400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미이행 일수당 MMK 10만(약 9만원 상당) 국세청장은 최대 30일에 대한 벌과금을 면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로서의 의무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로서 납부할 세액과 과세통지서상 세액의 차이 금액에 대해 25%를 가산세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에 대한 납세협력의무 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MMK 50만(약 45만원)의 가산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제출 요구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MMK 50만(약 45만원 상당)의 벌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적으로 조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다음 예시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 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당국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무 공무원의 사무실 또는 거주지 방문을 방해하는 경우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확한 세무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확한 송장,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의 토지 검사를 방해하거나 토지 검사를 위한 관련 자료(지도, 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외 다른 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 및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MMK 25만(약 22만원 상당)의 벌과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세 행위의 방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세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의 비밀 유지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MMK 20만(약 18만원 상당)의 벌과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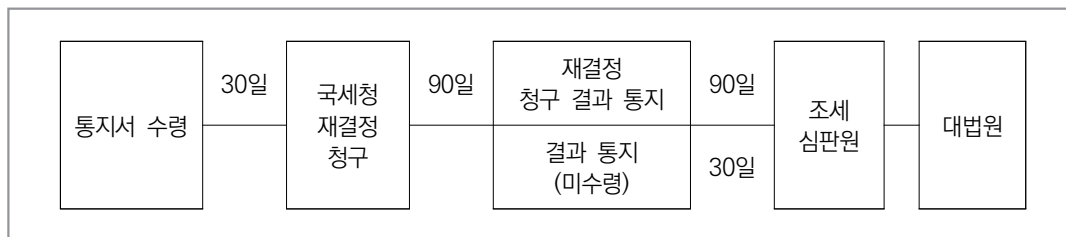
「조세행정법」에 의거 국세청장은 벌과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벌과금의 부과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 또는 「조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납세자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마. 조세불복제도

납세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지서 수령 3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재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재결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납세자에게 검토 결과에 대해 90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²³⁾

만약 납세자가 국세청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의 서면 회신 수령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Revenue Appellate Tribunal)에 조세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기한 내 서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조세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세쟁송의 양 당사자 중 적어도 하나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대법원(Union Supreme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²⁴⁾

[그림 I-17] 조세쟁송 절차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미얀마 내 사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세무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세무 장부, 발주서, 송장, 은행계좌 명세서, 수출입 명세서 등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세무상 수익 및 비용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련 자료를 거래 종료 후 7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의 세무등록번호와 거래내역 또한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재무제표, 주요 거래의 기표 내역, 국세청과의 질의회신 등 중요한 자료의 경우 미얀마 현지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 「소득세법」 제32조

24) 「소득세법」 제33조

Ⅲ 최신 조세동향

1. 조세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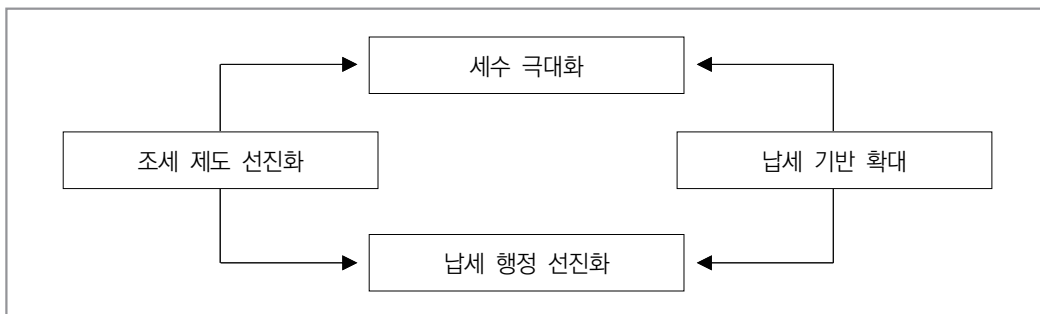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얀마 정부는 제한적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조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에 「통합조세법」을 도입하여 「소득세법」, 「상업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2019년 「조세행정법」을 시행함으로써 조세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다양한 조세제도 선진화 규정, 조세회피 방지 규정 및 국제조세 관련 동향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국내 세법에 도입하기 위해 2019년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조세행정법」의 구성에 대해 개괄하고(「조세행정법」의 주요 내용은 제2장 조세제도, IV. 조세행정에서 기술하였다), 2019년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는 한편, 2019년 「통합조세법」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가. 「조세행정법」

「조세행정법」은 미얀마 국세청의 조세 개혁 계획(Tax Reform Plan for FY2017~18 to FY2021~22)의 일환으로 ① 납세 행정 ② 조세 제도의 선진화 ③ 세수 극대화 및 ④ 납세 기반 확대를 추구하기 위해 2019년 신설한 법률이다(2019년 10월 1일부로 발효).

[그림 I-18] 국세청의 전략적 목표



자료: 미얀마 국세청, *Reform Journey: A Plan to Mobilise Domestic Revenue 2017-18 to 2021-22*.

「조세행정법」은 소득세, 상업세, 특별소비세 및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조세의 행정 규정을 총괄하며, 납세자와 국세청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한다. 「조세행정법」은 <표 I-17>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표 I-17〉 「조세행정법」의 구성

Part A	예규 및 사전 답변 공시, 조세회피 방지 규정 등
Part B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권리·의무
Part C	벌과금 등 처벌 규정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나. 「소득세법 개정안」(2019년 10월)

미얀마 국세청은 2019년 10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존 「소득세법(Income Tax Law 1974)」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 및 국제 기준에 따른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현재 불확실하나, 시행 시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모두 대체하게 되며,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시행 이후 파급효과를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세 회피 방지 규정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
- 구조조정(Corporate Reorganization) 관련 규정
-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세무 신고·납부 규정
- 채굴, 금융, 보험업에 적용되는 특별 세무 규정
- 원천징수 규정
- 파트너십(Professional Partnerships)에 대한 과세 규정
- 외국 납부세액공제 규정
- 금융 리스(Financial Lease)에 대한 규정
- 장기 계약(Long-term Contract)에 대한 규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
- 외환차손익에 대한 규정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규정
- 조세조약 우선 적용(Tax Treaty Override)에 관한 규정
- 비현금성 급여(Non-cash Benefit) 등에 대한 과세 규정

다. 「통합조세법 2019」

기획재정부(MOPFI)는 매년 「통합조세법」을 제정하며 동법은 「소득세법」, 「상업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에 대한 세율과 조세 감면 및 조세 혜택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통합조세법 2019(Union Tax Law 2019)」는 2019년 9월 24일에 제정되어 10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다이아몬드·에메랄드에 대한 소비세 면제 및 소득세율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특별소비세

「통합조세법 2019」는 미얀마 내에서 생산되거나 거래(수출입 포함)되는 특정 재화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판매가 중 가장 높은 금액 또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국세청이 정하는 예상 판매가이다. 수입품의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수입품의 관세가격 중 가장 높은 금액 또는 국세청이 정하는 수입 대가이다. 2018 과세연도 대비 특별소비세율이 변경된 재화는 <표 I-18>과 같다.

<표 I-18> 2019 과세연도 재화별 특별소비세율

재화	과세표준/구분	특별소비세율(2019)
담배	MMK 600 이하	MMK 8/갑
	MMK 600 초과, MMK 800 이하	MMK 17/갑
	MMK 800 초과, MMK 1,000 이하	MMK 22/갑
	MMK 1,000 초과	MMK 25/갑
궤련초(Cheroot)	MMK 0.75/개비	
주류	MMK 15,000 이하	MMK 1,000당 일정 금액 과세 (주류별 상이)
	MMK 15,000 초과	60%

〈표 I-18〉의 계속

재화	과세표준/ 구분	특별소비세율(2019)
원석 및 보석	옥 원석	11%
	루비, 사파이어 및 이에 준하는 등급의 원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제외 ²⁵⁾)	9%
	가공된 옥, 루비, 사파이어 및 기타 유사한 등급의 원석이 포함된 보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제외)	5%
	상기 외 원석으로 만든 제품	5%
수출 재화	천연 가스	(2018년 5%)
	통나무 및 목재	10%
	옥 원석	15%
	루비, 사파이어 및 이에 준하는 등급의 원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제외)	10%
	가공된 옥, 루비, 사파이어 및 기타 유사한 등급의 원석이 포함된 보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제외)	5%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2) 상업세

「통합조세법 2019」는 다음 재화와 용역에 대해 상업세를 면제한다.

- 땅콩 오일
-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 목화, 목화 씨앗 등 면직물의 원재료
- 국영 상점에서 판매하는 순금(금괴, 금화, 금덩이 등), 옥, 루비, 사파이어 및 기타 보석
- 미얀마 우체국의 우편 서비스
- 국내 또는 국제 조직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이나 보조금으로 구매하여 정부에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

3) 소득세

「통합조세법 2019」에 따른 소득세율은 인상·인하 없이 전년과 동일하며, 개인 납세자의 기본 소득공제 금액도 MMK 480만(약 400만원 상당)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25) 미얀마 정부는 보석 세공을 통한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등 보석 87종에 대해 특별소비세(보석세)를 면제한다.

한편 기존 「소득세법」상 미과세소득(Escaped Income from Assessment)은 별도의 비용 공제 없이 30%로 과세되며, 만약 미과세소득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공제 후 누진세율로 과세하는데, 2019 과세연도(2019. 10. 1~2020. 9. 30)에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세율 및 소득구간을 <표 I-19> 및 <표 I-20>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표 I-19> 기존 미과세소득 세율

(단위: %)

과세표준	세율
MMK 30,000,000(약 2,700만원 상당) 이하	15
MMK 100,000,000(약 8,900만원 상당) 이하	20
MMK 100,000,000 초과	30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표 I-20> 2019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미과세소득 세율

(단위: %)

과세표준	세율
MMK 100,000,000(약 8,700만원 상당) 이하	3
MMK 300,000,000(약 2억 7천만원 상당) 이하	5
MMK 1,000,000,000(약 8억 9천만원 상당) 이하	10
MMK 3,000,000,000(약 26억 7천만원 상당) 이하	15
MMK 3,000,000,000 초과	30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4) 처벌 규정

<표 I-21> 「통합조세법 2019」에 따른 신설 처벌 규정

특별 소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소비세 납부 없이 특별소비세 대상 재화를 보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신고하는 이에게 해당 재화의 특별소비세 미납 관련 가산세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 ▷ 특별소비세 납부 없이 특별소비세 대상 재화를 보유하는 사람을 체포하여 신고하는 이에게 관련 가산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상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거래 시 매수자에게 세금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을 발급하지 않거나 직인(Tax Stamp)이 부착되지 않은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건별 다음의 가산세를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금액의 100% ▷ 첫 위반 시 MMK 500,000(약 45만원 상당) ▷ 두 번째 위반 시 MMK 1,000,000(약 89만원 상당) ▷ 세 번째 위반 시 MMK 1,500,000(약 113만원 상당) ▷ 네 번 이상 위반 시 MMK 2,000,000(약 178만원 상당)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2. 최근 세법 개정 내역

미안마 국세청은 개별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표된 국세청 고시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I-22>와 같다.²⁶⁾

<표 I-22> 2010~2020 주요 세법 개정 내역

날짜	유관부서	고시	내역
2010. 10. 3.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41/2010	동 고시에서 열거하는 금액(급여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도입
2011. 8. 26.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167/2011	「소득세법」 일부 개정(개정 내역은 고시 공시 직후 적용)
2014. 3. 24.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15	「소득세법」 일부 개정(개정 내역은 2014 과세연도 부터 적용)
2014. 3. 24.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16	「상업세법」 일부 개정(개정 내역은 2014 과세연도 부터 적용)
2014. 8. 27.	국세청, 기획재정부	Directive No.07/2014	비공개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특정 요건 만족 시 상업세를 면제하는 규정 도입
2015. 1. 21.	국세청,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180/2015	「상업세법」 일부 개정(개정 내역은 2014 과세연도 부터 소급 적용)
2015. 1. 21.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182/2015	「소득세법」 일부 개정(개정 내역은 2014 과세연도 부터 소급 적용)
2015. 1. 22.	국세청	Notification No.4/2015	특정 재화 수입·생산 또는 판매 시 직인을 부착하는 의무 도입
2015. 4. 2.	기획재정부	-	「상업세법」 일부 개정
2015. 4. 9.	연방정부	Registration No.39	급여 소득세 계산 규정 명료화
2016. 2. 4.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17/2016	수출입 재화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도입
2016. 2. 4.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18/2016	「상업세법」 일부 개정(개정 내역은 2016 과세연도 부터 적용)
2016. 2. 4.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19/2016	「소득세법」 일부 개정(개정 내역은 2015 과세연도 부터 소급 적용)
2016. 8. 31.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36	「소득세법」 일부 개정(개정 내역은 2016 과세연도 부터 적용)

26) 개별 고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시 원문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표 I-22〉의 계속

날짜	유관부서	고시	내역
2017. 1. 10.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2/2017	동 고시에서 열거하는 금액(급여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개정(과거 규정 무효화)
2017. 4. 24.	국세청	Publication	특별소비세 대상 재화,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 자료 발간
2017. 4. 24.	국세청	Publication	세무서를 납세자 규모별로 구분하여 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구성((Large/Medium Taxpayers Offices)
2018. 11. 14.	기획재정부, 국세청	Notification No.2/2018	종교 및 자선단체에 납부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 명료화
2019. 2. 28.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28/2019	미얀마 내 거주하며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외국 대사 관의 상업세 환급세액에 대한 절차 안내
2019. 4. 8.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38/2019	수출입 재화에 부과되는 원천세의 세율과 절차 공시
2019. 4. 19.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6/2019	아파트 및 주택 임대와 관련하여 임대료를 선급받는 경우 상업세 납부 시기 명료화
2019. 5. 14.	국세청	Publication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안내
2019. 5. 15.	국세청	Letter No.4(1)	소득세 과세연도 변경
2019. 8. 5.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64/2019	신규 과세연도로의 변경을 위한 전환기(Transition Period) 설정
2019. 8. 23.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69/2019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자금을 차입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세제혜택 요건 명료화
2019. 10. 17.	기획재정부, 국세청	예규 1/2019	「조세행정법」 도입에 따라 세법의 해석 및 예규는 「조세행정법」에서 다루어짐을 공시
2020. 1. 27.	기획재정부, 국세청	예규 1/2020	조세 징수, 조세 위반 사항 처벌 등은 「조세행정법」에서 일괄적으로 다루어짐을 명료화
2020. 2. 6.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23/2020	상업세가 부과되지 않는 12가지 종류 용역에 대한 안내
2020. 5. 15.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No.56/2020	「상업세법 시행규칙」 제42조 d항에 따른 고정자산 매입 시 상업세 매입세액 공제 규정 무효화(2019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
2020. 6. 10.	기획재정부	Notification 62/2020	원천세 납부기한과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특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명료화(2019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 신흥국의 세정연구 미얀마 •

제2장 주요 세법

- I. 법인소득세
- II. 개인소득세
- III. 국제조세
- IV. 소비세
- V. 기타 조세



제2장 | 주요 세법

I 법인소득세

1. 서론

미얀마 「소득세법」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별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법인과 개인의 과세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미얀마 내국법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외국법인은 미얀마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세율은 일반적으로 25%이다. 양도소득은 10%의 세율(특정 업종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로 분리과세된다. 미얀마 세법은 법인 단계 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바, 법인에서 과세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주주 단계에서는 비과세된다.

미얀마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소득세법」상 법인의 사업소득 계산방식에는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미얀마 국세청이 재량권을 상당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비단 법인 납세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얀마 「소득세법」상 과소자본세제, 이자비용 공제 한도 규정, 이전가격 규정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미얀마 정부는 2019년 10월 이러한 내용과 조세회피 방지 규정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바, 향후 미얀마의 전반적인 「소득세법」 개정 및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는 현행 미얀마 「소득세법」상 법인 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소득, 세율, 법인소득세 계산 방식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개괄하였다.

2. 납세의무자

가. 거주자의 정의

미얀마 「소득세법」상 법인은 오직 설립지 및 설립 근거법에 따라 세무상 거주지가 결정되며,²⁷⁾ 의사결정이나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세무상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 또는 기타 미얀마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세무상 미얀마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협동조합(Association)²⁸⁾의 경우 세무상 거주자 판단 시 설립지와 근거법뿐 아니라 실질적 관리 장소가 함께 고려된다.²⁹⁾

한편 세무상 미얀마 거주자로 분류되는 법인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일반 내국법인과 달리 ‘미얀마 거주자인 외국법인’(Resident Foreigner)으로 분류된다.³⁰⁾ 이 같은 분류는 세무상 거주자 판단 관점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미얀마 회사법」, 「미얀마 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 MIL)」,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Law)」 등 다른 법률 관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과 미얀마 거주자인 외국 법인은 토지의 장기임대 계약 체결 자격요건에 차이가 존재한다.

현행 미얀마 「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정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 납세의무자

미얀마 거주자인 법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얀마 내 과세된다.³¹⁾ 다만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로부터 미얀마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미얀마 내에서 과세되도록 승인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미얀마 거주자가 아닌 법인은 미얀마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미얀마 내 과세된다. 실무적으로는 미얀마 내 등록된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³²⁾에 대해서만 미얀마 원천 소득에 대해 일반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 외 외국법인의 경우 미얀마 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27) 「소득세법」 제3조(o)

28) Partnership, joint-venture, association 등

29) 「소득세법」 제3조(k)(iii)

30) 「소득세법」 제3조(k)(ii)

31) 「소득세법」 제4조

32) 외국법인의 지점은 세무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특정 소득에 대해 2.5%의 완납적 원천세(Final Withholding Tax)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³³⁾

2018년 8월 1일 이후부터 미얀마 내에서 30일 이상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계획이 있는 외국법인은 미얀마 내 세무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표 II-1〉 법인의 세무상 구분

구분	내국법인 (100%)	거주자 외국법인	외국법인 (100%)
미얀마 내 설립 여부	O	O	X
외국인 주주 존재 여부	X	O	O
세무상 미얀마 거주자 여부	O	O	X
미얀마 내 과세 대상 소득	전세계 소득		미얀마 원천 소득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3. 과세소득

미얀마 거주자인 법인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반면, 비거주자인 법인은 미얀마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담한다. 본 장에서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제3장 국제조세'에서 살펴본다.

미얀마 「소득세법」상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이 중 양도소득은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 사업소득(Business Income)
- 임대소득(Income from Property)
- 양도소득(Income from Capital Gains)
-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
- 미과세소득(Escaped Income from Assessment)

이하에서는 사업소득 등과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소득 계산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33) 원칙적으로 미얀마 내 등록된 지점이 없는 외국법인의 미얀마 원천 소득은 관련 비용 공제 후 일반 법인세율(25%)을 적용하여 과세될 수 있으나, 미얀마 과세당국은 실무적으로 총소득의 2.5%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한다.

가. 사업소득 등

1) 수익

미얀마 「소득세법」은 수익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미얀마 내에서 수행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의미한다.³⁴⁾ 예를 들어 수입 등의 상품 조달, 용역 제공, 상거래, 제조 등의 활동은 사업 활동으로 분류되며,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창출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동산 및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이자소득은 사업활동에 의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한편 상품이 미얀마 내에서 판매되었으나 판매자가 상품의 수입자가 아니며, 미얀마 내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동 소득은 미얀마 법인세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용

손금불산입 대상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본적 지출, 사적경비, 업무무관 비용 등은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이다.

가) 감가상각비

법인 납세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 중 「소득세법」에 따른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기획재정부(MOPFI) 고시³⁵⁾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³⁶⁾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세무상 감가상각이 가능하나, 동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에는 세무상 감가상각이 불가하다.

주요 감가상각 대상 자산별 감가상각률을 요약하면 <표 II-2>와 같으며, 이외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미얀마 국세청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으나, 미얀마 국세청은 다른 감가상각률 적용 허용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4) 「소득세법」 제4조(a)

35) Notification No.19/2016: 기획재정부(MOPFI)

3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표 II-2〉 자산별 감가상각률

(단위: %)

자산의 분류	감가상각률
건물	1.25~10
비품 등	5~10
기계장치 및 플랜트	5~10
차량 등	5~20
기타 유형자산(Fixed Asset)	5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한편 「소득세법」상 무형자산의 감모상각(Amortization)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기획재정부(MOPFI) 고시³⁷⁾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유한하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형자산의 경우 세무상 감모상각이 가능하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경제적 내용연수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들은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상각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추가로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가속상각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가속상각률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서 별도로 정한다.

나) 이자비용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이자비용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손금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당 이자비용이 과세소득 창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손금에 산입한다는 해석에 의존하여 손금산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실무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상 공제는 이자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 또는 이자비용을 납부한 사업연도에 한해서만 공제되는 추세로 보인다.

한편 건설 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자산화한 경우, 동 이자비용이 향후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 처리를 하기 전 국세청에 예규 질의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 기부금

국세청 고시³⁸⁾에 따르면 기부금은 종교 단체 또는 미얀마 법에 따라 설립된 자선단체에

37) Notification No.62/2020, 기획재정부(MOPFI)

지급한 것으로, 해당 자선단체 등이 이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기부자 입장의 세무상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라) 외환차손

사업 활동과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거나 수익에 해당하나,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과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화평가차손익은 사업소득 계산 시 고려되지 않는다.

마) 임대소득 관련 비용

임대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일반 사업소득 비용과 유사하게 세무상 공제 여부를 판단하나, 감가상각비는 세무상 공제가 불가하다.

바)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

다음의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자본화 필요)
- 업무 무관 경비 등

나.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양도대가에서 취득원가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며,³⁸⁾ 양도대가가 MMK 1천만 (약 890만원 상당)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 양도대가

미얀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 및 매각 등을 통해 발생한 양도대가를 의미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채권 및 기타 금융자산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미얀마 국세청이 양도대가가 시가보다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양도대가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미얀마 국세청은 시가에 따라 재산정한 금액을 양도대가로 할 수 있다.

38) Notification No.2/2018: 국세청(IRD)

39) 「소득세법」 제14조

2) 취득원가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시 다음에 열거한 비용은 양도대가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세무상 장부가액
- 양도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관련 비용
- 양도자산 관련 취득 부대 비용

납세자가 양도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⁰⁾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 대가 - 취득원가(세무상 장부가액) - 양도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 양도자산 취득 부대비용
--------------	---

다. 비과세소득

다음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⁴¹⁾

- 종교·자선단체가 종교·자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소득
- 지방 정부의 소득
- 보험금
- 배당금
- 비경상적 성격의 소득(양도소득 제외)
-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소득(해당 소득이 MMK 1천만(약 890만원 상당)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며 초과분은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됨)

4. 결손금의 처리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 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손실을 결손금이라고 한다. 결손금은 그 원천에 따라 사업손실과 양도손실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4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41) 「소득세법」 제5조

가. 사업손실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결손금은 일반적인 소득과 상계 가능하며, 3년간 이월 공제 가능하다. 소급 공제는 불가하다.⁴²⁾

나. 양도손실

양도손실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의미하며,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양도손실은 양도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월 공제는 불가하다.

5. 세율과 세액의 계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 세율

1) 일반 소득세율

법인의 형태별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표 II-3>과 같다.

<표 II-3> 법인 형태별 소득세율

(단위: %)

법인 구분	세율
「미얀마 회사법」 또는 「특별회사법(Special Companies Act)」을 적용받는 법인	25
「미얀마 투자법」 적용을 받는 법인	25
정부 기관	25
외국법인(외국법인의 지점 포함)	25
양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	20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42) 「소득세법」 제20조

2)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은 일반 과세소득과 달리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며, 일반 세율은 10%이나, 원유 및 가스 관련 업종은 증가한다.

〈표 II-4〉 업종별 양도소득세율

		(단위: %)
업종	과세표준	세율
원유 및 가스 관련 업종	MMK 1,000억(약 890억원 상당) 이하	40
	MMK 1,000억 초과~1,500억(약 1,340억원 상당) 이하	45
	MMK 1,500억 초과	50
상기 외 모든 산업	10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나. 세액의 계산

법인의 사업소득 등은 〈표 II-5〉와 같이 관련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양도소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적용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표 II-5〉 법인의 소득세액 계산 예시

사업소득 관련 수익(A)	-
사업소득 관련 비용(B)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급여	-
일반관리비	-
이자비용	-
감가상각비	-
외국납부세액	-
특별소비세 납부세액	-
기타	-

[표 II-5]의 계속

사업소득(C=A-B)	-
임대소득 관련 수익(D)	-
임대소득 관련 비용(E)	-
수리비 및 유지비	-
이자비용	-
보험료	-
수도광열비	-
경비비	-
감가상각비	-
기타	-
임대소득(F=D-E)	-
기타소득(G)	-
각 사업연도 소득(H=C+F+G)	-
이월결손금(I)	-
과세소득(J=H-I)	-
기부금(K)	-
과세표준(L=J-K)	-
산출세액(일반적으로 25%)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환급세액)	-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다. 최저한세

법인 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지방세

상기 외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등 부가세(Surtax)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조세혜택

조세혜택은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비과세로 구분된다. 세액공제는 세법 규정에 따라 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방법이다. 세액 감면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총이익이나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일정 비율로 과세하지 않는 방법이며, 비과세는 전체 과세표준을 과세하지 않는 방법이다.

미얀마는 법인에 대해 주로 세액감면의 조세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특별법은 「미얀마 투자법」과 「경제특구법」에 따라 운영되는 소득세 감면이며,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소득세 혜택을 제외한 조세혜택은 '제3편 제1장 외국인 투자정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가.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조세혜택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얻어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표 II-6>과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규정은 법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표 II-6>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조세혜택

구분		내용
내수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지역에 따라 7년, 5년, 3년 소득세 면제 • 미얀마 내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소득을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가속 감가상각 허용 • 미얀마 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시 연구개발비 소득공제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나.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른 조세혜택

경제특구는 지역에 관계없이 개별 투자의 형태에 따라 자유지역(Free Zone), 진흥지역(Promotion Zone), 기타지역(Other Zone)으로 구분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한다.

〈표 II-7〉 미얀마 경제특구의 구분

자유지역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지역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수입, 생산 장비 및 부품 등에 대해 면세 혜택 부여
진흥지역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지역으로 초기 설비투자 관련 혜택 부여
기타지역	경제특구에 속하나 자유지역 및 진흥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며, 개별 심사에 의해 조세 혜택 부여(수출 지향형의 경우 자유지역과 동일한 혜택 부여, 내수 지향형의 경우 진흥지역과 동일한 혜택 부여)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표 II-8〉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른 조세혜택

구분	개발자	자유지역	진흥지역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개시 후 7년간 소득 세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개시 후 7년간 소득 세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개시 후 5년간 소득 세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감면 기간 후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1년 이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한 소득세 50% 면제 • 이월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일반 3년)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7. 신고와 납부

법인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분기별 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여 각 과세연도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 및 납부한다. 사업소득 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양소소득은 거래일 후 3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가. 신고

1) 각 과세연도 소득의 신고

법인의 과세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며, 법인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등 신고서(Patakha(wanga)-1)를 제출하여야 한다.⁴³⁾ 법인은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과

43) 「소득세법」 제17조

세기간 동안 납부한 예납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다. 만약 법인 납세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고의에 의한 무신고로 간주한다.

법인의 소득세 신고 서식은 Patakha(wanga)-1이며, 해당 서식은 과세표준 계산 과정, 산출세액, 세율, 예납세액, 최종 납부할 세액,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세무신고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필요한 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납세자의 기본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Patakha(wanga)-1(b) 서식은 [그림 II-1]과 같다.⁴⁴⁾

[그림 II-1] 법인 소득세 신고서(Patakha(wanga)-1(b))⁴⁵⁾

Associations Income Tax Return Form

2018/2019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Associations Income Tax Return
-----------	---

(for Annual Associations Income Tax Return during from 2019 October 1 to 2019 December 31)

Caution: In Parts A through C, only report amounts allowed in computing taxable income.

Express all money amounts in MMKs.

TAXPAYER DETAILS	<p>A. Type of taxpayer: Tick applicable box ▶</p> <p><input type="checkbox"/> State economic enterprise <input type="checkbox"/> Company</p> <p>B. Residency: Tick applicable box ▶</p> <p><input type="checkbox"/> Myanmar citizen <input type="checkbox"/> Non-resident citizen</p> <p><input type="checkbox"/> Non-resident foreigner <input type="checkbox"/> Resident foreigner</p> <p>C. Name of tax treaty country (if any) ▶ _____</p> <p>D. Check applicable box(es):</p> <p><input type="checkbox"/> Initial return with IRD</p> <p><input type="checkbox"/> Final return with IRD</p> <p><input type="checkbox"/> Amended return for 2018-2019 income year</p> <p><input type="checkbox"/> Change of address</p> <p><input type="checkbox"/> Accounting / inventory valuation method change</p>
---------------------	---

44) 해당 서식은 납세자 신고 방식(SAS)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서식이며, 국세청 승인 방식(OAS)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Patakha(wanga)-1를 제출하여야 한다.

45) 해당 영문 신고서는 미얀마 국세청에서 외국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발췌한 것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현지어로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다른 세목의 경우도 동일).

[그림 II-1]의 계속

Name		TIN	
Postal address (including postal code)			
Physical address			
Contact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Customs IE Code		Industry code	

PART A	(a) Business income from within Myanmar	(b) Business income from a foreign country (does not apply to non-resident foreigners)	(c) Taxable business income
BUSINESS INCOME & EXPENSES (Do not include capital gains, rental income, or other income. If more than one business in either column, enter the totals here and attach a schedule showing the details for each business.)			
Principal business, including product or service			
Name and physical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1. Business income including Specific Goods Tax (excluding commercial tax): (Sales, turnover, investment income, interest income, premiums, etc. – attach schedule)			
2. Expenses (excluding commercial tax):			
a. Cost of sales or operations (attach schedule)			

[그림 II-1]의 계속

b. General & administrative (attach schedule)			
c. Staff/ labour costs			
d. Management fees			
e. Interest expense			
f. Depreciation & amortization (attach schedule)			
g. Foreign taxes			
h. Specific goods tax paid			
i. Other expenses (attach schedule)			
j. Total expenses (line 2a+2b+2c+2d+2e+2f+2g+2h+2i)			
3. Net business income (loss). In columns (a) and (b), enter line 1 minus line 2j. In column (c), add columns (a) and (b) on this line.			

PART B	(a) Rental income from property situated in Myanmar	(b) Rental income from property situated in a foreign country (does not apply to non-resident foreigners)	(c) Taxable property income
RENTAL INCOME & EXPENSES (Do not include capital gains. If more than one property in either column, enter the totals here and attach a schedule showing the details for each property.)			
1a. Type of property (Single family house, apartment house, commercial building, land, etc.)			
1b. Physical address or location of property			
2. Gross rents			
3. Expenses:			
a. Repairs & maintenance			
b. Interest expense			
c. Property insurance			

[그림 II-1]의 계속

d. Utilities (electricity, water, and sewerage)			
e. Waste disposal			
f. Security expenses			
g. Depreciation & amortization (attach schedule)			
h. Other expenses (attach schedule)			
i. Total expenses (line 3a+3b+3c+3d+3e+3f+3g+3h)			
4. Net property income (loss). In columns (a) and (b), enter line 2 minus line 3i. In column (c), add columns (a) and (b) on this line			

PART C	(a)	(b)	(c)
OTHER INCOME & EXPENSES (Do not include capital gains.)	Other income from within Myanmar	Other income from a foreign country (does not apply to non-resident foreigners)	Taxable Other Income
1. Other income (attach schedule)			
2. Expenses (attach schedule)			
3. Net other income (loss). In columns (a) and (b), enter line 1 minus line 2. In column (c), add columns (a) and (b) on this line			

PART D		
COMPUTATION OF TAXABLE INCOME		
1. Net income:		
a. Enter net business income (loss) from Part A, line 3, col. (c)		
b. Enter net rental income (loss) from Part B, line 4, col. (c)		
c. Enter net other income (loss) from Part C, line 3, col. (c)		

[그림 II-1]의 계속

d. Total net income (loss) before carryover losses. Add 1a+1b+1c. If a net loss, enter the amount in brackets “()”. Skip the rest of Part D and enter -0- on part E, line 1.		
2. Carryover losses from previous income years (see instructions):		
a. Enter any unused carryover loss from income year 2018		
b. Enter any unused carryover loss from income year 2017-2018		
c. Enter any unused carryover loss from income year 2016-2017		
d. Total carryover losses. Add 2a+2b+2c		
3. Total taxable income before deduction for donations. Line 1d minus 2d. If a net loss, enter -0-. Skip the rest of Part D and enter -0- on Part E, line 1.		
4. Tax deductible donations you paid, if any* (see instructions)		
5. Total taxable income Line 3 minus line 4. Enter on Part E, line 1.		
PART E		
TAX COMPUTATION		
1. Enter the amount from Part D, line 1d, line 3 or line 5		
2. Tax before payments/exemptions (Primary co-operatives see instructions.)		
3. Payments/exemptions		
a. Total quarterly advance tax payments		
b. Income tax withheld		
c. Income tax paid to Custom Department		
d. Income tax paid to foreign governments under terms of a tax treaty		
e. Amount of tax overpaid last year carried over to this year		
f. Total payments(3a+3b+3c+3d+3e)		
4. Balance due. Line 2 minus line 3f. If zero or less, enter -0-.		
5. Amount overpaid. Subtract line 1 from line 6. If zero or less, enter -0-. If you want this amount <i>REFUNDED</i> under TAL section 43 to you, tick this box <input type="checkbox"/> If you do not tick the box, the amount overpaid will be applied to the next tax period.		

[그림 II-1]의 계속

PART F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Year ended 30 September 2018		Year ended 30 September 2019	
	(a)	(b)	(c)	(d)
ASSETS				
Non-current assets				
1. Land				
2a.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2b. Less: Accumulated depreciation	()		()	
3. Biological assets				
4a. Intangible assets				
4b. Less: Accumulated amortisation	()		()	
5.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6. Long-term loans				
7. Deferred tax assets				
8. Non-current finance lease receivables				
9. Other non-current assets				
10. Total non-current assets (1+2a+2b+3+4a+4b+5+6+7+8+9)				
Current assets				
11. Inventories				
12. Trade and other receivables				
13. Current finance lease receivables				
14. Costs and estimated earnings in excess of contract billings				
15. Current tax assets				

[그림 II-1]의 계속

16. Cash and equivalents				
17. Assets held for sale				
18. Other current assets				
19. Total current assets (11+12+13+14+15+16 +17+18)				
20. TOTAL ASSETS (10+19)				

PART F (continu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Year ended 30 September 2018		Year ended 30 September 2019	
	(a)	(b)	(c)	(d)
EQUITY AND LIABILITIES				
Equity				
21. Issued capital				
22. Reserves				
23. Retained earnings (accumulated loss)				
24. Equity related to assets held for sale				
25. Non-controlling interests				
26. TOTAL EQUITY (21+22+23+24+25)				
Non-current liabilities				
27. Long-term loans				
28. Deferred tax liabilities				
29. Non-current provisions				
30. Non-current deferred revenue				
31. Other non-current liabilities				

[그림 II-1]의 계속

32. Total non-current liabilities (27+28+29+30+31)				
Current liabilities				
33. Trade and other payables				
34. Contract billings in excess of costs and estimated earnings				
35. Short-term loans				
36. Current tax liabilities				
37. Current provisions				
38. Current deferred revenue				
39. Liabilities related to assets held for sale				
40. Other current liabilities				
41. Total current liabilities (33+34+35+36+37+38+39+40)				
42. TOTAL LIABILITIES (32+41)				
43. TOTAL EQUITY & LIABILITIES (26+42) (20=43)				

[그림 II-1]의 계속

PART G RECONCILIATION OF BOOK INCOME (LOSS) TO TAXABLE INCOME	Year ended 30 September 2019	
1. Total income (loss) per books		
2. Income tax per books		
3. Income subject to tax not recorded on books (attach schedule)		
4. Expenses recorded on books not deducted on this return:		
a. Contributions more than 25% income limit		
b. Book depreciation more than tax		
c. Inappropriate expenditures(such as bribes, fines, and penalties)		
d. Expenses not in proportion to the size or volume of the business		
e. Capital losses		
f. Other expenses not allowed for tax(attach schedule)		
g. Total expenses(4a+4b+4c+4d+4e+4f)		
5. Total (1+2+3+4g)		
6. Income recorded on books exempt from tax(attach schedule)		
7. Capital gains		
8. Deductions on this return not charged against book income:		
a. Tax depreciation in excess of book		
b. Special deductions from Part D, line 4		
c. Other deductions not claimed on books(attach schedule)		
d. Total deductions(8a+8b+8c)		
9. Total(6+7+8d)		
10. Taxable income(5-9). (Part D, line 7)		

주: 해당 영문 신고서는 미얀마 국세청에서 외국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발췌한 것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현지어로 작성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다른 세목의 경우도 동일함)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2) 분리과세 대상 양도소득의 신고

분리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법인은 거래 후 3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거래일이란 계약서 서명일 또는 자산이 물리적으로 양도되는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서는 Patakha(wanga)-1(d)로, [그림 II-2]와 같다.⁴⁶⁾

[그림 II-2] 양도소득세 신고서(Patakha(wanga)-1(d))
Transaction Capital Gains Tax Return

2019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Transaction Capital Gains Tax Return
------	--

(for a single capital gains transaction occurring in the 2019 income year – due 30 days from the date of sale)

TRANSACTION DATE	(DD/MM/201X):
TAXPAYER DETAILS	<p>A. Type of taxpayer: Tick applicable box ▶</p> <p><input type="checkbox"/> Individual</p> <p><input type="checkbox"/> Association</p> <p><input type="checkbox"/> Company</p> <p><input type="checkbox"/> Primary cooperative</p> <p><input type="checkbox"/> Non-primary cooperative</p> <p>B. Residency: Tick applicable box ▶</p> <p><input type="checkbox"/> Citizen of Myanmar</p> <p><input type="checkbox"/> Non-resident citizen</p> <p><input type="checkbox"/> Non-resident foreigner</p> <p><input type="checkbox"/> Resident foreigner – if an individual, enter number of days you were a resident during the year ▶ _____</p> <p>C. Name of tax treaty country (if any) ▶ _____</p> <p>D. Tick applicable box(es):</p> <p><input type="checkbox"/> Amended return for 2019 transaction date shown above</p> <p><input type="checkbox"/> Change of address</p> <p><input type="checkbox"/> Company is a participant in the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sector</p>

46)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거래별로 거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정 과세연도에 발생한 복수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Patakha(wanga)-1(c)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II-2]의 계속

Name		TIN	
Full name of spouse (if married)		TIN	
Postal address (including postal code)			
Physical address			
Contact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Customs IE Code		Industry code	

PART A TOTAL CONSIDERATION RECEIVED	
(a) Description of Assets Sold, Exchanged, or Transferred	(b) Consideration received
1a. Shares and securities (enter description)	
b. Land (enter description)	
c.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enter description)	
d. Other assets (enter description)	
2. Total consideration received (Add lines 1a+1b+1c+1d in column (b))	

[그림 II-2]의 계속

PART B TOTAL ADJUSTED COST				
(a) Assets Sold, Exchanged, or Transferred	(b) Original cost (or market value if applicable)	(c) Allowed additions to original cost (or market value if applicable)	(d) Accumulated depreciation for the current and prior years	(e) Totals
1a. Shares and securities from Part A				
b. Land from Part A				
c.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from Part A				
d. Other assets from Part A				
2. Add the amounts in each of columns (b), (c), and (d)				
3. Add columns (b) and (c) on line 2				
4. Enter the amount from line 2, column (d)				
5. Total adjusted cost. Line 3 minus line 4				
PART C NET CAPITAL GAIN & TAX DUE				
1. Total consideration received. Enter the amount from Part A, line 2				
2. Total adjusted cost. Enter the amount from Part B, line 5				
3. Capital gain. Line 1 minus line 2.(If zero or less, enter -0-; do not complete the rest of this form. You do not owe tax on net capital gain).				
4. Net tax due. Multiply line 3 by 10%. Oil and natural gas sector companies, see instructions for the tax rates that apply (attach bank receipt)				
5. Total advance tax payments				
6. Amount of tax overpaid last year carried forward to this year.				
7. Balance due. Line 4 minus the sum of line 5 + line 6. If zero or less, enter -0-.				
8. Amount overpaid. The sum of line 5 + line 6 minus line 4. If zero or less, enter -0-. If you want this amount REFUNDED to you, tick this box <input type="checkbox"/> If you do not tick the box, the amount overpaid will be applied to next year's tax.				

[그림 II-2]의 계속

PART D ADDITIONAL INFORMATION(tick the applicable box for each question)	
1. Was any disposal of an asset between related parties or otherwise not at arm's length? If "Yes," attach a statement with the name, address, and relationship to you of the related party or an explanation of the reason the disposal was not at arm's length.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2. Were any of the original acquisitions of assets between related parties or otherwise not at arm's length? If "Yes," attach a statement with the name, address, and relationship to you of the related party or an explanation giving the reason the acquisitions were not at arm's length.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3. Was the market value substituted for the cost of acquisition of any assets disposed of? If "Yes," attach a statement explaining why market value was substituted (for example, the transfer was a gift or inheritanc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3) 연결 납세

미얀마 「소득세법」상 연결 납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납부

1) 각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분기별 예정납부

당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은 분기별 법인세를 예납하여야 한다.⁴⁷⁾ 납부기한은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이다. 납부한 세액은 연말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2) 각 과세연도 소득의 확정납부

각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서상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이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확정 납부기한은 납세자가 국세청 승인 방식(OAS) 또는 납세자 신고 방식(SAS)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상이하다. 국세청 승인 방식(OAS)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의

47) 「소득세법」 제16조

세액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자 신고 방식(SAS)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 후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⁴⁸⁾

세액은 미얀마 현지 통화(MMK)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⁴⁹⁾ 최종 납부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상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미얀마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안내 통지서를 발급하며 납세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미얀마 국세청은 전자 납부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 세무서(LTO, MTO1, Township tax offices)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 한해 전자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 납세자가 현지 은행에 현지 통화 계좌 보유
- 관할 세무서에 전자 납부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전자 납부 신청 완료 후 해당 신청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
- 기 제출한 신청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 즉시 변동사항을 통보하고 은행에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

8. 원천징수 의무

원천징수는 거주자가 특정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 일반 원천세

특정 대가란 기획재정부(MOPFI) 고시⁵⁰⁾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의미하며, 내국법인 간의 국내 거래 시에도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얀마 내 사업소득 등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지점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예납적 원천징수), 세무상 비거주자에게 특정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완납적

48) 국세청 승인 방식(OAS)과 납세자 신고 방식(SAS)과 관련된 국세청의 안내 자료에는 신고 후 21일 이내라고 되어 있으나, FY 2018~19 신고서 작성 안내에는 14일로 되어 있다.

49) 양도대가가 외화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외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50) Notification No. 47/2018; 기획재정부(MOPFI)

원천징수).

미얀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소득·거주자별 원천징수 세율을 요약하면 <표 II-9>와 같다.

<표 II-9> 원천징수세율

(단위: %)

구분	수취인	
	세무상 거주자	세무상 비거주자 ¹⁾
배당	0	0
이자	0	15
사용료	10	15
미얀마 내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 미얀마 정부기관이 지급하는 금액 (공급자당 연간 금액이 MMK 1,000,000(약 89만원 상당) 이상일 경우에만 징수함 ²⁾)	2	2.5
상기 외 미얀마 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	0 ³⁾	2.5

주: 1) 미얀마와 소득 수취인의 거주지국간 조세조약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

2) Notification No. 47/2018, 기획재정부(MOPFI)

3)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2%의 원천세율이 적용되었으나 폐지되었다.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세무상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미얀마 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
니나 이러한 비과세는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미얀마 국세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출입 원천세

추가로 2013년 6월 이후 수입 또는 수출되는 재화의 경우 수출입 시 수출입가액의 2%를
소득세로 예납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3월 17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수출입되는 재화의
경우 '코로나 19 경제 완화 정책(COVID-19 Economic Relief Plan)'의 일환으로 소득세 예
납이 면제된다.

다. 지점세

미얀마는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지점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II 개인소득세

1. 서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얀마 세법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법인과 개인의 과세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행정법」 및 매년 개정되는 「통합조세법」에서 개인의 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미얀마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비거주자는 미얀마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양도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되며, 이외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0~25%의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제II장에서는 미얀마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소득, 세율, 개인소득세 계산 방식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개괄하였다.

2. 납세의무자

가. 거주자 판정

미얀마 세법상 개인의 거주자 판정 시 ① 항구적으로 거주하는(Domiciled) 장소 또는 ② 주된 거소(Principal Place of Abode)가 미얀마 내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⁵¹⁾

미얀마 시민(Myanmar Citizen)⁵²⁾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나, 특정 과세연도(10월 1일~9월 30일) 중 미얀마 원천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비거주자로 구분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특정 과세연도(10월 1일~9월 30일)에 183일 이상 미얀마에 체류할 경우 미얀마 거주자에 해당하며, 183일 미만 체류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미얀마 투자법」을 적용받는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거

51) 「소득세법」 제3조(k), (i)

52) 미얀마 2008년 「신헌법」 제345조 및 1947년 「구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미얀마 시민 판정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근원으로 삼고 있으며, 외국인인 1982년 「시민권법(Citizenship Law)」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미얀마 시민이 될 수 있다.

주자와 동일한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⁵³⁾

미얀마 시민과 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얀마 내 과세된다. 비거주자 시민의 경우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나, 다른 소득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얀마 내에서 과세된다. 반면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엔 미얀마 원천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그림 II-3] 개인의 세무상 구분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구분	미얀마 시민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대상 소득	전세계 소득	전세계 소득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	전세계 소득	미얀마 원천소득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나. 납세자 단위

미얀마 세법상 개인은 단일의 납세 주체로, 배우자의 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는다.

3. 과세소득

가. 개요

미얀마 「소득세법」상 개인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⁵⁴⁾

-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 전문용역소득(Professional Income)
- 사업소득(Business Income)
- 임대소득(Rental Income)
- 양도소득(Income from Capital Gains)
- 미과세소득(Escaped Income from Assessment)
- 기타소득(Income from Other Sources)

53) 미얀마 거주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54) 「소득세법」 제8조

이 중 부동산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은 각각 10%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사업소득 및 전문용역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은 0~25%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고용주의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되며 근로자의 별도 개인소득세 신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나. 근로소득

미얀마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급여(Salary)’에는 임금(Wages), 사례금(Gratuity), 연금(Annuity, Pension) 및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수취하는 금전 등이 포함한다.⁵⁵⁾

복리후생 성격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상 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택 제공 이익 등이 포함되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고용주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 역시 포함된다.

연간 총급여액이 MMK 4.8million(약 42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비과세 된다.

다. 사업소득 및 전문용역소득⁵⁶⁾

개인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소득과 전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의 과세소득 산정 방식 등은 법인의 사업소득과 동일하다. 이 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예시하면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예시

해당 소득	소득 구분
• 이자 소득	이자소득은 사업과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해당함
• 동산의 임대소득 (기타 임대소득)	동산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임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됨)
• 기타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	기타 투자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단, 배당소득은 비과세)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55) 「소득세법」 제9조

56) 「소득세법」 제10조; 제11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전문적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여기서 전문적 용역이란 본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창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영화배우, 예술가, 작가, 화가, 조각가, 회계사, 점성가 및 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라. 부동산 임대소득⁵⁷⁾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임대를 통해 창출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반면, 동산의 임대로 창출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마. 양도소득

미얀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 및 매각 등을 통해 발생한 양도대가를 의미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채권 및 기타 금융자산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⁵⁸⁾

양도소득은 양도대가에서 취득원가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양도대가가 MMK 1천만(약 890만원 상당)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의 양도소득의 계산방식은 기본적으로 법인 납세자와 동일하다.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 및 매각을 통해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의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세무상 장부가액
- 양도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
- 양도자산 관련 취득 부대비용

바. 비과세소득

미얀마 「소득세법」상 개인 소득 중 비과세 되는 소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⁵⁹⁾

- 비거주자 미얀마 시민이 국외에서 고용 관계로 인해 외국통화로 받은 급여
- 연 총급여액 MMK 4.8million(약 42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 연간 판매, 교환, 또는 양도된 자산의 가치의 합계가 MMK 10million(약 890만원) 이하

57) 「소득세법」 제12조

58) 「소득세법」 제12조; 제13조

59) 「소득세법」 제5조

- 인 경우의 부동산 양도소득
- 미얀마 정부에서 발행하는 복권(Aung-bar-lay) 당첨금
- 배당소득
- 연금소득 등

4.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가. 개요

미얀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식 및 소득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요약하면 <표 II-11>과 같다.⁶⁰⁾

<표 II-11> 과세방식 및 소득 구분에 따른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과세 방식	소득 구분	필요경비	소득공제
분리과세	양도소득	○	×
	부동산 임대소득	×	○
종합과세	근로소득	×	○
	전문용역소득	○	○
	사업소득	○	○
	기타소득	○	○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사업소득 및 기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 창출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양도소득의 경우 누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세무상 잔존가액과 함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자산 개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60) 비거주자 외국인의 미얀마 원천소득은 기본적으로 거주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과세되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필요경비

법인 납세자와 동일하게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자본적 지출과 사적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소득 구분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비용을 예시하면 <표 II-12>와 같다.⁶¹⁾

양도소득의 경우, 전술한 'Ⅲ. 과세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을 약술하였다.

<표 II-12> 소득 항목별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

연번	구분	공제 가능 필요경비	불공제 경비
1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및 관리비 • 이자비용 • 감가상각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규모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지출
2	전문용역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제공범위와 무관한 지출
3	기타임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임대료)를 창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한 비용 (Inappropriate Expenditure)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다. 소득공제

미얀마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은 다음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⁶²⁾

<표 II-13> 소득공제 구분

연번	구분	소득공제 적용 내역	
1	기본공제	Min (A, B)	A. 소득의 20%(개별 소득 구분별 적용) B. MMK 1천만(약 890만원)
2	부양가족공제	동거직계존속	1명에 한하여 MMK 100만(약 89만원)
		배우자	1명에 한하여 MMK 100만(약 89만원) *배우자가 무직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	각 1명당 MMK 50만(약 45만원) *자녀가 미혼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18세 미만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규 교육을 이수 중일 경우에 한함

61) 「소득세법」 제11조

62) 「소득세법」 제6조

〈표 II-13〉의 계속

연번	구분	소득공제 적용 내역
3	보험료 공제	과세연도 내에 지출한 본인 및 배우자의 생명보험료
4	(근로자) 사회보장기금 공제	과세연도 내에 사회보장기구(Social Security Board, SSB)에 납부한 사회보장기금 ¹⁾ 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함
5	기부금 공제	총소득금액의 25%를 한도로 종교 또는 미얀마 법에 따라 설립된 자선 단체 ²⁾ 등에 대한 기부금을 공제 가능함

주: 1)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법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의 2%와 MMK 6,000(약 5천원) 중 적은 금액을 부담하며,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 만큼 근로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2)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자선단체(Charitable Institutions)에는 「소득세법」 제6조(d)의 정의에 따라 빈곤층에 대한 교육, 건강, 복지 관련 단체를 포함한다.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5. 세율 및 세액의 계산

가. 세율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표 II-14〉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단위: MMK, %) 세율
	200만(약 180만원) 이하	0
200만 초과	500만(약 450만원) 이하	5
500만 초과	1,000만(약 890만원) 이하	10
1,000만 초과	2,000만(약 1,780만원) 이하	15
2,000만 초과	3,000만(약 2,670만원) 이하	20
3,000만 초과		25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한편 분리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의 경우 각각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나. 세액의 계산

미얀마 「소득세법」상 개인의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구조는 법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과세표준 산출 시 추가로 공제 가능하다.

현행 미얀마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별도의 조항은 없다.

다. 최저한세

개인 소득세에 대한 최저한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신고와 납부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양도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이 외의 개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며,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인 납세자와 동일하다.

가. 신고·납부

1) 종합과세 대상소득의 신고·납부⁶³⁾

개인 납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며, 법인과 마찬가지로 당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분기별로 소득세를 예납하여야 한다.⁶⁴⁾ 납부기한은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이고, 납부한 세액은 연말 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하다.

개인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서(Patakha(wanga)-1(b))를 제출하여야 한다.⁶⁵⁾ 개인은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예납세액 등을 차감하여

63)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10%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나, 양도소득과 같은 별도의 신고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한다.

64) 「소득세법」 제16조

65) 「소득세법」 제17조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다.

개인의 소득세 신고 서식은 Patakha(wanga)-1(b))이며, 해당 서식은 과세표준 계산 과정, 산출세액, 세율, 예납세액, 최종 납부할 세액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세무신고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필요한 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납세자의 기본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각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서상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이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확정 납부기한은 납세자가 국세청 승인 방식(OAS) 또는 납세자 신고 방식(SAS)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상이하다. 국세청 승인 방식(OAS)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의 세액 통지서(Notice of Assessment)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자 신고 방식(SAS)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 후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신고서 예시

[그림 II-4] 개인 소득세 신고서(Patakha(wanga)-1(b))

Individuals Income Tax Return Form

2018/2019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Individuals Income Tax Return
-----------	--

(for Annual Individuals Income Tax Return during from 2019 October 1 to 2019 December 31)
 Caution: In Parts A through D, only report amounts allowed in computing taxable income.
 Express all money amounts in MMKs.

TAXPAYER DETAILS	A. Type of taxpayer: This form is for individuals only. All others use the Associations Income Tax Return.		
	B. Residency: Tick applicable box ▶ <input type="checkbox"/> Myanmar citizen <input type="checkbox"/> Non-resident citizen <input type="checkbox"/> Non-resident foreigner <input type="checkbox"/> Resident foreigner		
	C. Name of tax treaty country (if any) ▶ _____		
	D. Check applicable box(es): <input type="checkbox"/> Initial return with IRD <input type="checkbox"/> Final return with IRD <input type="checkbox"/> Amended return for 2018-2019 income year <input type="checkbox"/> MIC/SEZ exemption <input type="checkbox"/> Change of address <input type="checkbox"/> Accounting / inventory valuation method change		
Name		TIN	
Postal address (including postal code)			
Physical address			
Contact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Customs IE Code		Industry code	
Full name of spouse (if married)		TIN	

[그림 II-4]의 계속

PART A EMPLOYMENT INCOME (See instructions)	(a) Employment income from within Myanmar	(b) Employment income from a foreign country (does not apply to non-resident foreigners)	© Gross employment income
1. Employment information (if more than three employers, attach a list with the additional information)			
a. Name and address of present (or main) employer:			
b. Name and address of additional or previous employer:			
c. Name and address of additional or previous employer:			
1d. Gross employment income In columns (a) and (b), add the amounts on 1a+1b+1c. In column (c), add columns (a) and (b) on this line			

PART B BUSINESS INCOME & EXPENSES (Do not include capital gains, rental income, or other income. If more than one business in either column, enter the totals here and attach a schedule showing the details for each business.)	(a) Business income from within Myanmar	(b) Business income from a foreign country (does not apply to non-resident foreigners)	(c) Taxable business income
Principal business or profession, including product or service			
Name and physical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그림 II-4]의 계속

1. Business income including Specific Goods Tax (excluding commercial tax): (Sales, turnover, investment income, interest income, premiums, etc. -attach schedule)			
2. Expenses (excluding commercial tax):			
a. Cost of sales or operations (attach schedule & complete Schedule S)			
b. General & administrative (attach schedule)			
c. Staff/labour costs (complete Schedule S)			
d. Management fees			
e. Interest expense			
f. Depreciation & amortization (attach schedule)			
g. Foreign taxes			
h. Specific goods tax paid			
i. Other expenses (attach schedule)			
j. Total expenses (line 2a+2b+2c+2d+2e+2f+2g+2h+2i)			
3. Net business income (loss). In columns (a) and (b), enter line 1 minus line 2j. In column (c), add columns (a) and (b) on this line.			
PART C			
OTHER INCOME & EXPENSES (Do not include capital gains.)	(a) Other income from within Myanmar	(b) Other income from a foreign country (does not apply to non-resident foreigners)	
1. Other income (attach schedule)			
2. Expenses (attach schedule)			
3. Net other income (loss). In columns (a) and (b), enter line 1 minus line 2. In column (c), add columns (a) and (b) on this line			

[그림 II-4]의 계속

PART D

QUALIFYING DEPENDENTS MAINTAINED BY THE TAXPAYER (Myanmar citizens and resident foreigners ONLY)

Only list children that meet the requirements noted below. Include step children and legally adopted children you maintained. Include your spouse if your spouse did not have any taxable income during the year.

For parents to qualify for the allowance, parents must be living in the same premises/household as the taxpayer. All dependents shown must appear on the Department of Population Household List.

Attach a schedule if there are more than five (5) qualifying dependents. The children must:

- Not be married,
- Not have earned any taxable income during the year, and
- Either be:
 - Under the age of 18 at the end of the year, or
 - Receiving full-time instruction during the year at a school, university, college, or other educational establishment, or serving as an apprentice to qualify in a profession.

Name of dependent	Relationship	Date of birth (DD/MM/YYYY)	Name of school (for children only)

PART E

COMPUTATION OF TAXABLE INCOME

1. Net income excluding rental income:

a. Enter gross employment income from Part A, line 1d, col. (c)		
b. Enter net business income (loss) from Part B, line 3, col. (c)		
c. Enter net other income (loss) from Part C, line 3, col. (c)		
d. Total net income (loss) before carryover losses. Add 1a+1b+1c. If a net loss, enter the amount in brackets "()". Skip the rest of Part E and enter -0- on part F, line 1.		

2. Carryover losses from previous income years (see instructions):

a. Enter any unused carryover loss from income year 2018/2019		
---	--	--

[그림 II-4]의 계속

b. Enter any unused carryover loss from income year 2017/2018		
c. Enter any unused carryover loss from income year 2016/2017		
d. Enter any unused carryover loss from income years before 2015/2016 allowed per MIC permit or other documents (attach documents, see instructions)		
e. Total carryover losses 2a+2b+2c+2d		
3. Total taxable income (loss) before special deductions. Subtract line 2e from line 1d. If a net loss, enter -0-. Skip the rest of Part E and enter -0- on part F, line 1. (If you are a non-resident foreigner, enter the amount from line 3 on line 7. You are not entitled to a deduction for special deductions and donations.)		
4. Special deductions:		
a. Basic allowance: Multiply line 3 by 20%*. If the result is smaller than MMK 10,000,000, enter it here. Otherwise, enter MMK 10,000,000.		
b. Allowance for your spouse, children and parents. Multiply MMK 500,000 by the number of children listed in Part D. Multiply MMK 1,000,000 by the number of parents listed in Part D. If you have a spouse earning NO taxable income during the year, add MMK 1,000,000 to the result. Enter the total here.		
c. Amount of life insurance premiums paid during the year		
d. Amounts paid into Government recognized savings funds		
e. Total special deductions. Add lines 4a+4b+4c+4d		
5. Taxable income before donations Line 3 less line 4e. If zero or less, enter -0-, skip line 6, and enter -0- on line 7. If less than zero, enter the difference between line 4e and line 3 on line 9 as a positive number - no brackets. (This is the amount of unused special deductions/donations or the amount by which line 4e exceeds line 3.)		
6. Tax deductible donations you paid, if any* (See instructions.)		
7. Total taxable income excluding rental income Subtract line 6 from line 5. Enter on Part F, line 1.		
8. Gross rental income (Do not include capital gains. Include total rental income from properties in Myanmar and properties situated in a foreign country. If more than one property in Myanmar or outside Myanmar, enter the totals here and attach a schedule showing the details for each property.)		

[그림 II-4]의 계속

9. Unused special deductions.		
10. Total taxable rental income. Line 8 minus line 9. If zero or less, enter -0-.		
* Non-resident citizens must reduce the amount on line 3 by the amount of foreign income included on that line before multiplying it by 20% and before computing the donations deduction, if any.		
PART F		
TAX COMPUTATION		
1. Enter the amount from Part E, line 1d or line 3 or line 7		
2. Tax on line 1 See the instructions on page 13		
3. Tax on rental income. 10% of Part E, line 10		
4. Total tax before payments/exemptions		
5a. Total quarterly advance tax payments		
b. Income tax withheld from employment income		
c. Income tax withheld on other income		
d. Income tax paid to foreign governments under terms of a tax treaty		
e. Amount of tax overpaid last year carried over to this year		
f. Amount of tax exempted based on MIC permit (attach schedule of computation and copy of MIC permit)		
5g. Total payments (5a+5b+5c+5d+5e+5f)		
6. Balance due. Line 4 minus line 5g. If zero or less, enter -0-.		
7. Tax overpaid. Line 5g minus line 4. If zero or less, enter -0-. If you want this amount REFUNDED to you, tick this box <input type="checkbox"/> If you do not tick the box, the amount overpaid will be applied to next year's tax.		

[그림 II-4]의 계속

PART G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LTO and MTO taxpayers only. See instructions.)	Year ended 31 March 2019		Year ended 31 March 2019	
	(a)	(b)	(c)	(d)
ASSETS				
Non-current assets				
1. Land				
2a.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2b. Less: Accumulated depreciation	()		()	
3. Biological assets				
4a. Intangible assets				
4b. Less: Accumulated amortisation	()		()	
5.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6. Long-term loans				
7. Deferred tax assets				
8. Non-current finance lease receivables				
9. Other non-current assets				
10. Total non-current assets (1+2a+2b+3+4a +4b+5+6+7+8+9)				
Current assets				
11. Inventories				
12. Trade and other receivables				
13. Current finance lease receivables				
14. Costs and estimated earnings in excess of contract billings				

[그림 II-4]의 계속

15. Current tax assets				
16. Cash and equivalents				
17. Assets held for sale				
18. Other current assets				
19. Total current assets (11+12+13+14+15+16 +17+18)				
20. TOTAL ASSETS (10+19)				

PART G (continu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Year ended 31 March 2018		Year ended 31 March 2019	
	(a)	(b)	(c)	(d)
EQUITY AND LIABILITIES				
Equity				
21. Issued capital				
22. Reserves				
23. Retained earnings (accumulated loss)				
24. Equity related to assets held for sale				
25. Non-controlling interests				
26. TOTAL EQUITY (21+22+23+24+25)				
Non-current liabilities				
27. Long-term loans				
28. Deferred tax liabilities				
29. Non-current provisions				
30. Non-current deferred revenue				

[그림 II-4]의 계속

31. Other non-current liabilities				
32. Total non-current liabilities (27+28+29+30+31)				
Current liabilities				
33. Trade and other payables				
34. Contract billings in excess of costs and estimated earnings				
35. Short-term loans				
36. Current tax liabilities				
37. Current provisions				
38. Current deferred revenue				
39. Liabilities related to assets held for sale				
40. Other current liabilities				
41. Total current liabilities (33+34+35+36+37+38+39+40)				
42. TOTAL LIABILITIES (32+41)				
43. TOTAL EQUITY & LIABILITIES (26+42) (20=43)				

[그림 II-4]의 계속

PART H – LTO and MTO Taxpayers Only		
RECONCILIATION OF BOOK INCOME (LOSS) TO TAXABLE INCOME	Year ended 31 March 2019	
1. Total income (loss) per books		
2. Income tax per books		
3. Income subject to tax not recorded on books (attach schedule)		
4. Expenses recorded on books not deducted on this return:		
a. Contributions more than 25% income limit		
b. Book depreciation more than tax		
c. Inappropriate expenditures (such as bribes, fines, and penalties)		
d. Expenses not in proportion to the size or volume of the business		
e. Capital losses		
f. Other expenses not allowed for tax (attach schedule)		
g. Total expenses (4a+4b+4c+4d+4e+4f)		
5. Total (1+2+3+4g)		
6. Income recorded on books exempt from tax (attach schedule)		
7. Capital gains		
8. Deductions on this return not charged against book income:		
a. Tax depreciation in excess of book		
b. Special deductions from Part E, line 4e		
c. Other deductions not claimed on books (attach schedule)		
d. Total deductions (8a+8b+8c)		
9. Total (6+7+8d)		
10. Taxable income (5-9). (Part E , line 7 + line 10)		

[그림 II-4]의 계속

Schedule S STRATIFICATION OF ANNUAL SALARY/LABOUR EXPENSES (Salary ranges are per annum. Include all salaries. Schedule S will include amounts from Cost of Sales or Operations, Part B, line 2a, and Salary/Labour costs, Part B, line 2c)	Myanmar citizen employees		Expatriate employees	
	(a) Amount of salaries paid	(b) Number of employ ees	(c) Amount of salaries paid	(d) Number of employe es
1. Minimum wage or less (MMK 1,296,000 or less)				
2. Greater than MMK 1,296,000 up to MMK 3,000,000				
3. Greater than MMK 3,000,000 up to MMK 5,000,000				
4. Greater than MMK 5,000,000 up to MMK 10,000,000				
5. Greater than MMK 10,000,000 up to MMK 100,000,000				
6. Greater than MMK 100,000,000				
7. Total. Add lines 1 to 6				
8. Total amount of salaries paid. Add line 7(a) + line 7(c)				
9. Total number of employees. Add line 7(b) + line 7(d)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고용주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⁶⁶⁾

근로소득 납세의무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월별 원

66) 「소득세법」 제18조

천징수세액 신고서를 원천징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간 급여지급 대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

분리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거래 후 3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거래일이란 계약서 서명일 또는 자산이 물리적으로 양도되는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서 양식은 법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는 거주자가 특정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에 일정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정 대가란 기획재정부(MOPFI) 집행기준⁶⁷⁾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의미하며, 개인 간의 국내 거래 시에도 원천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얀마 내 사업소득 등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예납적 원천징수), 세무상 비거주자에게 특정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완납적 원천징수).

미얀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소득·거주자별 원천징수세율을 요약하면 <표 II-15>와 같다.

세무상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미얀마 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이러한 비과세는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미얀마 국세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7) Notification No. 47/2018; 기획재정부(MOPFI)

〈표 II-15〉 수취인에 따른 대가의 형태별 원천징수세율

(단위: %)

구분	수취인	
	거주자	비거주자
배당	0	0
이자	0	15
사용료	10	15
근로소득	0~25 초과 누진세율	0~25 초과 누진세율 ¹⁾
사업소득 및 전문용역소득	원천징수 없음	25
양도소득	원천징수 없음	10
미얀마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미얀마 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며 이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공급자당 연간 금액이 MMK 1,000,000 (약 89만원 상당) 이상일 경우에만 징수함 ²⁾)	2	2.5
상기 외 미얀마 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	0 ³⁾	2.5

주: 1) 비거주자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0~25%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 미얀마 시민의 경우 국외수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며, 비과세되지 않을 경우에는 10%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 Notification No. 47/2018, 기획재정부(MOPFI)

3)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2%의 원천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폐지되었다.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Ⅲ 국제조세

1. 국제조세의 체계

국제조세는 별도의 법률체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또는 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과 관련된 국제 거래에 있어 국가 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된 각종 개념 및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립된 국제기구나 국제규범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국내세법과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규율된다. 국제조세는 주로 소득세 과세와 관련되며, 크게 <표 II-16>과 같이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표 II-16> 국제조세 일반론

구분	주요 내용
원천징수	국내원천소득의 과세, 이중과세·이중비과세의 방지
국내사업장 과세	국내사업장의 판정 및 과세
특수관계거래의 조정	이전가격 과세, 조세피난처 과세, 과소자본세제

자료: 김준석·한인철·김보식, 『국제조세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pp. 31~32.

미얀마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거주지국(국적지국) 과세제도(Worldwide Tax System)를 채택하여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을 과세하며, 비거주자(외국인,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미얀마 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미얀마 조세체계상 별도의 국제조세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과소자본세제·이전가격세제 등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조세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내국세법상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기 위해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19년 10월 발표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용 및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미얀마 「소득세법」상 외국법인과 외국인에 대한 취급방식을 개괄하고, 한국을 비롯하여 미얀마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2.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미얀마 「소득세법」상 외국법인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며, 미얀마 원천소득에 한하여 미얀마 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미얀마 「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⁶⁸⁾ 외국법인이 미얀마 내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은 세법상 외국법인으로 취급한다. 참고로 미얀마 「소득세법」에서는 미얀마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인 주주가 있는 경우 거주자 내국법인(Resident Foreigner)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구분은 세무 목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가. 외국법인의 미얀마 지점 등

외국법인의 미얀마 지점 또는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미얀마 내 등록이 요구되는 외국법인 등의 미얀마 원천소득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하여 25%의 세율로 과세된다. 한편 외국법인의 미얀마 지점 등의 미얀마 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미얀마 과세당국은 해당 지점 등의 소득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미얀마 지점 등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얀마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가격 관련 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등에 대한 규정 역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얀마 지점 등에 대한 본점 경비의 배부 및 경영관리비의 손금산입 등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나. 기타 외국법인

미얀마 내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고 미얀마로부터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를 수취하거나 미얀마 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미얀마 원천소득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미얀마 내국세법상 미얀마 원천 이자, 배당, 사용료 및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요약하면 <표 II-17>과 같다.

68) 미얀마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가 발견되거나 조세조약은 국가 간 과세권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 과세권을 창설할 수는 없으나, 미얀마 세법상 고정사업장이 명확하게 정의되기 전까지는 고정사업장 판단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표 II-17〉 수취인에 따른 대가의 형태별 원천징수세율

(단위: %)

구분	원천징수세율
배당 ¹⁾	0
이자	15
사용료	15
미얀마 정부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미얀마 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며 이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공급자당 연간 금액이 MMK 1,000,000(약 89만원 상당) 이상일 경우에만 징수함 ²⁾)	2.5
상기 외 미얀마 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	2.5

주: 1) 미얀마는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2) Notification No. 47/2018; 기획재정부(MOPFI)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3.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미얀마 「소득세법」상 개인의 항구적 거소 또는 중요한 거소가 미얀마 내에 소재할 경우 거주자로 판정한다. 외국인의 경우, 특정 과세연도(10월 1일~9월 30일) 동안 최소 183일 이상 미얀마 내에 거주할 경우, 세무상 미얀마 거주자로 간주한다. 한편 특정 과세연도 중 미얀마 내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로서 「미얀마 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미얀마 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미얀마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미얀마 거주자인 외국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얀마 내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미얀마 원천소득에 대해 미얀마 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가. 거주자 외국인

미얀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미얀마 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미얀마 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국외 원천소득은 미얀마 원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된다.

미얀마 「소득세법」상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없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2019년 10월 발표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외국 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규정을 포

함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미비한 상황으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며 그 시행일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나. 비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거주자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0~25%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25%, 양도소득의 경우 10%의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기타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앞서 'II.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서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4. 조세조약

조세조약이란 소득, 자본, 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협약, 협정, 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OECD 또는 UN 모델조세조약의 체계를 따른다. 조세조약의 주된 목적은 ①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 ②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③ 조세회피의 방지에 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인 국제법 이론에 따라 국내 세법과의 관계가 설정된다.⁶⁹⁾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얀마를 포함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이 동위에 있거나 국내 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가. 미얀마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20년 현재 기준 미얀마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해당 조약이 발효 중인 국가는 영국 등 8개국이다.

69) 학설상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도의 법체계라는 이원론(영미법계)과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선다는 국제법상위설(대륙법계)이 있다. 영미법계의 경우 이원론에 입각하여 조약과 법률을 동위로 보거나(미국) 법률-조약 순으로 보며(영국), 대륙법계의 경우 국제법 상위설에 입각하여 조약-법률 순으로 효력을 인정한다(한국).

〈표 II-18〉 조세조약 체결 현황

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영국	1950. 3. 13.	1952. 3. 26.
말레이시아	1998. 3. 9.	2008. 7. 21.
싱가포르	1999. 2. 23.	2009. 6. 26.
베트남	2000. 5. 12.	2003. 8. 12.
태국	2002. 2. 7.	2011. 8. 15.
한국	2002. 2. 22.	2003. 8. 4.
인도	2008. 4. 2.	2009. 1. 30.
라오스	2009. 11. 20.	2010. 9. 1.
인도네시아	(협상 중)	
방글라데시	(협상 중)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나. 미얀마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미얀마 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세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이 미얀마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개별 조세조약에서는 제한세율을 〈표 II-19〉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 II-19〉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단위: %)

대가 수령인	원천세율		
	배당	이자	사용료
거주자	-	-	10
비거주자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15	15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영국	-	15 ¹⁾	-
말레이시아	-	10	10
싱가포르	-	8/10	10/15
베트남	-	10	10
태국	-	10	5/10/15
한국	-	10	10/15
인도	-	10	10
라오스	-	10	10

주: 1) 미얀마-영국 조세조약상 이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얀마 국내 원천세율이 적용됨.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IV 소비세

1. 상업세 개관

미얀마 세법상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존재하지 않으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등에 과세되는 거래세(Turnover Tax) 성격의 상업세가 존재한다. 상업세는 1990년 「상업세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어 FY 1990~1991부터 발효되었으며, 「상업세 시행규칙」을 통해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얀마의 상업세는 열거한 거래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간접세 성격이다.

상업세는 미얀마 국내 재화의 생산 및 판매, 미얀마 내로의 재화의 수입과 미얀마 내 용역의 공급을 그 과세 대상 거래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거래 가격의 5%가 상업세로 과세된다.

제IV장에서는 미얀마 상업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거래, 세율, 산출세액 계산 방법, 사업자등록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개괄하였다.

2. 납세의무자

미얀마 「상업세법」상 상업세의 과세 대상 거래는 미얀마 내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재화의 수입 및 용역의 공급이며, 재화를 생산, 판매, 수입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상업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업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⁷⁰⁾

- 미얀마 내에서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
- 미얀마로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미얀마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자
- 미얀마 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한편 재화의 생산, 판매 및 수입과 용역의 공급이 종교 또는 자선 목적만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상업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70) 「상업세법」 제4조; 제5조

3. 과세대상 거래

가. 과세대상 공급

미얀마 상업세는 미얀마 내 재화의 생산, 미얀마 내 용역의 공급 및 미얀마로의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 대상 공급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미얀마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
- 재화의 수입
- 수입된 재화의 판매
- 용역의 공급
- 건물의 건축 및 판매
- 귀금속의 판매
- 전기 및 원유의 수출

나. 공급시기

납세의무자는 상업세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시기를 확정하여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상업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업세 공급시기는 송장상의 날짜와 공급받는 자로부터의 대금 수령일 중 빠른 날이다. 한편 재화의 수입의 경우 공급시기는 통관일이며, 매입 상업세의 경우 공급하는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상업세 송장(Patakha (kathakha)-12))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4. 과세표준 및 세율

가. 과세표준⁷¹⁾

미얀마 「상업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며, 재화의 수입의 경우 통관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71) 「상업세법」 제3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 대가(재화의 경우, 포장재의 가치를 포함)로 수취하는 현금 기타 결제수단에 따른 가액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의 경우 특별소비세액을 포함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인 통관가격은 관세 과세가격, 관세, 보험료, 운송료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의 경우 특별소비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나. 세율

미얀마 「상업세법」상 일반세율은 5%이나,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통합조세법」에서 별도의 세율을 정한다. 상업세가 면세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율은 <표 II-20>과 같다.⁷²⁾

〈표 II-20〉 상업세 적용 세율

(단위: %)

구분		적용세율
재화의 수입		5
재화의 생산		
재화의 판매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출	원유	5
	전기	8
	그 외 수출	영세율
부동산	임대	5
	양도	3
귀금속의 공급(수입 포함)		1 ¹⁾

주: 1) 다만 「통합조세법」 제14조(g)에 따르면, 귀금속 매입 및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한 상업세의 귀금속 판매 및 수출에 대한 상업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함.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72) 「상업세법」 제6조 및 「통합조세법」 제14조

5. 영세율 및 면세

가. 영세율

미얀마 「상업세법」 및 「통합조세법」상 원유의 수출(5% 적용) 및 전기의 수출(8% 적용)을 제외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⁷³⁾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위해 매입한 재화 및 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면세

1) 「상업세법」에 의한 면세

국제청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상업세를 면세할 수 있으며, 미얀마 「상업세법」⁷⁴⁾에 의하여 다음 재화에 대한 상업세가 면세될 수 있다.

- 건설공사 또는 신규 사업을 위해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기계장치, 플랜트 또는 기타 재화(사업 개시일로부터 최대 36개월)⁷⁵⁾
- 미얀마 내에서 생산된 재화로서 국외로 수출되는 재화와 국외 공급 용역⁷⁶⁾
- 사회, 종교, 보건, 교육과 관련 국제기구에 국내외 기부자가 기부한 재화
- 국내외 기부자가 미얀마 정부에 기부한 재화
- 국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인력이 미얀마 내 체류를 위해 필요한 가재도구 및 기타 가정용품
- 양국 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사(Ambassadors) 관련 재화

2) 「통합조세법」에 의한 상업세 면세

미얀마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합조세법」에서는 상업세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현재 「통합조세법」⁷⁷⁾상 해당 농산물, 의료용품, 종교 목적의 재화, 교육용역, 금융용역 등을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73) 「통합조세법」 제17조(b)

74) 「상업세법」 제8조

75) 「상업세법」 제8조(c)

76) 「상업세법」 제8조(d)

77) 「통합조세법」 제14조(a), (d)

6. 산출세액

가. 매입세액 공제

1) 공제대상 매입세액

미얀마 「상업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매출세액(Output Tax)에 대응하여 상업세 매입세액(Input Tax)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표 II-21>과 같다.

<표 II-21> 상업세 공제 대상 매입세액

구분	공제대상 매입세액
1. 재화를 생산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제조에 사용한 재화(원재료)에 대한 상업세 • 다른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하거나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제조에 사용한 재화에 대한 상업세 •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상업세
2. 재화를 판매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에 대한 상업세 • 국내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상업세 • 판매 활동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상업세
3. 용역을 공급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로부터 수입하여 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재화에 대한 상업세 • 국내에서 공급받은 재화로서 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재화에 대한 상업세 •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상업세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재화의 경우, 완성품 제조 과정에서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등 해당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

원칙적으로 고정자산(Fixed Assets) 또는 자본재(Capital Assets) 매입과 관련된 상업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나, 최근 미얀마 국세청 고시⁷⁸⁾에 따르면, FY 2019~2020 사업연도부터 이러한 자산 매입 시 납부한 상업세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매입세액 공제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78) Notification No. 56, 국세청(IRD)

2) 초과매입세액의 처리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고 익월로 이월한다.

3) 증빙 서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납세자는 송장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산출세액의 계산

상업세 매출세액은 일반적으로 미얀마 내에서 제조 및 판매한 재화, 수입한 재화, 상업 및 창출한 용역을 통해 얻은 총 거래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거래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후, 최종 산출세액 또는 환급액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기간 원재료 수입 및 수익 창출을 위해 발생한 매입세액과 함께 지난 기간으로부터 이월된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개정된 미얀마 국세청 고시⁷⁹⁾에 따라, 고정자산(Fixed and Capital Assets) 구입액에 대한 매입세액도 차감할 수 있다.

〈표 II-22〉 월별 상업세 납부세액 계산 방식 예시

No	송장번호	일자	공급받는 자	적요	공급가액	세율	세액
1	송장1	2020. 3. 1.	xxx	xxx	xxx	5%	A
2	송장2	2020. 3. 2.	xxx	xxx	xxx	5%	B
총 매출세액(C=A+B)							C
(-) 일반적인 국내 거래 매입세액							D
(-) 사용한 수입원재료에 대한 매입세액							E
(-) 구입한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							F
(-) 이월된 초과 매입세액							G
납부할 세액(환급세액)(C-D-E-F-G)							xxxx(xxxx)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79) Notification No. 56: 국세청(IRD)

7. 신고와 납부

가. 신고 및 납부

상업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상업세를 거래징수하여 월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상업세 납세의무자는 분기별로 상업세 신고서(재화의 경우 Patakha(kathakha)-5, 용역의 경우 Patakha(kathakha)-6)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다.⁸⁰⁾ 이와 더불어 연단위로 연간 상업세 신고서(재화의 경우 Patakha(kathakha)-11), 용역의 경우 Patakha(kathakha)-12)를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⁸¹⁾

상업세 납세의무자가 상기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상업세를 추계과세할 수 있다.⁸²⁾ 가산세 부과 여부는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며, 세무서장의 재량에 따라 부과되거나 또는 부과되지 않는 등 사안별로 그 처리 방식이 상이할 수 있다.

특정 과세연도의 상업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MMK 5천만(약 4,5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납세자는 상업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나. 신고서 예시

[그림 II-5] 분기별 상업세 신고서(Patakha(kathakha)-5)⁸³⁾

Quarterly Commercial Tax Return

2018/2019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Quarterly Commercial Tax Return
-----------	---

(for Annual Commercial Tax Returns due 31 Jul 2018, 31 Oct 2018, 31 Jan 2019, and 30 Apr 2019)

For the quarter ended	DD/MM/201X: _____
-----------------------	-------------------

80) 「상업세법」 제12조(a)

81) 「상업세법」 제13조(a)

82) 「상업세법」 제12조(c); 제14조(d)

83) 연간 상업세 신고서(Patakha(kathakha)-11)의 경우 Part C에 연간 금액을 기재하는 것 이외, 전체적인 구성은 분기별 상업세 신고서와 동일하다.

[그림 II-5]의 계속

TAXPAYER DETAILS	A. Type of taxpayer: Tick applicable box ▶ <input type="checkbox"/> Individual <input type="checkbox"/> Association <input type="checkbox"/> Company <input type="checkbox"/> Primary co-operative <input type="checkbox"/> Non-primary co-operative		
	B. Residency: Tick applicable box ▶ <input type="checkbox"/> Myanmar citizen <input type="checkbox"/> Non-resident citizen <input type="checkbox"/> Non-resident foreigner <input type="checkbox"/> Resident foreigner		
	C. Name of tax treaty country (if any) ▶ _____		
	D. Check applicable box(es): <input type="checkbox"/> Initial return with IRD <input type="checkbox"/> Final return with IRD <input type="checkbox"/> Amended return for 2018/2019 quarter ended: <input type="checkbox"/> 30 June 2018 <input type="checkbox"/> 30 September 2018 <input type="checkbox"/> 31 December 2018 <input type="checkbox"/> 31 March 2019 <input type="checkbox"/> Change of address		
Name		TIN	
Full name of spouse (if married)		TIN	
Postal address (including postal code)			
Physical address			
Contact telephone number		E-mail address	
Customs IE Code		Industry code	

[그림 II-5]의 계속

PART A		(a)	(b)	(c)
Net Commercial Tax on Production and Trading		Total sales (MMKs) (not including commercial tax but including specific goods tax) (See instructions)	Tax rate	Tax Multiply (a) x (b) (See instructions)
1	Export of crude oil		5%	
2	Export of electrical power		8%	
3	Sale of gold jewelry		1%	
4	Sales of buildings built and sold in Myanmar		3%	
5	All other goods, except exempt goods included on line 6 (see instructions)		5%	
6	Exempt goods (see instructions)			
7	Net commercial tax on production and trading (add lines 1 through 5)			
PART B		(a)	(b)	(c)
Net Commercial Tax on Domestic Services Rendered		Total receipts (MMKs) (not including commercial tax)	Tax rate	Tax - Multiply (a) x (b)
1	Telecom services - recharge/pre-paid cards		5%	
2	Telecom services - all other services		5%	
3	All other domestic services, except exempt services included on line 4		5%	
4	Exempt services (see instructions)			
5	Net commercial tax on sales of domestic services (enter the sum of lines 1 through 3 in column (c))			

[그림 II-5]의 계속

PART C - Net Commercial Tax Due or Overpaid	
1. Net commercial tax before payments. Add Part A, line 7 and Part B, line 5	
Payments made during the year	
2. Total allowable commercial tax credit, including on IRD(CT)-31 forms, during the year in production / trading / rendering services (see instructions)	
3. Total allowable commercial tax credit, according to IRD(CT)-32 forms, during the year in importation (see instructions)	
4. Total of monthly payments made during the quarter	
5. Total allowable payments made during the quarter (enter the sum of line 2 + line 3 + line4) If no payments made, enter -0-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다. 대리납부제도

미얀마 「상업세법」상 대리납부제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얀마 내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는 미얀마 내 상업세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거주자는 미얀마 내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하는 경우도 존재함), 해당 대리인은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미얀마 「상업세법」에 따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환급

미얀마 「상업세법」상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과 납부할 세액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은 1차적으로 납부할 세액과 상계된다. 즉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음을 통보받을 경우, 해당 환급세액을 월별 상업세 납부세액과 상계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을 월별 납부세액과 상계 후에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익월로 이월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환급세액의 상계와 관련된 사항은 분기별 상업세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세액 발생을 통보받은 납세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상업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현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환급신청은 환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⁸⁴⁾

9.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가. 사업자등록

1) 등록의무자

모든 상업세 납세의무자는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인 납세의무자는 미얀마 내 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⁸⁴⁾

상업세 납세의무자는 사업 개시 후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법인명, 주소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러한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 과세연도의 상업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MMK 50M(약 4,500만원) 미만인 납세자의 경우, 상업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통합조세법」에서는 이러한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

2) 등록 절차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또는 등록만료일 1개월 전까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Form KaThaKha-1 및 Form KaThaKha-3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문서 1부
- 회사의 이사 사진 2장

3) 사업자등록증 예시

84) 「상업세법」 제16조

85) 「상업세법」 제11조(a)

[그림 II-6] 사업자등록증 예시(KaTHaKha-2)

၂၀၀၈ ခုနှစ် ပြည်ထောင်စုသမ္မတမြန်မာနိုင်ငံတော်ပို့စည်းပုံ အခြေခံဥပဒေ ပုဒ်မ ၃၈၉ အရ နိုင်ငံသားတိုင်းသည် ဥပဒေအရ ပေးဆောင်ရမည့် အခွန်အကောက်များကိုပေးဆောင်ရန် တာဝန်ရှိသည်။

ပတခ(အဝခ)-၂။

အထူးကုန်စည်ခွန်ဥပဒေပုဒ်မ ၁၅၊ ပုဒ်မခွဲ (ဂ)၊ အထူးကုန်စည်ခွန်နည်းဥပဒေ ၉၊ နည်းဥပဒေခွဲ (က)၊ နည်းဥပဒေ ၁၀၊ နည်းဥပဒေ ၁၁၊ နည်းဥပဒေ ၁၂၊ နည်းဥပဒေခွဲ (က) နှင့် (ခ) တို့အရ အထူးကုန်စည်ကို တင်သွင်းသူ သို့မဟုတ် ထုတ်လုပ်သူ သို့မဟုတ် တင်ပို့သူအား မှတ်ပုံတင်ခွင့်ပြုကြောင်း ထုတ်ပေးသည့်လက်မှတ်

စီမံကိန်းနှင့်ဘဏ္ဍာရေးဝန်ကြီးဌာန
ပြည်တွင်းအခွန်များဦးစီးဌာန

-----ရုံး
-----မြို့/မြို့နယ်
-----တိုင်းဒေသကြီး/ပြည်နယ်/ပြည်ထောင်စုနယ်မြေ

မှတ်ပုံတင်လက်မှတ်အမှတ်စဉ်----- ရက်စွဲ-----
အထူးကုန်စည်ကို တင်သွင်းသူ သို့မဟုတ် ထုတ်လုပ်သူ သို့မဟုတ် တင်ပို့သူ

လုပ်ငန်းရင်း/ကုမ္ပဏီအမည်-----
နိုင်ငံသားစိစစ်ရေးကတ်ပြားအမှတ်/ကုမ္ပဏီမှတ်ပုံတင်အမှတ်-----
လိပ်စာ-----

၁။ အောက်ဖော်ပြပါ ကုန်စည်(များကို) တင်သွင်းသူ/ထုတ်လုပ်/တင်ပို့သူ ဦး/ဒေါ်----- သို့ မှတ်ပုံတင်ခွင့်ပြုကြောင်း လက်မှတ်ကို ထုတ်ပေးလိုက်သည်။
တင်သွင်း/ထုတ်လုပ်/တင်ပို့သည့် ကုန်စည်(များ)-----
ကုန်စည်(များ) ထုပ်ပိုးမှုပုံစံ-----

၂။ မှတ်ပုံတင်ခွင့်ပြုကြောင်း ထုတ်ပေးသောလက်မှတ်သည် အောက်ဖော်ပြပါနေရာ၌ လုပ်ကိုင်ဆောင်ရွက်သော လုပ်ငန်း အတွက်ဖြစ်သည်။
ပင်မလုပ်ငန်းတည်ရှိရာနေရာ-----
ကုန်စည်(များ) ကို အလွှာတစ်ခုစီအလိုက် ခွင့်ပြုသည့် လုပ်ငန်းဥပစာ-----


လုပ်ငန်းခွဲများ
(၁)-----
(၂)-----
လုပ်ငန်းဥပစာအတွက် တာဝန်ရှိပုဂ္ဂိုလ်နှင့် ကြီးကြပ်ကွပ်ကဲခွင့်ပြုသည့်ပုဂ္ဂိုလ်အမည်များ-----

၃။ လုပ်ငန်းရပ်စဲလျှင် ရပ်စဲသည့်နေ့အထိ စည်းကြပ်ရန်ရှိသော ကာလအတွက် ကြေညာလွှာကို ရပ်စဲသည့်နေ့မှ ၇ ရက်အတွင်း မြို့နယ်အခွန်ဦးစီးဌာနမှူးထံသို့ ဤမှတ်ပုံတင်လက်မှတ်နှင့်အတူ ပေးပို့ရမည်။

၄။ ဤမှတ်ပုံတင်လက်မှတ်မူရင်းကို ပင်မလုပ်ငန်းဥပစာတွင်လည်းကောင်း၊ မှတ်ပုံတင်လက်မှတ်မူရင်းခွဲများကို လုပ်ငန်းခွဲ တည်ရှိရာ ဥပစာအသီးသီးတွင်လည်းကောင်း အများပြိုင်သာအောင် ချိတ်ဆွဲထားရမည်။

၅။ ဤလက်မှတ်သည်-----ခုနှစ်၊-----လ-----ရက်နေ့တွင် ကုန်ဆုံးသောနှစ်အထိသာ အတည်ဖြစ်သည်။

၆။ -----ခုနှစ်၊-----လ-----ရက်နေ့တွင် ရုံးတံဆိပ်ရိုက်နှိပ်၍ ကျွန်ုပ်လက်မှတ်ရေးထိုး ထုတ်ပေးလိုက်သည်။



ရက်စွဲ-----
ရင်းလင်းချက်အသေးစိတ်အားကျောဘက်တွင်ဖော်ပြထားပါသည်။

လက်မှတ်-----
မြို့နယ်အခွန်ဦးစီးဌာနမှူး
-----မြို့/မြို့နယ်။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4) 사업자등록 말소

사업자등록을 한 납세자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금계산서

미얀마 「상업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모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상업세 송장(Commercial Tax Invoice)을 발급하여야 한다. 미얀마 「상업세법」상 송장의 발급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미얀마 상업세 송장은 Patakah(KaTHaKha)-31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총 3부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및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⁸⁶⁾

- ① 송장 번호
- ② 공급하는 자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
- ③ 공급받는 자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
-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 수량 및 단가
- ⑤ 상업세액
- ⑥ 재화 및 용역의 명칭, 종류 및 설명

10. 특례제도

미얀마 정부는 납세의무자의 사업 목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세 면제, 경감, 환급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혜택은 미얀마 「상업세법」 또는 「통합조세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며, 미얀마 정부가 특정 납세자에게 사안에 따라 허용한다.

「미얀마 투자법」 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Special Economic Zone Committee)의 재량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상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업세 면제 특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86) 「상업세법 시행규칙」 제42조(i)

가.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상업세 특례

- 건설기간 또는 사업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기계장치, 장비, 건축자재 또는 생산에 필수적인 재화의 수입에 대한 상업세 면제
- 수출 지향형 산업군에 속한 사업으로서 수출용 재화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또는 반제품의 수입에 대한 상업세 또는 관세 등의 면제
- 투자허가 기간 동안 허가받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 장비, 건설자재로서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상업세 또는 관세 등의 면제

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상업세 특례

-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에 대한 상업세의 일반적인 면제
-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에 대한 특정 기간 동안의 상업세 면제
- 수출 재화 제조에 대한 상업세의 일반적인 면제

V 기타 조세

1. 특별소비세(Special Goods Tax)

가. 서론

미얀마 정부는 특정 재화에 대한 상업세를 특별소비세(Special Goods Tax)로 대체하기 위해 2016년 「특별소비세법(Special Goods Tax Law)」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률은 2016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특별소비세는 과세대상 재화의 미얀마 내 수입, 미얀마 내 제조 또는 해외 수출에 대해 과세되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특별소비세율은 매년 발표되는 「통합조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나. 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에 품목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의 판매가격과 국제청장이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는 예상 판매가격 중 큰 금액⁸⁷⁾(수입하는 재화의 경우, 통관가격과 국제청장이 정하는 가격 중 큰 금액)이다.⁸⁸⁾ 과세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미얀마 내로 수입하는 경우, 과세 대상 자산의 통관일
- 미얀마 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과세 대상 자산의 제조일
-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 재화의 특별소비세 미납 사실이 적출된 경우, 그 적출일

2) 품목별 세율

품목별 적용되는 세율은 매년 「통합조세법」을 통해 개정되며, 2019년에 발표된 「통합조세법」에 따른 품목별 세율은 <표 II-23>과 같다.⁸⁹⁾

87) 보석세를 적용받는 재화의 경우, 실제 판매가격과 미얀마 보석공사(Myanmar Gems Enterprise)에서 고시하는 판매가격 중 큰 금액(수입하는 경우, 통관가격)이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88) 「특별소비세법」 제7조

89) 「통합조세법」 제11조

〈표 II-23〉 2019 과세연도 재화별 특별소비세율

(단위: %)

재화	과세표준/구분	세율
담배	MMK 600 이하	MMK 8
	MMK 601 이상 800 이하	MMK 17
	MMK 801 이상 1,000 이하	MMK 22
	MMK 1,001 이상	MMK 25
꺾련초 (Cheroot)	개비당 MMK 0.75	
주류	MMK 15,000 이하	MMK 1,000당 일정 금액 과세(주류별 상이)
	MMK 15,001 이상	60
원석 및 보석 ⁹⁰⁾	옥 원석	11
	루비, 사파이어 및 이에 준하는 등급의 원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제외)	9
	가공된 옥, 루비, 사파이어 및 기타 유사한 등급의 원석이 포함된 보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제외)	5
	상기 외 원석으로 만든 제품	5
수출 재화	통나무 및 목재	10
	옥 원석	15
	루비, 사파이어 및 이에 준하는 등급의 원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제외)	10
	가공된 옥, 루비, 사파이어 및 기타 유사한 등급의 원석이 포함된 보석(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제외)	5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3) 매입세액공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를 미얀마 내에서 제조하는 자가 해당 재화를 미얀마 내에서 판매할 경우,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원재료, 반제품 또는 제품을 구입한 경우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90) 원석 및 보석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2019년 세제 개편에 따라 「보석법」에 따른 보석세로 대체되었으나, 상기 세율표에 그 세율을 포함하였다(상기 수출 재화에 포함된 내용도 보석세에 따른 내용임).

4) 세액 계산 예시

담배를 제조하는 자의 특별소비세 산출세액의 계산과정을 예시하면 <표 II-24>와 같다.

<표 II-24> 특별소비세 산출세액 계산 예시

제품	총 수량	판매수량	공손수량	총 판매수량	총 판매액	특별소비세(MMK)
갑	xxx	xxx	xxx	B+C+D	xxx	xxx
을	xxx	xxx	xxx	B+C+D	xxx	xxx
계						xxx
총 특별소비세액						xxx
(-) 매입세액						xxx
산출세액(환급액)						xxxx(xxxx)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다. 신고와 납부

1) 사업자등록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상업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데,⁹¹⁾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는 해당 재화의 통관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를 제조하는 자는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는 때 특별소비세를 함께 신고(신고서: Patakha(ahtakha)-6) 및 납부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해당 재화를 반출할 때 수입한 재화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91) 「특별소비세법」 제15조(a)

3)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자 및 제조하는 자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자와 제조하는 자는 해당 재화를 수출하거나 제조한 달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1개월 내 신고(신고서: Patakha(ahtakha)-8)하여야 한다.⁹²⁾

2. 인지세

「미얀마 인지세법(Myanmar Stamp Act)」에서는 다양한 과세 대상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 별첨(Schedule 1)에서 각 과세 대상 문서에 대한 세율을 정하고 있다. 「미얀마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 세율 및 납세의무자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매우 상이한바, 이하에서는 주요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을 개괄하였다.⁹³⁾ 이러한 문서를 통해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 이전, 제한, 확장, 소멸 또는 기록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인지세는 미얀마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과세대상 문서의 경우 그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 또는 효력 발생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⁹⁴⁾ 국외에서 효력이 발생하나 그 목적물이 미얀마 내 소재하는 과세대상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가 미얀마로 반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⁹⁵⁾ 납부기한 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의 3배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표 II-25〉 과세대상 구분별 인지세율

구분	No. ¹⁾	세율
정관	39	MMK 15,000 또는 15만
주식 양도 계약	62(a)	양도되는 주식 가액의 0.1%
용역 계약	5	MMK 300 또는 1%(MMK 15만 한도)
임대차계약	35	임대료의 0.5% 또는 2% ²⁾
자산 양도 계약	23	양도되는 자산 가액의 2%

주: 1) 「인지세법」 별첨 1.
 2) 임대기간 별로 그 계산 방식 및 세율이 상이함.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92) 「특별소비세법」 제8조(a) 및 제16조(a)
 93)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채권, 약속어음, 환어음 등의 발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선적 보험 계약 등의 체결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특정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세율 등은 개별 문서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94) 「인지세법」 제17조
 95) 「인지세법」 제18조(1)

3.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양곤의 경우 2013년에 제정된 「양곤 시 개발법(Yangon City Development Law)」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하의 내용은 양곤시의 재산세와 관련된 내용이다.⁹⁶⁾

양곤시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대상 자산의 사용자이며, 양곤시 개발위원회(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YDCD)가 매년 고지하는 해당 자산의 가격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연 1회 납부하여야 한다.

양곤시 재산세율과 구체적인 세액 산출방법은 자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4. 관세

미얀마 내 관세는 「미얀마 관세법(Customs Tariff of Myanmar 2017)」에서 규정하고 있다. 세율은 0~50%로 재화별로 상이하며, 「미얀마 투자법」 또는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회원국인바, 특정 재화의 미얀마 내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미얀마 내 재화를 수입하여 통관하기 위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 상업세 및 사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5. 사전소득세(Advanced Income Tax)

가. 개요

2013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MOPFI)는 수입 또는 수출되는 재화의 경우 수출입 시 수출입 가액의 2%를 소득세로 예납하는 사전소득세(Advanced Income Tax)를 도입하였다. 2%의 사전소득세는 수출 시 및 국경에서의 무역시스템과 일반 무역시스템을 통해 미얀마 내로 수입 시 징수된다. 다만 2020년 3월 17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수출입되는 재화의 경우 COVID-19 경제 완화 정책⁹⁷⁾의 일환으로 소득세 예납이 면제된다.

96) 이외의 행정구역(예: Mandalay, Nay Pyi Taw)의 재산세는 해당 행정구역의 관련 법률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97) 기획재정부(MOPFI)는 2020년 3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출입되는 재화에 대해 COVID-19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 예납을 면제한 바 있다“COVID-19 Economic Relief Plan”, Notification 38/2020, 기획재

거주자의 경우, 연중 예납한 사전소득세는 과세연도(10. 1.~9. 30.) 말 소득세 납부 시 공제 가능하다.

나. 면제 대상⁹⁸⁾

다음에 대해서는 2%의 사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정부 부처 및 공기업이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재화
- 노후 차량 대체를 위해 개인이 수입한 차량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 기간 및 건설 기간 종료 후 처음 3년 동안 수입하는 기계장치, 장비, 자재 및 원재료
- 국내 또는 국제기구가 기부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
- 소방차, 영구차 및 구급차(단, 영리 목적의 구급차는 제외)
- 임가공계약에 따라 수입한 원재료
- Draw-back에 따른 재화의 수입 또는 임시수입재화

정부.

98) Notification 38/2019, 기획재정부(MOPFI)

• 신흥국의 세정연구 미얀마 •

제3장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 I. 외국인 투자정책
- II. 외국인 투자 특례제도
- III. 진출 확대 방안



제3장 |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I 외국인 투자정책

1.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

외국인은 미얀마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 미얀마 내 법인 설립, 외국법인의 미얀마 세무 등록 등을 통하여 미얀마 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미얀마 정부는 인프라 및 기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므로,⁹⁹⁾ 투자 사전 검토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는 주로 「미얀마 투자법」과 「미얀마 회사법」에서 규정한다.

가. 「미얀마 투자법」

미얀마는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신기술 도입 및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1988년 11월 30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Union of 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2012년 12월 개정되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제한적 투자 형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존재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6년 10월 18일 「외국인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 2012)」과 「내국인투자법(Myanmar Citizen Investment Law 2013)」을 하나로 통합한 「미얀마 투자법(Myanmar Investment Law)」을 발효하고, 기존 「외국인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을 폐지하였다¹⁰⁰⁾. 「신투자법」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던 다양한 업종이 개방되었으며, 조세 혜택도 추가되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는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얻어 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을 정할 수 있으며, 크게 ①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② 내국인과 합작투자에 의해 외국인이 투자할

99)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산업별 외국인 투자 비율을 제한한다.

100) 정동수·강수구·안우진, 『미얀마 Legal Update』, 법무법인 율촌, 2016, p. 1.

수 있는 업종 ③ 미얀마 정부 및 정부 기관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업종 ④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으로 구분된다. 2017년 4월 10일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고시한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업종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미얀마 투자법」상 외국인투자 제한·금지 업종

구분	내용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기술·교통·인프라, 도시개발, 자원 개발, 농업(1,000ac를 초과하는 토지 사용), 방송 분야 ▷ 미얀마 당국에 의한 양여에 따라 수행되는 투자 ▷ 국경 지역 또는 분쟁 지역에서의 투자 ▷ 국경을 넘어서 수행되는 투자 ▷ 비농업 관련 분야 100ac를 초과하는 토지 사용 • 막대한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사업(1억달러 초과) • 환경·지역 사회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수반하는 사업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생물 다양성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 ▷ 연방법에 준거해 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절차에서 100명 이상의 이주민 또는 100ac 이상의 토지가 포함되는 사업 ▷ 100ac 이상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사용 및 접근과 관련해 관리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 100ac 이상의 토지에 대해 점유자가 점유 취득 및 점유·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 기타 최소 100명 이상 점유자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 정부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부처 및 당국이 책임을 지고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는 제외 ▷ 토지사용권리 및 재임대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재임대 받는 경우는 제외 ▷ 투자 규모가 500만달러 미만, 임대기간 5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미얀마투자청에 제안서 제출이 요구되는 정부 지정 사업
외국인 투자 금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내 해롭거나 유독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화학물 및 관련 재료에 관한 방지법(Prevention from Danger of Chemical and Associated Materials Law, 28/2013)」 또는 「환경보존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9/2012)」에 명시된 물질을 생산하는 사업 ▷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자연환경보전부(Ministry of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수입, 수출, 보관, 교역 및 제조를 금지한 제품 및 관련 사업 ▷ 위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권한, 법적 예외 조항, 특별 허가 등의 어떠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음 • 해외에서 시험 단계에 있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기술, 약품,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존법」,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등의 연방법에 의거 시행. 이하 같음 •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의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업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 •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자료: Kotra, 『KOTRA COUNTRY REPORT-미얀마』, 2016, p. 89 및 PwC Myanmar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2〉 합작이 강제되는 사업

연번	내용
1	수산물 경매장 및 수산물 하역장의 건설 및 설치
2	축산 및 어업에 관한 연구활동
3	수의사업(Veterinary clinic)
4	곡물의 재배, 국내 유통 및 수출
5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국내 판매
6	국내 천연자원을 재료로 한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가연성 고체·액체·가스 및 연무제(아세트레린, 기술린, 프로판, 헤어스프레이, 향수, 데오드란트, 살충제)의 제조, 유통 및 판매
8	산화 화학제품(산소, 과산화수소), 압축가스를 방출하는 제품(아세톤, 아르곤, 수소, 질소, 아세틸렌)의 제조 및 판매
9	부식성 화학제품(황산, 질산)의 제조 및 판매
10	각종 공업용 화학 가스(압축형, 액체형, 고체형)의 제조 및 판매
11	비스킷, 웨이퍼, 각종 면(Noodles), 베르미첼리(Vermicelli) 및 기타 곡류 관련 식품 및 농업기반 식제품의 생산 및 국내 판매
12	사탕, 코코아, 초콜릿 등 각종 과자류의 생산 및 국내 판매
13	우유와 유제품을 제외한 기타 식제품의 생산, 통조림 제조 및 판매
14	맥아(Malt), 맥아주류(Malt liquors) 및 비탄산음료의 생산 및 판매
15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무알코올의 제조, 블랜딩, 증류, 보틀링 및 판매
16	각종 정제 얼음 제품의 생산 및 판매
17	생수 제조
18	각종 비누의 제조 및 국내 판매
19	각종 화장품의 제조 및 국내 판매
20	주거용 아파트·콘도의 개발, 분양 및 임대
21	국내 여행 서비스
22	해외 병원 이송을 위한 환자 이동 에이전시

주: No.15/2017,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자료: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유망환경시장 진출가이드-미얀마』, 환경부, 2019, p. 104.

나. 「국영기업법」

「국영기업법(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 Law)」에서는 민간 투자를 금지하고 정부만이 수행할 수 있는 12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시추 및 판매, 우편 및 통신업, 방송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업종을 민간 및 외국인에게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금지 업종을 정부와의 합작을 통해 또는 단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 「미얀마 회사법」

미얀마 정부는 1914년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위해 제정한 「인도 회사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해당 「회사법(Companies Act 1914)」의 제정 배경과 현재 시장 여건 간 괴리가 커 법 적용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였다. 미얀마 대통령실은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아시아 개발은행의 자문을 얻어 수년간 「회사법」 개정을 준비하였으며, 2017년 12월 6일 「신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을 공포하였다. 동 법안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신회사법」에서는 외국법인을 미얀마 내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법인 주식을 3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35%를 초과하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으로 정의한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외국인이 1주라도 소유하는 회사를 외국법인, 내국인만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를 내국법인으로 구분했으며,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은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금지해 왔다. 이번 「회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시에도 외국인 투자 지분이 35% 이하인 경우, 내국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내국법인만 수행 가능한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¹⁰¹⁾

「회사법」 주요 개정사항은 <표 III-3>과 같이 요약된다.

<표 III-3> 「미얀마 회사법」 주요 개정사항 요약¹⁾

항목	「구회사법」	「신회사법」
외국인 지분 취득	• 외국인의 내국법인 지분 취득 불가	• 가능
부동산 양수도	• 부동산을 소유한 내국법인 주식 취득 금지	• 가능(외국인의 경우 35%까지 가능)
특정 산업	• 외국인은 내국법인만 수행 가능한 사업 영위 불가	• 35% 지분율을 한도로 가능
주식 액면가	• 액면가 존재	• 액면가 제도 폐지
출자 방식	•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함 • 현물출자 가능하나 예외적	• 현금·현금 외 출자 가능 • 현금 외 출자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함
주주	• 2인 이상	• 1인 이상
이사	• 거주 요건 없음	•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 이사 1인 이상 필수
자본 감소 요건	• 법원의 결정 필요	• 납입자본금을 반환하는 방식의 감자 가능

101) 「미얀마 투자법」 제1조(c)(xiv)

〈표 III-3〉의 계속

항목	「구회사법」	「신회사법」
자기주식	• 자기주식 취득 금지	• 가능
배당 요건	• 이익잉여금 존재 시 배당 가능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당 가능 ✓ 배당 후 지급 가능 기준(Solvency)을 충족할 것 ✓ 배당 지급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 ✓ 배당 지급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능력을 중대하게 손상하지 않을 것

자료: 『법률신문』, 「개정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의 주요 내용」, 2018. 1. 23.,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39640>, 검색일자: 2020. 10. 5.

2. 외국인 투자 절차

가. 투자 진출 형태

외국인이 미얀마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 가능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미얀마투자법」에 따른 법인 또는 지점의 설립을 통한 투자
- 미얀마 시민, 정부 등과의 합작투자
- 미얀마 내 계약당사자와의 BOT(Build-Operate-Transfer) 또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계약에 따른 투자

외국인이 미얀마에 직접 거점을 설립하여 진출하는 경우, 고려 가능한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지점 및 연락사무소이다. 「미얀마 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 외 다른 형태의 법인¹⁰²⁾도 존재하나 외국인이 설립 가능한 형태는 유한책임회사뿐이다.

외국인이 내국(법)인, 국영기업 등과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¹⁰³⁾ 주거용 부동산의 개발·임대·판매업, 주류·비주류의 제조 및 내수판매업 등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금지되거나 허가가 수반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합작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고시한다.

102)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unlimited company, business association, 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 under the Special Company Act 1950, 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under the Special Company Act 1950 등(자료: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REGISTER YOUR COMPANY," <https://www.dica.gov.mm/en/register-your-company>, 검색일자: 2020. 12. 22.)

103) 내국인의 지분율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하며, 합작법인은 「미얀마 회사법」 또는 「미얀마 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1)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향후 상장 가능 여부에 따라 공개 유한책임회사(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와 비공개 유한책임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로 구분되며, 별도의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은 없다. 다만 미얀마에서는 외국인 지분이 35%를 초과하면 외국 법인으로 간주되며, 외국법인은 특정 산업에 종사할 수 없는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사항

구분	공개 유한책임회사	비공개 유한책임회사
주주	1인 이상	1인 이상, 50인 이하
이사	3인 이상 - 미얀마 시민권자 1인 이상	1인 이상 -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 이사 1인 이상
최소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얀마 회사법(Companies Act 1914)」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업종별 최소 자본 요건 존재 (제조업 15만달러, 서비스업 5만달러 등) 「신회사법」에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함 다만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경우 미얀마 투자청에서 결정하는 최소자본금 요건이 존재하며, 「경제특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투자 분야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한 최소자본금 요건이 존재함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2)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외국법인으로서 미얀마 내 사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외국법인의 미얀마 내 사업은 금지된다.¹⁰⁴⁾ 외국법인이 석유 및 가스 산업 등 미얀마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나. 투자 진출 절차

「미얀마 투자법」에서 정하는 투자제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내국인, 외국인 포함)는

104) 외국법인을 미얀마 세무서에 등록하는 비용은 MMK 25만(약 20만원 상당)이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고, 미얀마 투자위원회로부터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투자제한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투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투자 허가 절차

가) 사업계획서 제출

외국인 투자자는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미얀마 투자위원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조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1) 투자자는 「미얀마 투자법」 절차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다음 사항들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투자자의 성명, 국적, 주소, 사업 형태, 회사 설립지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
- 투자자 또는 합작투자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상업적, 재정적 현황 참고 자료
- 합작투자인 경우, 파트너들의 투자 비율과 금액, 이익 배분 비율, 파트너들의 권리와 의무
- 투자하려는 사업체 형태 또는 투자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
- 회사의 수권 자본 총액, 외국 자본 총액, 지분 형태, 국내 및 외국 자본의 비율, 주주들에게 인수된 주식 수, 외국 자본 도입 기간
- 설립될 회사의 임원의 이름, 국적, 주소, 직위
- 투자 기간, 건설 기간
- 미얀마 내 투자 대상 지역 또는 장소
- 생산과 판매에 사용할 기술과 체제, 사용할 에너지 유형과 양, 주요 기계·장비·원자재·건설 기간 동안 사용될 유사한 자재들의 양과 가액, 필요한 토지의 유형과 지역, 기업의 연간 생산량과 가액·서비스의 양과 가액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연간 외환 규모, 예상 외환 거래 규모
- 연간 국내외 재화 판매량 및 가액, 국내외로부터의 고용인원 수, 분류, 근무기간
- 연간 매출, 연간 비용, 연간 순이익, 연간 투자액, 보상 기간, 기타 수익, 신규 고용 기회, 창출 전망 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 자료

(2) 위 사업계획서와는 별도로 다음의 자료들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재정 신용도 관련 서류(투자하려는 개인 또는 회사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사업 및 재정 안정성을 보여주는 신용조회 결과)
- 영업 상태에 관한 은행 추천서
- 회사 형태가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인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및 회사 정관 초안
- 거래의 일부로 토지 임대나 BOT(건설-운영-양도) 계약인 경우, 기본적인 계약서 초안
- 기타 관련 계약서 초안

나) 사업 계획서 상세 심사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투자자의 재정 신용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다.

- 외국인 투자자의 감사보고서 검토
- 미얀마 대외무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또는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의 해외 제휴은행에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에 대한 질의 요청
- 기타 추가 자료 요청

미얀마 투자위원회(MIC)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들을 검토한다.

- 연간 예상 순이익
- 연간 예상 외환 가득액, 연간 사업 운영자금
- 투자금 회수기간
- 고용 창출 효과
- 국가 소득 기여 정도
- 국내 및 해외 시장 상황
- 요구되는 국내 소비량
- 외국환 예금

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투자 허가 발급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들이 적법·유효하게 작성 및 제출된 경우,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심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12주 정도이다.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미얀마 투자법」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① 프로젝트의 허가 기간 ② 세금 감면 사항 ③ 미얀마로 반입하는 외국 자본(현금 또는 현물)에 대한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보고 ④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회사 등록 의무 ⑤ 환경 보호 의무 ⑥ 보험 유지 의무 등을 기재하여 투자 허가를 발급한다.

2) 영업허가 절차

외국 회사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Permit to Trade)를 받아야 한다. 「미얀마 회사법」 제27A조에 따라 100% 외국인 투자 유한책임회사, 합작투자 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회사의 지점은 외국회사로 간주된다.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기획개발부 산하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하려는 회사의 정관
- 미얀마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
- 운영 첫 해에 미얀마에서 지출할 경비 예상액
- 회사·개인의 재정 신용도 증빙서류(투자자의 은행 신용 조회 결과 제출 포함)와 사업 명세서
- 제출자가 회사인 경우, 미얀마에 회사 설립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서

미얀마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회사가 아닌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사의 정관 및 회사 설립 관련 서류 사본(본사가 설립된 국가의 미얀마 대사관이 적법하게 공증한 것이어야 함)
- 본사의 최근 2 회계연도 재무제표 사본
- (정관 및 회사 설립 서류가 영어 외 언어로 작성된 경우) 원본, 영문 번역 공증본

영업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조업 회사의 경우 MMK 1,000,000(약 769달러), 서비스업 회사의 경우 MMK 300,000(약 230달러)에 해당하는 외국 통화를 미얀마로 반입하여야 한다. 이 중 50%는 영업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미얀마 내로 들여와야 하고, 나머지 50%는 영

업허가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들여와야 한다.

3) 회사 등록 절차

투자기업관리국(DICA)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발급받은 후에는, 회사등록사무소에 회사 또는 지점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등록사무소는 다음의 신청 절차 완료 후 회사 등록 또는 지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한다. 「2018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2018년 8월 1일부터 모든 회사는 MyCO(Myanmar Companies Online Registry) 웹사이트에 회사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었다.

- 영업허가증 사본
- 미얀마어와 영어로 작성된 정관
- 등록 신고서
- 등록 사무소의 현황(전체 주소) 신고서
- 미얀마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이사 및 임원 명단(지점인 경우 본사의 이사 및 임원 명단)
- 회사 또는 해외 지점을 대신하여 미얀마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통지를 받을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의 명단

II 외국인 투자 특례제도

1. 개관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투자법」과 「경제특구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다양한 특례를 부여한다. 경제특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개별 투자의 형태에 따라 자유지역(Free Zone), 진흥지역(Promoted Zone) 및 기타지역(Other Zone)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한다. 조세혜택은 주로 조세감면 형태이다.

2.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특례

과거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얻어 미얀마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자동적으로 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따라 여러 가지 조세 특례를 허용하였다. 「미얀마 투자법」은 투자 촉진 분야(농업, 플랜테이션업, 도시개발업, 교육업, 숙박 및 관광업, 인프라 구축 및 항공기 유지보수 관련 업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무분별한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미얀마 투자위원회가 부여하는 조세 특례를 재정비하였다.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제한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신청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조세 특례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조세 특례 부여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미얀마 투자법」에 따라 미얀마 투자위원회가 부여할 수 있는 조세 특례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미얀마 투자법」에 따른 조세 특례

구분		내용
내수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지역에 따라 7년, 5년 또는 3년간 소득세 면제(투자 촉진 분야에 한함) 미얀마 내 사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소득을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가속상각 소득세 계산 시 미얀마 내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비용 공제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대상 사업 관련 건설 또는 시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기계장치, 장비, 건축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및 소득세) 면제 투자 규모 증대 및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사업용 기계장치, 장비 및 건설자재 등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관세(및 소득세) 면제

〈표 III-5〉의 계속

구분		내용
수출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출품 제작을 위해 원재료 또는 반제품(Semi-finished goods) 수입 시 관세(및 소득세) 면제 원재료·반제품을 수입하고 미얀마 내에서 제조 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 수입 관련 관세 및 상업세 환급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3.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른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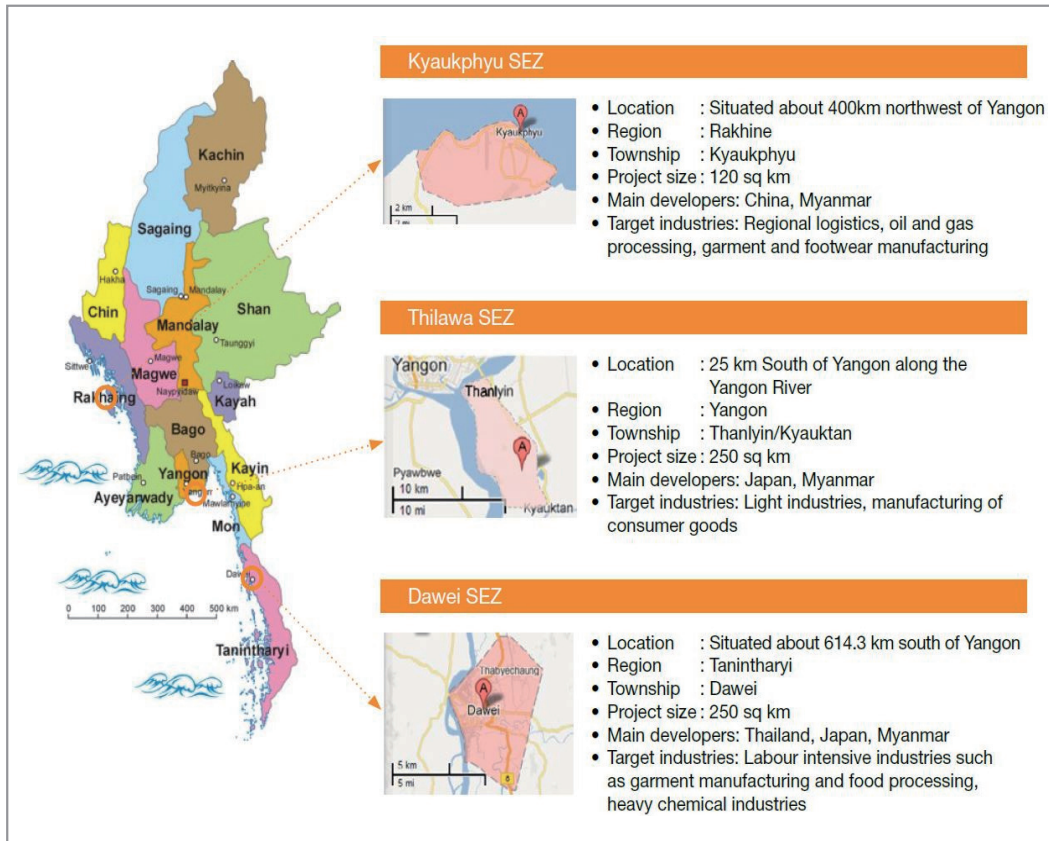
미얀마 정부는 2011년 미얀마의 지속 성장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라와(Thilawa), 다웨이(Dawei), 짜육퉁(Kyaukphyu) 세 구역을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하고, 각각의 「경제특구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2012년 「미얀마 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의 개정으로 「경제특구법」상 투자가 외국인 투자 혜택보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23일 「경제특구법」을 개정하였다. 경제특구는 지역에 관계없이 개별 투자의 형태에 따라 자유지역, 진흥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한다.

〈표 III-6〉 미얀마 경제특구의 구분

구분	혜택
자유지역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지역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수입, 생산 장비 및 부품 등에 대해 면세 혜택 부여
진흥지역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지역으로 초기 설비투자 관련 혜택 부여
기타지역	경제특구에 속하나 자유지역 및 진흥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며, 개별 심사에 의해 조세 혜택 부여(수출 지향형의 경우 자유지역과 동일한 혜택 부여, 내수 지향형의 경우 진흥지역과 동일한 혜택 부여)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그림 Ⅲ-1] 미얀마 경제특구의 위치



자료: PwC, *Myanmar Business Guide*, 2018, p. 25.

경제특구에 투자를 원할 경우, 특구관리위원회에 투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특구관리위원회는 시행령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접수 30일 이내에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자는 특구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건설을 완료해야 하며,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투자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후 지연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계획을 설립하여야 한다.

〈표 III-7〉 「미얀마 경제특구법」에 따른 조세 특례

구분	개발자 ¹⁾	자유지역	진흥지역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개시 후 8년간 소득세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개시 후 7년간 소득세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개시 후 5년간 소득세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후 유보된 이익잉여금을 1년 이내에 재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즉 8+5년 또는 5+5년) 이후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이월결손금 5년간 이월공제(일반 3년)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및 사무실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기계장비, 중장비, 운송기기 및 자재의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및 관련 세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생산 장비, 부품 공장, 창고, 사무실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 도매유통, 수출 및 물류에 필요한 자동차, 기타 제품 수입 시 관세 등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기계장비, 관련 부품, 공장 등 건설을 위한 건설자재, 운송기기 및 기타 제품 수입 시 사업 개시 후 5년간 관세 등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50% 관세 등 면제
상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지역 내 활동에 대한 상업세 면제 진흥지역·기타지역 및 미얀마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자유지역으로 반입된 경우, 수입으로 간주되어 관세·상업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상업세 면제 또는 경감 진흥지역 내 생산 제품을 수출 시 상업세 면제
토지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년간 장기 임대 가능 상황에 따라 장기 임대 기간 종료 후 25년 연장 가능 개발자의 경우, 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토지 임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기간 동안 제3자에게 허가된 토지의 임대, 사용허가, 판매 가능 토지 및 건물에 담보 설정, 임대 및 양도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특구에서 수출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 경제특구 내 투자에 대해 허가기간 내 국유화 되지 않음을 보장 「경제특구법」은 기타 미얀마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주: 1) 경제특구의 개발,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 미얀마 경제특구 관리위원회가 허용한 회사, 개인 또는 기관(이하 개발)(「경제특구법」 제3조(e))

자료: PwC Myanmar 내부자료

4. 외국환제도

외국환 규제는 미얀마 중앙은행 산하의 외국환관리국에서 관리하며 구체적으로는 2012년 8월 제정된 「미얀마 외국환 관리법」과 2014년 9월 제정된 「미얀마 외국환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규율된다. 동 법률에 따라 외국환의 사용, 외국인 대주와 외국환 대출 및 담보 계약의 체결, 대출 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송금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수익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¹⁰⁵⁾ 송금 승인이 된 금액에 한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외국환은 다음을 포함한다.

- 외국 통화 표시 현금
- 외국 통화 표시 채권
- 외국의 국제기구, 중앙은행, 상업은행에 예치한 예금
- 미얀마 국내 은행에 예치된 외화 표시 예금
- 국제 송금 거래 시 사용되는 증권 등

105)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회사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의 승인서, 감사보고서, 손익계정, 송금은 승인한 이사회 이사록, 외국환 송금 신청서 등을 미얀마 무역은행 또는 미얀마 투자상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진출 확대 방안¹⁰⁶⁾

1. 시장 특성 및 진출 유의사항

가. 시장 특성

미얀마는 젊은 인구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법적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

〈표 Ⅲ-8〉 미얀마 시장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경제인구, 저렴한 인건비 • 원유/천연가스,¹⁾ 광물 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 • 경작 면적 전체 국토의 26%, 농업에 최적화된 기후 환경 • 인도, 중국 등 신흥 강국과 동남아시아와의 지리적 인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기초 인프라 환경 • 낮은 국민소득 • 숙련 노동자 부족 • 낙후된 농기계 및 기술 • 잦은 법 개정 등 법적 안정성 낮음 • 높은 토지 임대비용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법」 및 「회사법」 개정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3대 경제특구 개발 • 성장하는 소비시장(중산층의 가파른 증가), 한류에 대한 관심 • 건설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²⁾에 따른 현지 생산비용 증가 • 라카인 사태로 인한 국제 사회의 비판 및 지원 감소 • 환경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마찰(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

주: 1) 1990년 해저 가스전이 발견되었으며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 중 하나임. 천연가스 매장량이 2,932억㎥로 세계 40위이며, 원매장량은 5천만 배럴로 세계 5위임(Korta 해외시장뉴스, 「미얀마 광업」,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8572>, 검색일자: 2020. 10. 5.)

2) 2018년 5월 최저임금 33% 인상(시간당 MMK 600)

자료: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2019; 『2020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6) 이하 제Ⅲ장의 내용은 환경부·한국환경산업협회, 『MYANMAR-유망환경시장 진출가이드 2019』와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2019); 『2020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2020)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나. 산업 환경

미얀마의 기업경영 여건 순위는 전세계 171위로 최하위권이며, 특히 계약 실행(188위), 투자자 보호(183위) 등 사업 환경이 열악한 편이나 미얀마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35% 이하인 기업의 경우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제약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얀마의 주요 프로젝트는 주로 미얀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지 내 법적·정치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과제 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통한 진출 형태 또는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를 통한 진출 형태가 권고된다.

〈표 Ⅲ-9〉 산업 육성 정책 방향

분야	산업정책 방향	유망 분야
농업·어업	단기적으로 육성이 가능한 농업·어업·축산 분야 집중 개발, 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합작 확대	농업 및 수산물 생산, 비료 및 농기계, 식품가공
섬유	원사부터 생산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 생산기술 고도화 및 기술 표준화	염색 및 원단 생산 섬유기술, 표준 전수
의료	건강보험 및 서비스 개선, 의약품 보급 및 민간병원 확대	의약품 생산·판매, 의료장비, 의료보험
인프라	상하수도, 전력 등 기초인프라 및 지역 개발, 대도시 공동 운송시스템 개선	기초 인프라 프로젝트,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
에너지	대규모 신규 개발 자양 및 기존 시설개선, 태양광, 바이오매스,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Smart Grid, 노후 발전 장비 개량 등

자료: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2019; 『2020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CEI)는 2019~2020 회계연도 미얀마 경제성장률을 7.1%로 예측하였으며, 2020년 미얀마의 5대 유망산업으로 ① 관광업¹⁰⁷⁾ ② 부동산업¹⁰⁸⁾ ③ 보험 산업 ④ 디지털 결제 산업 ⑤ 증권업을 꼽았다.¹⁰⁹⁾ 최근 시장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이어 가장 가

107)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얀마를 방문한 외국인인 150만명이며, 이 중 37만명이 육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됨. 미얀마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얀마 바간 지역과 캄보디아 시엠펙 간 항공 직항편을 개설하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108) 미얀마 정부는 2019년 9월 부동산 재산세와 인지세를 인하하는 등 부동산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109) KITA.NET 해외시장뉴스, 「20년 미얀마의 5대 유망산업」, 2020. 1. 9., <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nIndex=1793797&type=0>,

보고 싶은 나라 2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등 한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얀마어에는 한국의 정(情)에 해당하는 단어(땅요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인연과 정을 중요시하는 문화이므로, 문화적 유사성을 강조한 관광업 및 문화 산업 분야의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 비즈니스 유의사항

- 악수는 오른손으로

미얀마에서 명함이나 선물을 주고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왼손은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는 가급적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 정치적 이야기는 금물

아주 친해지기 전까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탄핵 장군이나 아웅산 수치 여사 등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금물이다. 2015년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전보다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이나 여전히 외국인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공무원과 약속 시 최소 2주 전 방문사유, 방문 인사내역 등을 포함한 공식레터로 신청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약속 시간보다 15~30분 정도 지각이 빈번하며, 미팅 확정 후 당일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 잠정적으로 미팅을 잡는 업체 수가 많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대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무원의 경우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 식사 시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메뉴 선정에 주의

대부분의 미얀마인은 종교 및 관습의 영향으로 소고기를 먹지 않으며, 일부는 돼지고기 또한 먹지 않으므로 메뉴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장 무난한 메뉴는 닭고기와 생선 요리이며, 최근 한류 영향으로 한식 메뉴도 긍정적인 편이다.

- 사업 추진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

미얀마 공무원들은 사업 진행이 느리고 절차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 중소기업의 경우 명함이 없는 경우 다수

대부분의 대기업 사무직, 영업직 직원은 명함을 소유하고 있지만 중소 규모의 기업체는

사장을 제외하고 명함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조약한 경우가 많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과장급 이하는 명함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이 명함을 건네지 않을 때 재차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2. 수출입 시 유의사항

수출입 절차는 1947년 「수출입관리법(임시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수출입거래에 대한 주무관청이며, 상무부 산하 무역국(Department of Trade)이 수출입허가, 수출입관련 고시·명령·지시를 발표한다.

가. 수출입 라이선스

수출입을 위해서는 미얀마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¹¹⁰⁾ 미얀마 상무부 및 미얀마 상공회의소에 회사 등록을 해야 한다. 수출입 회사 등록 비용은 MMK 50,000(약 4만원 상당)이며, 3년간 유효하다. 수출입업자로 등록을 마친 뒤, 개별 수출 및 수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통상적인 수출 및 수입 허가는 무역국에서 관리하며, 인접한 나라와의 육로 무역에 관한 수출 및 수입 허가는 국경무역국(Department of Border Trade)에서 발급한다. 특정 물품의 경우 정부기관의 추천서 및 기타 추가 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4년 152개 항목의 수입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 발급 의무를 면제하였고,¹¹¹⁾ 2015년 11월 외국 합작회사가 농업기기 및 의료 장비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¹¹²⁾ 2016년 7월 외국 합작회사가 특정 요건 만족 시 건설 자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¹¹³⁾

110)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 <https://www.myco.dica.gov.mm/>, 검색일자: 2020. 12. 22.

111) No.11/2014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112) No.96/2015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113) No.56/2016, No.85/2016, No.25/2018,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나. 미얀마 수입 절차

미얀마 정부는 수입 시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거래만을 인정한다.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수입대금의 100%를 은행에 예치하고 외환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무성에 제출해야 하며, 신용장 개설을 위한 예치금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수입 시 유이가 필요하다.

1) 수입 통관 절차

미얀마 수입 통관 절차를 관세청 부서별 업무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서류 준비 및 제출
 - 세관 신고 서류(Customs Declaration Form 1: CUSDEC-1)
 - Original invoice, bill of landing, import license, packing list, sale contract 등
- ② 중앙등록사무소(Central Registry)의 서류 검토
 - 데이터 정확성 여부 검토
 -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일련번호, 날짜, 시간이 기재된 영수증(Acknowledgement receipt) 발급
- ③ 수입과(Import Section)의 서류 검토
 - 세관 신고 서류와 송장 등 관련 서류 비교 검토
- ④ 감정과(Appraising Group)의 수입 품목 수입 규정 위반 여부 검토
 - 수입 품목이 수입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맞게 수입되었는지, 품목 명세, HS코드, 관세율, 수량, 크기 등 세부항목 검토 후 가치산정과로 서류 전달(올바른 품목 분류 및 정확한 관세 납부금액 산정 목적)
- ⑤ 가치산정과(Valuation Unit)의 수입 신고 가격과 기존 수입 가격 비교
 - 과거 동종품목의 수입가격, 카탈로그, (필요시) 도매시장 가격 등을 참고하여 상품가치 산정(수입 기록이 없는 신품목의 경우,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수입업자와 협상이 가능함). 가치 산정 후 감정과로 세관 신고 서류 전달
- ⑥ 현금수납과(Cash Section)의 관세 및 세금 결정액 부과
 - 가치산정과에서 산정한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 및 세금 결정액 부과·징수
- ⑦ 현장감정과(Wharf·Warehouse·Container Terminal·Airport Appraising Group)의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수입 품목 비교

- 세관 신고 서류 및 관련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수입 품목 비교 검사, 검사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과 수입 품목이 다를 경우 압류, 관세 재계산, 환불, 추가 징수 등의 조치 시행

2) 수입 관세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관세와 상업세가 있다. 관세율은 미얀마 관세청에서 발간한 관세율표(Customs Tariff of Myanma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입 관세는 보석류, 귀금속 등의 사치품을 제외하면 5%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상업세, 특별소비세 및 사전소득세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 수출 유망 품목

〈표 III-10〉 수출 유망 품목

품 목	구 분	내 용
면류	선정 사유	· 구매력이 높아진 미얀마 소비자 ·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로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 미얀마의 식생활은 전통음식 '모힝가'와 같은 간편한 면류로 식사를 하는 문화가 존재 · 2003년 유통되기 시작한 인스턴트 라면 또한 간편식으로 미얀마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음
	경쟁동향	· 태국, 중국, 한국 등의 수입 라면 가격과 현지 생산 라면 가격이 약 5배 정도 차이가 있음
	진출방안	· 다양한 특징의 제품을 가진 한국업체들은 시장 개방 이후 새로움에 흥미를 갖는 미얀마 소비자를 위해 독특한 라면류를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임 · 현지 업체들은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한국 제품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제품을 출시하기도 함
동물용 사료	선정 사유	·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 베트남과 더불어 돼지 사육 등으로 다양한 사료의 시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시장동향	· 현지에서 전문 사료공장을 설립한 업체는 약 7~10곳으로 추정되며, 그중 한국기업은 Sunjin Myanmar 및 CJ Feed Myanmar가 대표적임
	경쟁동향	· 수입국 검토 결과, 태국, 이탈리아, 중국, 네덜란드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전통식 소형으로 사료를 생산하기도 함
	진출방안	· 단기간 내 동물용 사료를 전문적으로 수입·유통하는 대형업체 및 건설업체들과 거래하여 시장에 진출
윤활유	선정 사유	· 차량 수입 지속 증가에 따른 소모품 수입 증가 예상
	시장동향	· 윤활유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전무하며, 해외에서 전량을 수입하여 사용 중

〈표 III-10〉의 계속

품 목	구 분	내 용
	경쟁동향	· 수입국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싱가포르(57%), 말레이시아(17.37%), 태국(15.36%) 및 한국(0.61%) 등이며, 한국 수입액은 2016년 대비 3% 감소 · 현지에서 유통되는 브랜드로 Stallion, PTT, NASA, Caltex, ELF, Kixx 등이 존재
	진출방안	· 한국과 달리 정비소에서는 윤활유 교체 서비스만 제공하며, 주로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윤활유 판매를 진행 · 부품 판매 업체를 타깃으로 판매전략을 세울 경우,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비타민· 기타 의약품	선정 사유	·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 증가, 멀티비타민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
	시장동향	· 한국 비타민제 중 인기 브랜드들은 소프트 캡슐(Soft Capsule)인 Oramin G/F, Decavitamin, Top Roll, Vitron 등이며, 전체 의약품 수요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경쟁동향	· 비타민제의 경우, 미얀마 국경 국가인 인도(39.44%), 태국(25%) 및 중국(13.58%)에서 수입되는 게 대부분이며, 그중 한국은 3.23%의 시장점유율 차지
	진출방안	· 최근 미얀마 상무부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의약품을 유통할 수 있게 허가함에 따라 해외기업 들이 도·소매 유통업으로 시장 진출 가능
섬유류	선정 사유	· 봉제, 가발, 가방, 액세서리, 신발 등 저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CMP 가공품 수입도 지속 증가 추세
	시장동향	· 미얀마의 수출지향적 CMP(Cutting, Making, Packing) 봉제산업은 현 군사정부가 1988년 정권을 장악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옴
	경쟁동향	· 또한 CMP 과정을 통해 봉제업을 진행하는 게 대부분임 · 국경무역을 통해 중국에서 섬유 및 관련 액세서리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 효성, 태평양물산 등이 대표적으로 진출해 있음
	진출방안	·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지닌 국가이며, 일반 단순 섬유 수출보다 CMP 과정을 통한 섬유 및 원자재 수출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건설 중장비	선정 사유	· 인프라 개선에 따라 해당 제품 시장성이 밝을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 건설중장비 수입은 최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인프라 구축사업과 더불어 민간의 광산개발 증가로 인해 지속 증가 추세
	경쟁동향	· 미얀마 내 건설중장비 및 부품 수입업체는 30여 개로 추정되며, 주로 양곤과 만달레이에 지점을 두고 제품 유통 중
	진출방안	· 공공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미얀마 특성상 정부 입찰에 주로 참여하는 현지기업과 협업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CCTV 카메라	선정 사유	· 시민들의 보안 인식이 향상되면서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라 보안장비 수요 증가
	시장동향	· 보안장비 수입상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CCTV는 2004년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정부 기관, 파고다, 보석, 금 판매점, 은행, 쇼핑몰, 영화관, 정부 고위 VIP·고층 건물 등에 사용
	경쟁동향	· 미얀마는 보안 장비 관련 제조기술이 열악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국경 무역을 통해 중국, 태국산 장비가 유통되나 일본·독일 브랜드 장비도 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음

〈표 III-10〉의 계속

품 목	구 분	내 용
	진출방안	· 미얀마 시장 진출 시 최소 1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해야 바이어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정전이 잦은 현지 특성을 감안하여, 잦은 정전에 강한 제품을 개발해 특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함

자료: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2019; 『2020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11〉 수출 유망 업종

품 목	구 분	내 용
교육 서비스	선정 사유	· 사립학교에 대한 외국인의 100% 자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한국 교육 브랜드의 적극적 투자를 전망 중
	시장동향	· 미얀마의 전통적인 자녀 교육열이 가처분소득 증가와 맞물려 사교육이라는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있음 · 시장개방 가속화와 경제성장에 따라 사교육 시장 규모는 지속 팽창할 것으로 기대
	경쟁동향	·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이 미얀마 교육시장 진출에 관심 · 외국인도 미얀마 교육부에서 정한 커리큘럼 또는 국제 커리큘럼을 준수하는 사립학교 소유 가능
	진출방안	· 한국어 학원, 입시 학원 및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 · 한류 및 SNS 활용 마케팅이 효과적일 것
보험	선정 사유	· 국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편이나, 차량 보험부터 시작,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
	시장동향	· 미얀마 보험시장은 2012년 민간에 개방됐으며, 15개 이상의 현지 보험사가 영업 중
	경쟁동향	· 대표적으로 First National Insurance, KBZ Insurance, Young Insurance Global, Grand Guardian Insurance, Global World Insurance 등이 존재 · 한국 농협손해보험은 현지 대기업인 Htoo 그룹과 합작 보험사업으로 한국기업으로서 최초 진출 계획
	진출방안	· 단독 투자 또는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 투자 진출
외식업 (프랜차이즈)	선정 사유	· 최근 3년간 외식업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활발 · 최근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의 도·소매업 단독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동시 프랜차이즈 산업도 지속 증가 추세
	시장동향	· 미얀마에서 국제식품 체인점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 F&B 매장들이 최근 몇 년간 생겨났으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패스트푸드 음식점임
	경쟁동향	· 미국(KFC, Pizza Hut), 호주(Gloria Jean's Coffees), 대만(Gongcha), 한국(유가네, 롯데리아, 불고기 브라더스), 싱가포르(Harry's Bar, Breadtalk, Manhattan Fish Market), 태국(Pizza Company, Fuji) 등의 프랜차이즈가 현지에서 유명함
	진출방안	· 최근 후발주자인 KFC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미얀마인 입맛에 맞는 메뉴를 판매했기 때문으로, 현지화가 필수적

〈표 III-11〉의 계속

품 목	구 분	내 용
자동차 서비스 센터	선정 사유	· 전문 자동차 수리센터 부족으로 인한 해외 자동차 수리 센터 유망 예상
	시장동향	· 미얀마 정부는 자동차 수입 지정을 변경한 이후부터 현지 도로 위에 노후화된 자동차를 보기 힘들
	경쟁동향	· 과거 미얀마 일반 카센터에서 수동으로 자동차 검진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 전산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센터 규모가 증가 중
	진출방안	· 일본 차량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현지에서 일본 차량 대상으로 수리 서비스 제공 중 · 한국산 차량 전문 수리센터 진출 요망
의료 서비스	선정 사유	· 미얀마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혁에 따른 예산 증가로 진출기회 증가 기대
	시장동향	· 현지 의료시설이 다소 부족하여 최근 인접 국가인 태국에서 치료를 받는 고소득자들이 증가 중
	경쟁동향	· 태국 및 싱가포르를 주요 경쟁국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형수술 및 질병 치료 목적의 고객이 많음
	진출방안	· 태국 병원의 경우, 미얀마에 지점 사무실 개설 후 병원 소개·상담 후, 태국으로 의료 관광 서비스를 제공 중 · 한국 기업도 동 사례로 진출 가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업)	선정 사유	· 최근 IT, 모바일 기술 기반 창업이 활발하며, 정부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미비, 부동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사무실 부족 등의 이유로 스타트업 지원 기업 증가 전망
	시장동향	· 미얀마 창업기업은 기술 부족, 열악한 인프라, 「저작권 보호법」 등이 미비하여 애로사항이 많은 게 현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도전 중
	경쟁동향	· 최근 민간에서 액셀러레이터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그중 Phandeeyar 및 Rockstart가 대표적임
	진출방안	· 한국 창업자도 현지 액셀러레이터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진출 가능 예상

자료: Kotra, 『2019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2019; 『2020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202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유관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

〈표 III-12〉 유관 기관 연락처 및 주소

기관	연락처	주소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mm-ko/index.do)	+95-1-527142	No. 97, University Avenue Road, Bahan Township, Yangon
주대한민국 미얀마대사관	02-790-3814~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8길 12 (04418)
상무부 (http://www.commerce.gov.mm)	+95-67-408002	Office No.3, Nay Pyi Taw
투자기업관리국 (http://www.dica.gov.mm)	+95-1-658143	No.1, Thitsar Road, Yankin Township, Yangon
미얀마 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부 (https://mifer.gov.mm/)	+95-67-407345	Building No.1, Nay Pyi Taw
기획재정부 (http://www.mopf.gov.mm)	+95-9-410184	Office No.26/34, Nay Pyi Taw
산업부 (http://www.moin.gov.mm)	+95-67-405135	Office No.30, Zay Ya Htar Ni Road, Nay Pyi Taw
한인상공회의소(KOCHAM)	+95-9-421181853	No. 126, Corner of Hnin Thit Sar street &Hnin Pan Street, Snow Garden Housing, Thingangyun Township, Yangon.
한국국제협력단(KOICA) (http://www.koica.go.kr)	+95-1-8500801~803	No. 514, 4Ward, Waizayantar Road, South Okkalapa Township, Yangon.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미얀마」,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57>, 검색일자: 2020. 12. 22.

참고문헌

제1편 총론

국내문헌

- 국세청, 『미얀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2012.
법제처, 『영국의 법령체계』,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2017.
외교부, 『미얀마 개황』, 외교부 동남아2과, 2019.
최봉래,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보급 등』, 법제처, 2017.

국외문헌

- PwC, *Myanmar Business Guide*, 2018.
미얀마 국세청, *Reform Journey: A Plan to Mobilise Domestic Revenue 2017-18 to 2021-22*.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미얀마」,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57>, 검색일자: 2020. 12. 22.
미얀마 국세청, www.ird.gov.mm/
미얀마 기획재정부, www.mopfi.gov.mm/
미얀마 중앙은행, <https://forex.cbm.gov.mm/>
미얀마 중앙통계청, www.csostat.gov.mm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 www.dica.gov.mm/en
ASEAN Secretariat, “ASEAN stats database,” *ASEAN Key Figures 2019*, 2019.
Google Maps, <https://maps.google.com>, 검색일자: 2020. 12. 22.

제2편 주요 세법

국내문헌

- 김준석·한인철·김보식, 『국제조세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제3편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국내문헌

- 정동수·강수구·안우진, 『미얀마 Legal Update』, 법무법인 율촌, 2016.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유망환경시장 진출가이드-미얀마』, 환경부, 2019.
- Kotra, 『KOTRE COUNTRY REPORT-미얀마』, 2016.
- _____, 『2019 국별 진출전략 미얀마』, 2019; 2020.

국외문헌

- PwC, *Myanmar Business Guide*, 2018.

웹사이트

- 『법률신문』, 「개정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IES LAW)의 주요 내용」, 2018. 1. 23.,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39640>, 검색일자: 2020. 10. 5.
- KITA.NET 해외시장뉴스, 「20년 미얀마의 5대 유망산업」, 2020. 1. 9., <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nIndex=1793797&type=0>, 검색일자: 2020. 12. 22.
- Korta 해외시장뉴스, 「미얀마 광업」,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78572>, 검색일자: 2020. 10. 5.
- _____, 「국가·지역정보-미얀마」,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57>, 검색일자: 2020. 12. 22.
-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 <https://www.dica.gov.mm/>
- 미얀마 투자회사관리국, <https://www.myco.dica.gov.mm/>



신흥국의 세정연구 미얀마

발행	행	2021년 4월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TEL: (044)414-2114(대)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ISBN	979-11-6655-053-9	
조판및인쇄	(주)프리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